

국제스포츠행사 개최 지원방식 개선을 위한 선진사례 연구

2019. 3.

문화체육관광부
유 선

차 례

I. 훈련 개요	1
II. 서론	5
1. 연구 배경	5
2. 연구 과정	8
III. 우리나라의 국제스포츠행사 개최 지원	11
1. 관계 기관 및 관계 법률	11
1) 관계 기관	11
가. 문화체육관광부	11
나. 대한체육회	12
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14
2) 관계 법률	15
가. 국민체육진흥법	15
나. 국제경기대회지원법	17
2. 미시적 관점의 국제경기대회에 대한 지원	19
1) 대규모 국제경기대회에 대한 지원	19
2) 종목별 경기단체가 개최하는 행사에 대한 지원	20
3)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행사에 대한 지원	22
IV. 프랑스의 국제스포츠행사 개최 지원	24
1. 관계 기관 및 관계 법률	24
1) 관계 기관	24
가. 스포츠부(Le Ministère des Sports)	24
나. 프랑스국립올림픽위원회 및 스포츠위원회(Le Comité National Olympique et Sportif Français : CNOSF)	29

다. 국립체육개발센터(Le Centre National pour le Développement du Sport : CNDS)	30
라. 올림픽 및 패럴림픽의 부처간 대표단, 대규모 스포츠행사를 위한 부처간 대표단(Délégué interministériel aux jeux Olympiques et Paralympiques : DIJOP, Délégué interministériel aux grands événements sportifs : DIGES)	32
마. 지방당국 협의체(Collectivités territoriales)	33
바. 국가스포츠위원회(Conseil National du Sport : CNS)	35
2) 관계 법률	36
가. 스포츠법전(Code du sport)	36
나. 대규모 스포츠 행사에 위한 부처간 대표단 설치에 관한 법규 명령(Décret n° 2008-1142 du 5 novembre 2008 instituant un délégué interministériel aux grands événements sportifs)	39
다. 2024파리올림픽 및 패럴림픽을 위한 부처간 대표단 설치에 관한 법규명령(Décret n° 2017-1336 du 13 septembre 2017 relatif au délégué interministériel aux jeux Olympiques et Paralympiques 2024) ..	41
2. 미시적 관점의 국제경기대회에 대한 지원	43
1) 대규모 국제경기대회에 대한 지원	43
2) 올림픽 장비 납품 회사(la société de livraison des ouvrages olympiques, SOLIDEO)의 운영	47
V. 거시적 관점의 국제스포츠행사 지원방식의 비교 및 시사점	53
1. 스포츠 소관 부처의 공무원 운영 비교	53
2. 국제스포츠행사와 관계된 법률에 나타난 지원 체계 비교	54
1) 프랑스, 지원 전담조직을 영구조직으로 운영	54
2) 프랑스, 지원 전담조직에게 구체적인 임무 부여	56
3. 국제스포츠행사 관계자간 협력관계 비교	60

VI. 우리나라의 국제스포츠행사 개최 지원방식 개선방안 제안	65
1. 국제스포츠행사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 구성	65
2. 담당공무원의 전문직위 운영 개선	69

VII. 결론	70
---------------	----

<참고자료>	72
--------------	----

1. 참고 문헌 및 링크 목록	72
2. 프랑스 관계법령 원문	75
1) 스포츠법전(Code du sport) 중 대규모 스포츠 행사(MANIFESTATIONS SPORTIVES) 관련 조문 제목 원문	75
2) 대규모 스포츠 행사에 위한 부처간 대표단 설치에 관한 법규 명령 원문(Décret n° 2008-1142 du 5 novembre 2008 instituant un délégué interministériel aux grands événements sportifs)	76
3) 2024파리올림픽 및 패럴림픽을 위한 부처간 대표단 설치에 관한 법규명령 원문(Décret n° 2017-1336 du 13 septembre 2017 relatif au délégué interministériel aux jeux Olympiques et Paralympiques 2024)	80
4) 올림픽 및 패럴림픽을 위한 부처간 대표(DIJOP, le délégué interministériel aux jeux Olympiques et Paralympiques 2024) 임무의 서신(Lettre de mission) 전문 및 번역본	86
5) 파리 및 수도권 개발 상태에 관한 법(l'article 53 de la Loi n° 2017-257 du 28 février 2017 relative au statut de Paris et à l'aménagement métropolitain) 중 올림픽장비납품회사(la société de livraison des ouvrages olympiques, SOLIDEO) 관련 조문	92
3. 국제스포츠행사 개최 지원의 기타 해외 사례	95
4. 프랑슈콩테대학교 신문에 게재된 동 훈련 교류 관련 기사	98
5. 프랑슈콩테대학교 국제교류 연구자 미팅 관련 자료	102

I. 훈련 개요

1. 국외훈련 개요

- 훈련국 : 프랑스
- 훈련기관명 : 프랑슈콩테대학(Université de Franche-Comté: UFC)
- 훈련 분야 : 체육 부문
- 훈련 기간 : 2018. 8. 27. ~ 2019. 2. 24. (5개월 29일)

2. 훈련기관

- 기관 개요
 - 기관명 : 프랑슈콩테대학(Université de Franche-Comté: UFC) 내
C3S(문화, 스포츠, 건강, 사회) 연구소
 - 훈련기관 웹주소 : <http://u-sports.univ-fcomte.fr>
 - 주소 : UPFR Sports, University of Franche-Comté
Laboratory Culture, Sport, Health, Society (EA4660)
31 chemin de l'Épitaphe 25000 Besançon
 - 연락처 : + 33 (0)3.81.66 67 90 / Fax + 33 (0)3.81 53 78 38
- 프랑슈콩테대학 소개
 - 총장 Jacques BAHI / 스포츠대학장 Nicola TORDI
 - 1423년 필립 공작(Duke of Burgundy Philip)이 돌(Dole)에 설립
1691년 브장송(Besançon)으로 이전
 - 브장송(Besançon), 벨포르(Belfort), 몽벨리아(Montbéliard), Vesoul
(브술), 롱르소니에(Lons-le-Saunier) 등 5개 도시에 교정 위치

- 학생 23,690명(2016년), 교수 1,420(2014년), 교원 673명(2014년)
 - * 1/3이 장학생이고 10.5 %가 유학생임
- 프랑슈콩테 대학은 브루고뉴프랑슈콩테 대학*의 일원으로 스포츠단과대학 내에 스포츠 관련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계 기관 및 관련 단체*** (종목별 경기단체)에서의 인턴십 등 실무교육에 특화된 학교임
 - * 브루고뉴프랑슈콩테 대학(Université Bourgogne Franche-Comté : UBFC)은 22개 도시에 위치한 7개 종합대학의 공동체로 2015년 법령에 따라 결성되었으며, 총 학생 규모는 56,000명임. UBFC 학생들은 스포츠경영 및 스포츠학 관련 강의를 프랑슈콩테 대학에서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음
 - ** 문화·스포츠·건강·사회 연구소(C3S: (Laboratoire culture, sport, santé, société)
 - *** 스포츠단과대학의 인턴십 연계 단체: 부르고뉴 지역올림픽 및 스포츠 위원회, 종목별 연맹(테니스, 배드민턴, 아이스하키, 핸드볼, 배구, 유도, 자전거 등)
- 구성요소

구분	내용
교육연구단 (UFR: Unité de Formation et Recherche)	언어, 인문 및 사회 과학 - SLHS 과학 기술 - ST 법, 경제, 정치 및 경영 과학 - SJEPC 건강 과학 - Santé 스포츠 교육 진흥 및 연구단 - UPFR Sports 과학, 엔지니어링 및 산업 관리 - STGI
학회 및 학교 (Les instituts et l'école)	브장송-브술(Besançon-Vesoul)의 IUT - IUT * 스포츠단과대학은 브장송에 소재 벨포르-몽벨리아의 IUT(Instituts Universitaire Technologie) 프랑슈콩테(Franche-Comté)의 고등 기술원 - ISIFC 경영 연구소 - IAE 일반 관리 준비기구 - IPAG 고등 교육 및 학교 - ESPE 우주 과학의 관측소

구분	내용
지역 및 일반 서비스 (Les services communs et généraux)	국제 관계 및 프랑코 포니 학회 - DRIF 직업 배치 오리엔테이션 서비스 - OSE 대학 원격 교육 센터 - CTU 프랑슈-콩테(Franche-Comté) 대학 출판부 - PUFC 예방 의학 및 건강 증진 대학 서비스 - SUMPPS 응용 언어학 센터 - CLA 연구의 가치화 산업 및 상업 활동 서비스 - SAIC 평생 교육 공동 문서 서비스 - SCD 오픈 대학 - OU

○ C3S 연구소 소개

- C3S 연구소장 길 페헤올 Gilles FERRÉOL
- 프랑슈콩테대학의 교육 진흥 및 연구단(UPFR : Unité de Promotion Formation et Recherche) 중 스포츠학부에 부속된 연구소로 2012년에 창설
 - * 교육연구단(UFR)에는 의약학부 부속으로 '상피의 기능 및 부전 연구소', '심장 및 혈관 질환의 예후 인자 연구소', 인문사회학부 부속으로 '출판 문학 언어 컴퓨터 예술 교육 연설 연구소' 등이 있음
- 동 훈련의 교섭 창구인 에릭 모냉(Éric Monnin) 교수 등 25명의 연구원과 30명의 박사과정 학생이 연구 중
- 연구 주제 : 지식과 문화 역학의 사회 - 인류학, 대표 및 육체 관행, 건강 및 신체 활동 및 스포츠

3. 기관 교섭

○ 교섭창구

- 스포츠단과대학 에릭 모냉 교수에게 초청을 요청하는 서신과 이력서, 대한체육회 국제협력본부장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이메일로 발송하였고, C3S연구소장 명의로 모냉 교수 감독 하에 훈련토록 초청장을 회신 받음

* 프랑슈콩테 대학의 에릭 모냉 교수는 스포츠사회학자로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자문을 맡고 있으며, 2024파리올림픽 유치를 위한 실무작업에 참여하였음. 2017년에 저서 『샤모니에서 평창까지 동계올림픽의 모든 것』을 한국에서 출간(대한체육회장이 추천사를 썼음)하였으며 2018년 2월 한국 부산에서 초청 강연을 한 바 있음. 올림픽 전문가이자 스포츠단과대학의 인턴십 책임자로서 종목별 경기단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음

○ 훈련경비

- 초청기관측에서 별도 훈련경비 요구하지 않음

II. 서론

1. 연구 배경

- 올림픽·월드컵 등 메가 이벤트*의 유치 및 개최는 과도한 시설 조성이나 운영 상의 미숙으로 인해 대규모 적자를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때문에 공격받기도 하나,

* 메가 이벤트: 국제경기단체가 주최하고, 각 개최주기별로 다른 개최국가 경기연맹 또는 개최도시에서 주관하는 대회(올림픽, FIFA월드컵, 유니버시아드 등)

- 우리나라 스포츠 발전의 모멘텀으로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하고, ‘유치 및 개최’ 그 자체는 중립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운영하는 실무에 따라 성패가 좌우된다고 보는 것이 정확함

- 행사를 개최하고자 하는 지자체 또는 경기단체에서도 행사 운영을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하우(Know-how)를 확보하려는 수요가 있으나, 이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나 대한체육회의 지원은 미흡함

- 국제스포츠대회가 완료되면, 일반적으로 대회 백서 또는 공식보고서* 형태로 대회 관련 정보를 기록하여 차회 유사 대회 개최 사업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 2010년대까지 백서·보고서는 종이 형태로 되어 있어,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관계자 범위가 매우 한정적이었음.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이후로는 PDF파일이 담긴 USB를 종이책자 내부에 삽입하였고, 개최도시 홈페이지에도 해당 PDF파일을 게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조치함

- 대회 조직위원회에서 실무자들이 체감하고 선호하는 실무 습득 방식은 해당 대회 현장 참관이나 디브리핑*을 통한 실무자간 직접 업무지식을 전달하는 방식임

* 디브리핑: 국제대회를 완료한 조직위원회 직원들이 차회 또는 유사대회 조직위원회 직원들에게 노하우를 전수하는 워크숍(예: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디브리핑 워크숍을 열어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조직위원회 직원들에게 대회 운영 노하우를 전수함)

-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의 보조사업을 통해 매년 35건 내외의 국제스포츠행사(대회 및 총회)에 보조금을 ‘지급’ 하고 있으나, 이에 더하여 대회 운영 전 단계*에서 전문성 있는 실무 ‘지원’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어, 훈련과제 선정을 통해 지원방식 개선을 모색하고자 함

* ①행사의 유치를 성공하기 위한 효율적인 홍보마케팅 방법, ②대회 시설을 적정 규모로 조성하는 방법, ③경기 운영 및 부대 행사의 유기적 개최 방법, ④사후활용을 위한 전략적 기획 방법 등

- 매년 우리나라에서 국제스포츠행사가 다수 개최되고 있지만, 지자체별로 산발적으로 개최되기 때문에 행사 유치 및 운영의 전문성이 낮음

- 국제스포츠행사 전문기관이 없는 상황에서,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국제대회를 유치한 결과, 당초 계획보다 총사업비가 크게 증가하여 국가와 지방 재정에 부담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음

* 최근 국제대회 총사업비 증가 현황

-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前 856억원→ 後 3,572억원
-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前 2,811억원→ 後 6,393억원
- 2018평창동계올림픽 前 6조 6,140억원→ 後 14조 3,109억원

- 국제스포츠행사의 개최 전 과정에 관여하는 전담 지원인력 또는 기관이 존재하지 않아, 개최 주체(지자체 또는 조직위원회)가 조언이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곤란함

- 이 때문에 올림픽·월드컵·세계선수권대회 등 메가 이벤트를 개최할 때마다 사실상 ‘초보’ 조직위원회가 겪게 되는 어려움과 폐단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음

* 국제스포츠행사 개최 현황(대한체육회 집계)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국제대회	33건 (29종목)	31건 (24종목)	36건 (26종목)	33건 (29종목)	37건 (27종목)
국제총회	1건(1종목)	4건(4종목)	2건(2종목)	2건(2종목)	2건(2종목)
계	34건	35건	38건	35건	39건

-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 업무계획*을 통해 ‘(가칭)국제스포츠행사지원센터’ (이하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국제대회 개최全过程를 지원하는 전담기구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임

* 2018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업무계획 ‘혁신성장을 이끄는 문화- 현장에 더욱 밀접하고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체계’ 중

- 2018년에는 지원센터 설립 추진을 위한 준비작업으로 ①국제스포츠이벤트 유치 및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한 로드맵 수립, ②과거 및 해외사례 분석 등 자료 축적, ③지식 통합 아카이브 구축 등 3가지 용역을 실시함

- 지원센터의 핵심은 국제스포츠행사 전문가가 비전문가(대회조직위원회, 경기단체 등)들을 지원하여 유치, 개최, 사후활용의 단계까지 조언한다는 것이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방식은 조사 및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

- 로드맵 수립 연구를 통해 일반적 지원방식은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타국가의 유사 정책현장에서 실제로 구현되는 지원방식을 참관하는 등 실질적인 조사를 통해 지원센터 사업 기획과정에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됨

2. 연구 과정

- 올림픽, 월드컵 등 대규모 국제스포츠행사는 IOC, FIFA 등 국제 조직과 개최국의 조직위원회가 운영하는 명목 상 ‘민간’의 행사이나, 사실상 개최국 정부나 공공기관의 역량과 예산까지 수반되어야 하는 ‘국가적’ 차원 행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국제기구에서 대회를 유치하려는 도시나 국내협회에게 개최국 정부가 이 대회의 개최를 지원하고 보장한다는 증명을 요구하는 것도, 올림픽 개최국 발표 행사에 후보국가의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 비롯된 것임.
- 이 때문에, 대규모 국제스포츠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민간 영역의 전문성만큼이나 개최국 정부의 지원에도 전문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어떻게 하면 정부가 국제스포츠행사를 전문성 있게 지원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에 대해, 공무원으로서 답을 찾는 것이 이 연구의 핵심임.
- 이 훈련과제의 연구과정은 크게 4부분으로 진행하였음. 첫째, 한국의 국제스포츠행사 개최 지원과 관계된 기관 및 관계 법률을 소개하고, 지원 방식을 미시적으로 설명하였음. 국제스포츠행사 개최 지원방식을 비교하는 것이 이 보고서의 목적이기 때문에, 관계 기관 부분에서는 대한체육회와 업무적으로 중복성이 많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였음. 같이 사유로 관계 법률 부분에서도 중복되는 규정이 많은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이 법의 일반법인 「국제경기대회지원법」을 정리하였음.
 - 관계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 관계 법률 : 국민체육진흥법, 국제경기대회지원법
 - 미시적 관점의 국제경기대회에 대한 지원 : 대규모 국제경기대회에 대한 지원, 종목별 경기단체가 개최하는 행사에 대한 지원,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행사에 대한 지원

- 둘째, 프랑스의 국제스포츠행사 개최 지원과 관계된 기관 및 관계 법률을 소개하고, 지원 방식을 미시적으로 설명하였음. 특히 다음 장에 이어지는 거시적 관점의 국제스포츠행사 지원방식을 비교하는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기관과 법률에 초점을 맞추어 자료를 정리하였음.
 - 관계 기관 : 스포츠부(Le Ministère des Sports), 프랑스국립올림픽위원회 및 스포츠위원회 (Le Comité National Olympique et Sportif Français : CNOSF), 국립체육개발센터(Le Centre National pour le Développement du Sport : CNDS), 올림픽 및 패럴림픽의 부처간 대표단, 대규모 스포츠행사를 위한 부처간 대표단(Délégué interministériel aux jeux Olympiques et Paralympiques : DIJOP, Délégué interministériel aux grands événements sportifs : DIGES), 지방당국 협의체(Collectivités territoriales), 국가스포츠위원회(Conseil National du Sport : CNS)
 - 관계 법률 : 스포츠법전(Code du sport), 대규모 스포츠 행사에 위한 부처간 대표단 설치에 관한 법규명령, 2024파리올림픽 및 패럴림픽을 위한 부처간 대표단 설치에 관한 법규명령
 - 미시적 관점의 국제경기대회에 대한 지원
- 셋째, 거시적 관점에서 한국과 프랑스의 국제스포츠행사 지원방식을 비교하고 시사점을 적시하였음. 한국과 프랑스의 지원 체계가 일대일로 대칭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시적인 구조를 대조해야 비로소 양국의 차이점을 이해할 수 있음. 이는 한국의 지원방식 개선을 위한 실마리를 찾아내는 작업이기도 하였음. 국제스포츠행사의 지원과 관련된 한국과 프랑스의 지원체계를 비교한 기준은 다음 3가지 사항임.
 - 스포츠 소관 부처의 공무원 운영
 - 국제스포츠행사와 관계된 법률에 나타난 지원 체계
 - 국제스포츠행사 관계자간 협력관계
- 넷째, 앞선 비교자료들과 시사점을 바탕으로 한국의 국제스포츠

행사 개최 지원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 2가지 방안을 제안하였음.

- 국제스포츠행사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 구성
- 담당공무원의 전문직위 운영 개선

○ 자료는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 및 연차보고서 등을 통해 기관별 주요 사업내용 및 조직을 조사하였음. 법령은 양국의 공식 법령 사이트를 관계법령을 확인하였음. 그 외에, 훈련기관 연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와 기관 관계자로부터 메일 등으로 수신한 자료를 참조하였음.

○ 용어들에 대한 정의는 다양할 수 있으나, 이 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기로 함

- ‘국제스포츠행사’는 전문 선수들이 출전하여 경쟁하는 국제 경기대회를 뜻함. 이 보고서는 국가적 차원의 대규모 국제경기 대회에 대한 지원방식의 개선방안을 찾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국제회의나 스포츠 관련 아마추어 축제는 논외로 함.
- ‘정부’는 넓은 의미에서 지방 정부까지 포함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글에서는 주로 중앙정부, 특히 한국의 문화체육관광부와 프랑스의 체육부를 지칭하는 좁은 의미로 사용함. 다만, 용어를 특히 구별해야 하는 부분에서는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 등으로 명시하여 사용하였음.
- ‘지원’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물론, 전문성 있는 조언을 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하는 것을 포함하는 의미임. 한국의 경우, 보조금이 중앙정부의 예산일지라도 실제로 이를 직접 피보조단체(경기단체 등)에 지급하는 주체가 대한체육회인 경우에는 ‘지원 주체’를 대한체육회로 설명하기로 함.

○ 해당 기관에서 업무담당자를 공개한 조직도는 담당자명을 밝혔으며, 기관명 또는 부서명 등은 한국어로 다양하게 번역될 여지가 있으므로 프랑스어 명칭을 병기하였음.

Ⅲ. 우리나라의 국제스포츠행사 지원

1. 지원 체계 및 관계 법률

1) 관계기관

가.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문화·예술·영상·광고·출판·간행물·체육·관광,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 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임. 1948년 공보처로 출범하여 1968년 문화공보부로 설치된 뒤 1989년 문화부와 공보처로 분리되었고, 1993년 문화체육부, 1998년 문화관광부를 거쳐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로 재편되었음. 중앙행정부처들이 모여 있는 세종특별시에 소재하며, 650여명이 근무함. 1명의 장관, 2명의 차관, 10개의 하부단위(실국*)로 세분되어 있음.

* 문체부 실국 : 기획조정실, 문화예술정책실, 종무실, 콘텐츠정책국, 저작권국, 미디어정책국, 국민소통실, 체육국, 관광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 문체부 산하의 18개 소속기관(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국어원 등)에도 약 2,100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음. 소속기관은 본부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특정 업무를 전담하여 담당하는 공무원이 많은 점, 소속기관에서 특정 업무 전담하여 담당하는 직원은 대규모 국제스포츠행사 업무를 맡을 가능성이 희박한 점을 고려하여, 이 보고서에서는 대부분의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보직을 변경하며 근무하는 문체부 본부를 중심으로 논하기로 함.
- 문체부는 체육정책의 비전으로 “사람을 위한 스포츠, 건강한 삶의 행복”을 내세우며, 3가지 정책방향과 4대 추진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2030 스포츠 비전, 2018년 3월)

<3가지 정책 방향>

- ① 운동하기 편한 나라 :스포츠 복지는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며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
- ② 스포츠클럽 시스템 정착 : 스포츠클럽을 통해 생활스포츠와 전문스포츠가 선순환하는 스포츠 시스템 정착
- ③ 스포츠 가치의 사회적 확산 : 공정·협동·도전 등 스포츠 가치가 국민의 삶 속에 스며들 수 있는 사회적 여건 조성

<4대 추진전략>

- ① 신나는 스포츠 :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보편적 복지 차원의 스포츠 복지 국가 실현
- ② 함께하는 스포츠 : 이웃과 함께, 지역사회가 함께, 사회적 약자와 함께 남과 북이 함께 스포츠를 매개로 어울림으로써 사회통합을 지향
- ③ 자랑스러운 스포츠 : 공정·협동·도전 등 스포츠 가치의 사회적 확산으로 국민 모두가 자랑할 수 있는 스포츠 문화 형성
- ④ 풀뿌리 스포츠 : 신나는 스포츠, 함께하는 스포츠, 자랑스러운 스포츠 달성을 위한 추진체계로서 국민 참여 중심의 민주적 선진 스포츠행정 시스템 구축

- 문체부는 체육 분야 사업의 대부분을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국제경기대회조직위원회 등 산하 공공기관들의 구체적인 계획을 승인하고 감독함으로써 추진하고 있음.

나. 대한체육회

- 대한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상에 명시된 특수법인으로서, 한국의 아마추어 스포츠를 육성하고 경기단체를 지도 및 감독함. 이사회와 대의원총회, 12개의 소위원회, 사무처, 57개 가맹경기단체, 16개의 시·도체육회, 17개의 해외지부로 구성되어 있음.

- 서울에 소재하며, 200여명이 근무함. 대한민국 아마추어 스포츠의 총괄단체로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Olympic Council of Asia),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Federation Internationale du sport Universitaire), 국가올림픽위원회 총연합회(ANOC:Association of National Olympic Committees) 등 국제 스포츠 기구에 대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함.
- 1920년 창립한 조선체육회를 모체로 하여 출발하였음.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을 통합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실현하기 위해 2016년 3월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면서, 국민생활체육회¹⁾와 통합되었음.
- 주요 사업은 ① 스포츠 활동을 통한 학교체육 및 국민체육 육성 보급 ② 올림픽대회와 아시아경기대회, IOC의 후원을 받는 지역 대회, 대륙대회, 대륙간 대회 및 이에 준하는 국제종합경기대회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단의 구성과 파견 ③ 국제대회의 국내 개최를 위한 후보도시 선정 및 대회 국내 개최 시 대회의 총괄, 조직 및 관리 ④ 국제스포츠 교류, 국제체육기구회의, 올림픽운동 및 교육문화 프로그램과 관련된 제반 사업 ⑤ 스포츠와 관련 환경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사업 ⑥ 가맹단체와 시·도체육회의 지원 및 육성 ⑦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소년체육대회 등 각종 종합체육대회의 개최 ⑧ 스포츠 의과학의 진흥과 선수 및 지도자의 육성 및 경기기술의 연구 촉진 ⑨ 체육인의 권익증진 및 복지를 위한 사업 ⑩ 체육회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원 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등임.

1) 국민생활체육회: 1988년 한국에서 개최된 제24회 올림픽경기대회 이후 일반 국민의 체육활동 참여 열기가 고조되고, 국민건강 및 여가 선용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면서 민간 차원의 생활체육을 육성하고 건전한 체육문화를 창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음.

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국민체육진흥공단’)은 1988년 서울하계올림픽을 기념하여, 1989년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공익법인으로서 설립되었으며 국민체육진흥기금을 독립된 계정으로 운영 및 관리하고 있음. 서울에 소재하며, 800여명이 근무함
- 주요사업은 ①국민체육진흥을 위한 연구 개발 및 보급 사업, ②국민체육시설의 확충을 위한 사업 및 재정 지원, ③선수, 체육지도자, 국제심판 요원 양성과 장려 사업, ④올림픽대회와 기타 주요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선수로서 은퇴한 자 또는 그 체육지도자에 대한 생활보조금 지원, ⑤건강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사업 및 재정 지원, ⑥서울올림픽대회 기념행사의 개최 지원 및 올림픽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사업, ⑦우수 체육용 기구 생산업체 및 체육시설자에 대한 자금 융자, ⑧학교 운동 경기부의 육성을 위한 사업, ⑨체육과학의 연구 보급, 선수의 과학적 훈련 및 국민체육 증진에 관한 사업 등임.
- 국민체육진흥기금은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과 체육복권 발행의 수익금, 회원제 골프장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경륜·경정 사업 출자 등에 따른 수익금, 체육진흥투표권²⁾의 발행 사업에 따른 기금 출연금,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금(시설물의 대여, 임대수입 등)으로 조성됨
- 국민체육진흥공단은 2018년 국민체육기금 1조 4931억 원을 조성하였음 : 체육진흥투표권 1조 3,465억 원, 경륜 경정 229억 원, 기타 1,237억 원 (기타 : 회원제골프장부가금 343억, 복권기금적립금 683억, 기금 여유자금운용 등 211억)

2) 체육진흥투표권 : 운동 경기를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현금금을 교부하는 표권.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을 위해 운영하는 국가정책사업으로서, 이를 통해 조성된 기금은 한국 스포츠 발전을 위해 다양하고 사용되고 있음

2) 관계 법률

- 문체부는 문화예술, 콘텐츠, 관광, 체육 부문에 총 62개의 법률을 소관하고 있음. 이 중 체육 부문 법률은 12개³⁾이며, 국제경기대회 개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률은 ‘국민체육진흥법’과 ‘국제경기대회지원법’임.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은 평창올림픽에 맞추어 제정한 특별법이므로, 이글에서는 별도로 논의하지 않고 이 법의 일반적인 내용을 규정한 ‘국제경기대회지원법’을 다루기로 함.

가. 국민체육진흥법

- 국민체육진흥법은 1984년에 제정되었으며, 이 법의 목적을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국민 생활을 영위하게 하며, 나아가 체육을 통하여 국위 선양에 이바지” 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 이 법은 체육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준수사항들을 6개의 장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음.
- 국제스포츠대회와 관련해서는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주요 사업으로서 ‘(장애인) 체육경기대회의 개최와 국제 교류’가 명시되어 있음. 이 규정을 근거로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국제스포츠대회 개최를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3) 경륜·경정법, 국민체육진흥법,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생활체육진흥법, 스포츠산업진흥법, 씨름진흥법, 전통무예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포물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학교체육진흥법(교육부 공동소관)

<국민체육진흥법 주요내용>

- 제1장 총칙: 목적, 정의, 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기본 시책의 수립, 지역 체육진흥협의회, 협조
- 제2장 체육 진흥을 위한 조치 : 체육의 날과 체육 주간, 지방 체육의 진흥, 학교 체육의 진흥, 체육지도자의 양성, 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의 지정, 지정기관에 대한 평가, 지정의 취소,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체육 시설의 설치, 선수의 보호 육성,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보상, 선수의 금지행위, 도핑 방지 활동, 체육의 육성,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 인증, 체육 용구의 생산 장려, 지방자치단체와 학교에 대한 보조
- 제3장 국민체육진흥기금 : 기금의 설치, 기금의 조성, 올림픽 휘장 사업, 기금의 사용, 자료 제공의 요청 및 전상망의 이용, 부가금의 징수
- 제4장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사업,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위탁, 유사행위의 금지, 환급금, 위탁 운영비, 수익금의 사용,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 제한, 사업 계획의 승인과 감독, 체육진흥투표권 발표의 무효
- 제5장 체육단체의 육성 : 통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설립, 선수의 도핑 검사,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임원, 회계 감독, 자금 차입, 조세 감면, 유사 명칭의 금지, 감독
- 제 6장 보칙 : 보고 검사, 청문, 포상금 지급, 권한의 위임 및 위탁, 규제의 재검토, 벌칙, 몰수 추징, 자격정지의 병과, 징역과 벌금의 병과, 양벌규정, 과태료

나. 국제경기대회지원법

- 국제경기대회지원법은 2012년에 제정되었으며, 이 법의 목적을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체육을 진흥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
- 이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는 각각의 국제경기대회 명칭을 법률 제명에 기재하였기 때문에,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처럼 긴 명칭의 법률도 존재했음. 국제경기대회지원법은 올림픽대회, 월드컵축구대회 등 국가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국제경기대회를 유치할 때마다 한시적인 특별법을 제정해왔던 행정적인 낭비를 개선하고, 국제경기대회 지원 기준 등에 대한 일반원칙을 확립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된 것임.
- 이 법은 정부가 국제경기대회의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준수사항들을 6개의 장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음.

<국제경기대회지원법 주요내용>

- 제1장 총칙 : 목적, 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2장 대회 유치 승인 및 평가 : 총괄 조정 및 협조, 대회 유치 승인, 유치 신청 전 보고, 승인의 취소, 대회에 대한 사전 및 사후 평가, 국제경기대회지원위원회
- 제3장 조직위원회 : 조직위원회의 설립, 국가 등의 지원, 공무원 등의 파견, 기금의 설치, 국유 및 공유 재산의 대부, 자금의 차입, 채권 등의 매입의무 면제, 수익사업,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 발행, 기념주화의 발행, 기념우표의 발행, 수수료
- 제4장 대회관련 시설 :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대회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사업계획 승인의 특례, 대회관련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사업,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행위 등에 제한,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토지 등의 수용, 준공 확인

- 제5장 보칙 : 대회 휘장 등의 사용,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벌칙 적용에
서의 공무원 의제
- 제6장 벌칙 : 벌칙, 과태료

○ 이 법은 모든 국제경기대회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이 법 제2
조에 정의한 다음과 같은 “국제경기대회”에만 적용됨.

- 국제올림픽위원회,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가 주관하는 올림픽대회
- 아시아올림픽평의회, 아시아장애인올림픽위원회가 주관하는 아시아
경기대회
- 국제대학스포츠연맹이 주관하는 유니버시아드대회
- 국제축구연맹이 주관하는 월드컵축구대회
- 국제육상경기연맹이 주관하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
- 그 밖에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대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회

[「국제경기대회지원법 시행령」 제1조의2(국제경기대회) 국제경기대회 지
원법」 제2조제1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회“란 다음 각 호
의 대회를 말한다.

1. 국제사격연맹이 주관하는 세계사격선수권대회
2. 국제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이 주관하는 세계시각장애인경기대회
3. 세계태권도연맹이 주관하는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2. 미시적 관점의 국제경기대회에 대한 지원

- 행정 실무자의 관점에서, 국제경기대회는 지원 대상을 기준으로 크게 3가지로 구분됨. 첫째는 ‘국제경기대회지원법’ 상에 정의된 ‘대규모 국제경기대회’ 이고, 둘째는 종목별 경기단체가 주최하는 국제대회이며, 셋째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국제대회임. 각 대회의 성격과 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각론에서 상세히 설명하기로 하겠음.

1) 대규모 국제경기대회에 대한 지원

- ‘대규모 국제경기대회’란 ‘국제경기대회지원법’의 제1조에 정의되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국제대회를 말함.
- 국제대회가 이 법의 지원 대상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3단계 절차를 거쳐야 함. 첫째, 대회를 준비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종목별 경기단체가 대회 개최를 위해 10억 원 이상의 국고 보조금을 문체부에 요청하고, 문체부가 주관하는 국제체육대회심사위원회⁴⁾의 심사를 거쳐, 문체부로부터 대회의 유치를 승인 받아야 함. 둘째, 문체부가 승인한 내용을 다시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국제행사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정부로부터 대회의 유치를 승인 받아야 함. 셋째, 정부 승인을 받은 대회 명칭이 법령에 포함되도록 법률 또는 대통령령을 개정해야 함. 문체부와 기획재정부의 대회 유치 승인 절차는 각 부처의 내부규정⁵⁾에 따름
- ‘대규모 국제경기대회’에 대해서는, 문체부가 직접 해당 대회

4) 국제경기대회지원법 제8조(국제경기대회지원위원회) ① 대회 개최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제경기대회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5) 문체부의 훈령 「문화체육관광부 국제행사의 유치 개최에 관한 규정」, 기획재정부의 훈령 「국제행사의 유치 개최 등에 관한 규정」, 「국제행사 관리지침」

의 조직위원회 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승인 및 감독하며, 대회와 관련된 보조금을 교부함.

- 보조금은 크게 시설비와 운영비로 나뉨. 시설비는 대회 관련 경기장 등 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비용으로 문체부는 총 시설비의 30%를 대회가 개최될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함. 예컨대,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강원도), 2018창원 세계사격선수권대회,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이에 해당됨. 운영비는 조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원칙적으로 보조금으로써 지원하지 않음. 다만, 2017무주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의 경우처럼 대회 경기장을 이미 갖추고 있어, 대회 조직위원회에 운영비를 교부한 사례도 있음.
- ‘국제경기대회지원법’에 따라, ‘국제경기대회지원위원회’⁶⁾는 ‘대규모 국제대회’의 개최와 관련된 주요 정책은 심의 조정함. 이 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이고, 각 부처의 장관급 인사 30여명으로 구성되며, 안건이 발생할 경우 개최됨. 이때에 대회의 조직위원회는 준비상황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요청하며, 위원회는 각 부처 간 협조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하여 조직위원회를 지원하고 있음.

2) 종목별 경기단체가 개최하는 행사에 대한 지원

- 대한체육회는 매년 산하 종목별 경기단체를 대상으로 국제대회 개최를 지원하고 있음.
- 2018년에 경기단체가 개최하는 국제경기대회 지원 기준을 살펴보면, 대회의 중요도에 따라 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최소 운영비

6) 국제경기대회지원법 제8조(국제경기대회지원위원회)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를 단체별로 우선 균등하게 배분하고, 대회 규모를 반영하여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며, 정책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종목⁷⁾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추가하였음. 2018년에는 총 사업예산이 3,573백만 원이었으며, 24개 종목 31개 대회가 선정되었으며, 1개 대회당 보조금은 약 100백만 원임.

<종목별 경기단체가 개최하는 행사에 대한 지원 기준 (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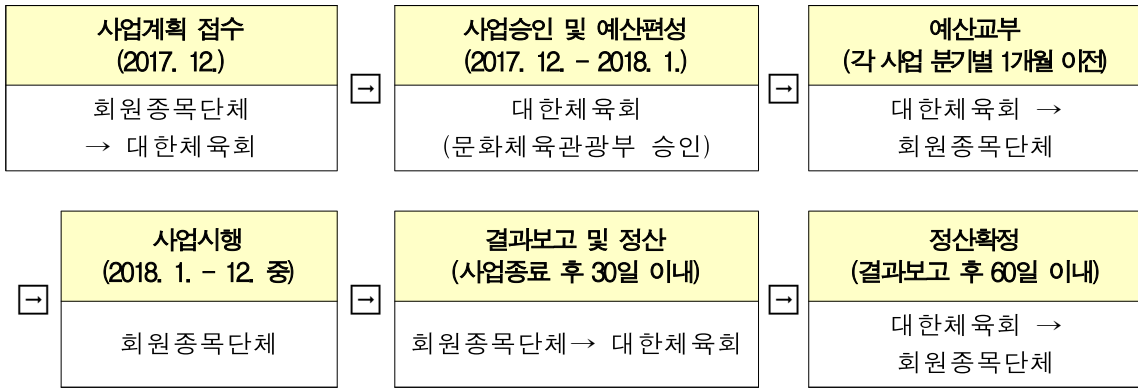
지원기준(단위: 백만 원)			세계선수권	정책대회 ⁸⁾	기타대회
1. 대회개최 최소운영비 균등배분			100,000	80,000	60,000
2. 기준별 예산배분	2-1. 국고 지원 요청액 대비		30%	25%	25%
	2-2. 경기단체 자체비용 대비		20%	15%	10%
	2-3. 올림픽 종목		30,000	30,000	20,000
	2-4. 지난 대회에서 성적이 우수했던 종목 *2014 소치올림픽, 2014 인천아시안게임, 2016 리우올림픽		25,000	20,000	10,000
	2-5. 참가인원	400명 이상	8,000	8,000	8,000
		300~400명 미만	7,000	7,000	7,000
		200~300명 미만	6,000	6,000	6,000
		100~200명 미만	5,000	5,000	5,000
		100명 미만	4,000	4,000	4,000
	2-6. 참가국 수(참가국 당)		1,000	1,000	1,000
	2-7. 대회중요도	성인대회	10,000	-	-
		청소년대회	5,000	-	-
3. 추가 지원	3-1. 동계종목		20,000	-	-
	3-2. 한국이 중주국인 종목		-	30,000	-
	3-3. 대학스포츠		-	40,000	-

7) 정책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종목은 고정적인 것은 아니고, 정책적인 필요에 따라 변경됨. 2018년에는 동계 종목, 한국이 중주국인 종목(태권도, 바둑), 대학스포츠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추가 지원되었음.

8) 정책대회: 2018년에는 2018아시아퍼시픽 대학농구 챌린지, 2018제주코리아오픈

- 대한체육회가 사업을 추진하는 절차와 일정은 다음과 같음.

<종목별 경기단체가 개최하는 행사에 대한 지원 추진 절차와 일정(2018년)>



3)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행사에 대한 지원

- 문체부는 매년 광역 지방자치단체⁹⁾가 주최하는 국제대회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음.
- 보조금을 지원 받을 국제대회들을 심사를 통해 선정하는 것은 2017년부터 시작되었음. 2016년까지는 국회에서 정부예산을 편성할 때에 지역 국회의원들이 본인 지역에서 개최되는 행사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편성하는 사례가 빈번하였음. 문체부와 기획재정부는 지원 사업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하기 위해 선정 과정을 추가하였음.
- 2018년에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경기대회 지원 기준을 살펴보면, 국고 보조금 지원 기준을 총사업비의 최대 50%, 10억 원 미만으로 한정하고 있음. 10억 원 이상의 국고 보조금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문체부와 정부로부터 ‘대규모 국제경기대회’ 유치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임. 그리고, 외국인 선수가 5

국제태권도대회, 제13회 국무총리배 세계바둑선수권대회

9) 한국의 ‘광역 지방자치단체(regional local authority)’는 프랑스의 레지옹(région)·데파르트망(département)과 유사함

개국 이상, 총 선수 수의 5% 이상 참여해야 함.

- 2018년에는 총 사업예산이 4 990백만 원이었으며, 11개 광역자치단체의 25개 대회가 선정되었으며 1개 대회당 보조금은 약 200백만 원임. 2018년에 보조금을 지급할 대회는 2017년 11월에 선정과정을 진행함. 이는 연초나 1/4분기에 대회가 개최되는 경우를 고려한 것임.
- 심사기준은 계량평가 60점과 정성평가 40점으로 나뉨. 계량평가는 국비요청비율, 참가국 및 외국인 선수 참가비율, 우수 선수 참가비율을 평가함. 정성평가는 대회목적의 공익성, 소요경비의 적정성, 대회 규모의 적정성과 경제성을 평가함. 대회와 연계하여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까지 수립한다면 가산점을 부여함. 정성평가를 하는 심사위원단은 문체부 내 공무원 2명과 외부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됨.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행사에 대한 지원 기준 (2018년)>

구분	평가내용	배점	비 고
계량 평가	· 국비요청 비율	40점	· 30%이하 요청 시 40점 배점
	· 참가국 및 외국인 선수 참가비율	10점	· 참가국 수 · 외국인 선수 참여 비율
	· 우수 선수 참가 비율	10점	· 세계 랭킹 30위 이내, 국내 랭킹 3위 이내 우수 선수 참가 인원 수
	계	60점	
정성 평가	· 대회목적 공익성, 소요경비 적정성 · 대회규모 적정성 및 경제성 등	40점	· 최근 5년간 안전사고 발생한 대회는 횡수당 10점 감
합계		100점	· 대회연계 관광활성화 계획 수립 시 최대 5점 가점

IV. 프랑스의 국제스포츠행사 개최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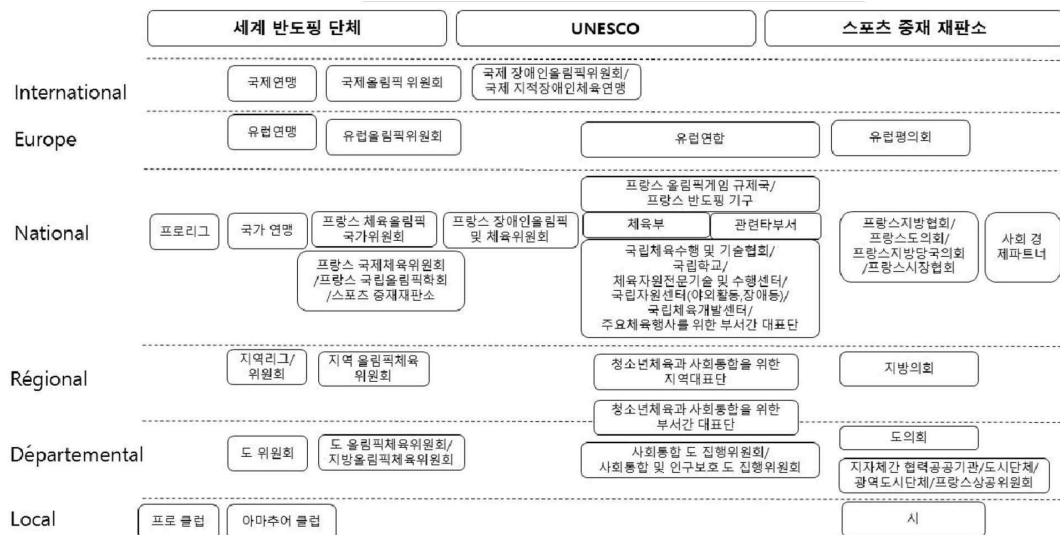
1. 관계 기관 및 관계 법률

1) 관계 기관

가. 스포츠부(Le Ministère des Sports)

- 스포츠부(Le Ministère des Sports)는 스포츠정책의 주요 목표를 정의하고, 스포츠법을 비롯한 법적 체계를 설정하며, 공공의 이익을 존중할 책임이 있음. 국가의 스포츠정책은 다음 4가지 영역으로 구성되며, 이는 프랑스의 국내 및 국제·유럽 수준의 스포츠 활동에 적용됨.
 - 모두를 위한 스포츠의 발전, 특히 스포츠 향유에 가장 취약한 계층을 함
 - 엘리트체육 조직의 운영, 주요 스포츠 국가 중 프랑스의 순위를 유지한 기 위함
 - 스포츠를 통한 예방, 도핑·폭력·인종차별·부정행위에 대한 투쟁과 선수 보호
 - 스포츠 직업의 진흥 및 스포츠 고용의 촉진
- 스포츠부는 다음과 같은 가치를 도입하여 프랑스의 스포츠 모델의 홍보에 기여하고 있음.
 - 스포츠 실천의 교육적·사회적 차원, 건강과 복지의 요소로서의 스포츠, 다양한 스포츠간의 단합, 전문 및 아마추어 스포츠 간의 연대
- 스포츠부는 스포츠가 국민을 연합·통합하게 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환경·지속가능한 개발 및 생태계 전환에 대한 국가적 노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해야 한다고 강조함.

- 공공 스포츠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스포츠부는 중앙 및 지역 서비스는 물론 공공기관과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음. 프랑스에서 스포츠 조직은 아래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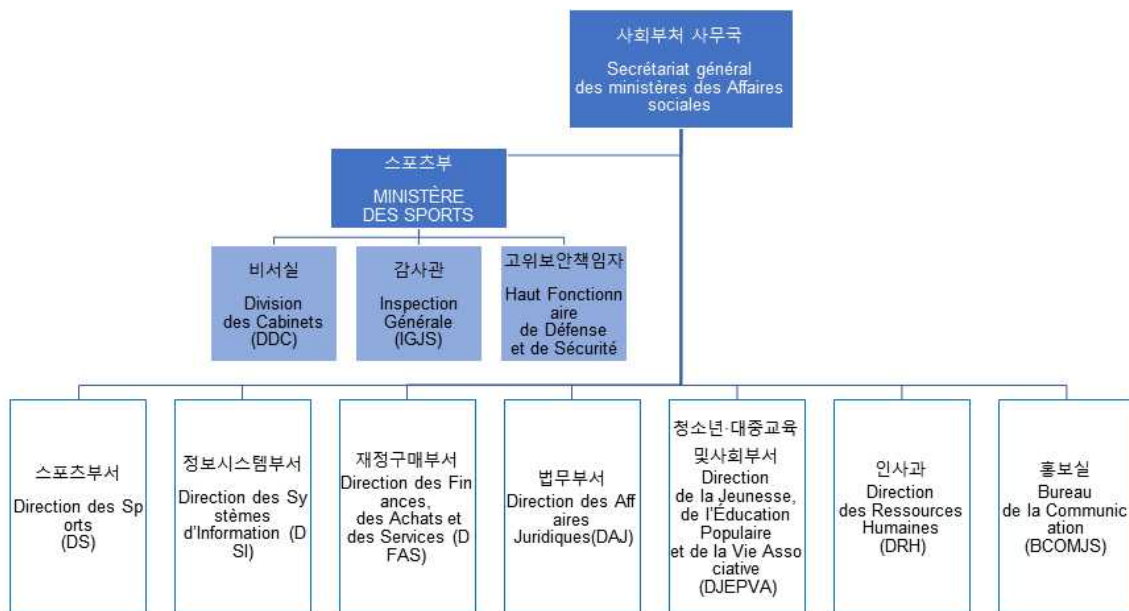
<도표1 : 프랑스의 스포츠 조직도10)>

10) 도표는 프랑스 스포츠부의 홈페이지 (http://www.sports.gouv.fr/IMG/pdf/orgasportfrancais_sigles5.pdf)에서 프랑스어

AdCF: 프랑스 지역 당국 의회	Association des Communautés de France
ADF: 프랑스 도의회	Association des Départements de France
AMGVF: 프랑스 대도시 시장 협회	Association des Grandes Villes de France
AMF: 프랑스 시장 협회	Association des Maires de France
AMA: 세계 반-도핑 단체 (WADA)	Agence Mondiale Antidopage
ANOF: 프랑스 국립 올림픽학회	Académie National Olympique Français
ARF: 프랑스 지방 협회	Association des Régions de France
ARJEL: 프랑스 온라인 게임 규제국	Autorité de régulation des jeux en ligne
AFLD: 프랑스 반도핑기구	Agence Française de Lutte contre le Dopage
CA: 광역도시 단체	Communauté d'Agglomération
CAS: 스포츠중재재판소	Chambre Arbitrale du Sport
CCI: 프랑스 상공위원회	Chambre de Commerce et d'Industrie
CDC: 시 단체	Communauté de Communes
CDOS: 도 올림픽 체육위원회	Comité Départemental Olympique et Sportif
CFSI: 프랑스 국제 체육위원회	Comité Français du Sport International
CIO: 국제 올림픽위원회 (IOC)	Comité International Olympique
CNS: 국가 체육위원회	Conseil National du Sport
CNDS: 국립 체육개발센터	Centre National pour le Développement du Sport
CNOSF: 프랑스 체육 올림픽 국가위원회	Comité National Olympique Sportif Français
COE: 유럽 올림픽 위원회 (EOC)	Comité Olympique Européen
CPSF: 프랑스 장애인올림픽 및 체육 위원회	Comité Paralympique et Sportif Français
CREPS: 체육 자원, 전문 기술 및 수행 센터	Centres de Ressources, d'Expertise et de Performance Sportives
CROS: 지역 올림픽 체육 위원회	Comité Régional Olympique et Sportif
CTOS: 지방 올림픽 체육 위원회	Comité Territorial Olympique et Sportif
CU: 도시 단체	Communauté Urbaine
DDCSPP: 사회 통합 및 인구 보호 집행위원회	Direction Départementale de la Cohésion Sociale / de la Protection des Populations
DDCS: 사회 통합 도 집행위원회	Direction Départementale de la Cohésion Sociale
DIGES: 대규모 스포츠행사를 위한 부처간 대표단	Délégation Interministérielle des Grands Événements Sportifs
DJSCS: 청소년 체육과 사회 통합을 위한 부서 간 대표단	Direction Jeunesse Sport Cohésion Sociale
DRJSCS: 청소년 체육과 사회 통합을 위한 지역 대표단	Direction Régionale de la Jeunesse, des Sports et de la Cohésion Sociale
EN: 국립 학교 (등산, 수상스포츠 등)	École Nationale (Sport Alpinisme, Sport Nordique, Équitation, Voile)
EPCI: 지자체간 협력 공공기관	Établissement Public de Coopération Intercommunale
CISS: 국제 맹인 체육 위원회 (ICSD)	Comité International des Sports des Sourds
INAS: 국제 지적장애인 체육연맹	Fédération Internationale Sportive pour Personnes avec un Handicap Mental ou Psychique
INSEP: 국립 체육수행 및 기술협회	Institut National du Sport, de l'Expertise et de la Performance
IPC: 국제 장애인올림픽 위원회	Comité Paralympique International
PRN: 국립 자원 센터 (야외스포츠, 장애 등)	Pôle Ressources National (Sport de Nature/Sport Handicap/ Sport Éducation Mixités Citoyenneté)
TAS: 스포츠 중재재판소 (CAS)	Tribunal Arbitral du Sport

원문을, 「해외 스포츠정책 동향 분석 - 체육행정 거버넌스 및 주요 이슈 관련 정책 비교」(한국스포츠개발원, 2016) 140쪽에서 한국어 번역본을 참조하였음.

- 2017년 스포츠부의 예산은 521,000,000유로 이 중 국립체육개발센터 (CNDS, 한국의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유사한 스포츠사업 및 재정관리 공공기관)에 배정된 예산 260,000,000유로였음(이하 1,000,000유로는 “M€”로 표시함)
- 스포츠부의 조직도는 아래와 같음.



<도표2 : 스포츠부의 조직도>

- 스포츠부 내의 스포츠부서(La Direction des Sports : DS)는 3개의 하위 팀, 3개의 담당 및 1개의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음. 파리에 소재하며 152명의 직원이 근무함.
- 전문스포츠팀(La sous-direction de la vie fédérale et du sport de haut niveau) : 프랑스국립올림픽위원회 및 스포츠위원회 (CNOSF, 한국의 대한체육회와 유사한 프랑스의 올림픽위원회 기능을 하는 공공기관)의 승인과 위임을 받은 연합 연맹과의 관계를 소관하고, 전문수준의 스포츠와 관련된 요구(스포츠 우

수 과정, 선수생활, 코칭), 프로스포츠, 스포츠산업, 유럽 및 국제 관계를 담당하여, 스포츠 관련 공공기관을 지원함.

- 생활스포츠 및 윤리팀(La sous-direction de l'action territoriale, du développement des pratiques sportives et de l'éthique du sport) : 친목 스포츠연맹 및 프랑스장애인올림픽스포츠위원회(CPSF)와의 관계를 소관함. 모든 사람을 위한 스포츠의 발전을 촉진하고 스포츠 불평등을 바로 잡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일반 대중 및 특정 고객의 건강을 위한 스포츠를 홍보함. 또한, 도핑·스포츠 도박·스포츠 폭력에 대한 규제를 통해 스포츠의 가치와 윤리의 보전을 추진함. 또한 지역의 생활체육·스포츠 장비·스포츠 부지와 관련된 규제를 담당함. 이는 생활 스포츠의 지역 균형을 감독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및 지방 분권화된 네트워크에 활력을 주기 위함임. 국립체육개발센터(CNDS)와 국가스포츠위원회(CNS)의 사무국과 관계된 업무를 소관함.
- 고용 및 훈련팀(La sous-direction de l'emploi et des formations) : 스포츠 분야의 사전 학습의 검증, 시험의 운영, 학위의 인정 등 고용과 자격 인정에 대한 조정을 담당함.
- 법무담당(La mission des affaires juridiques et contentieuses) : 법률·소송사건을 담당하고, 입법 및 규제 문안을 작성하며, 스포츠연맹이 법적 의무를 존중하도록 감독함.
- 재정담당(La mission de synthèse financière) : 재무 업무를 조정함
- 총무담당(La mission des affaires générales concourt) : 인적·물류의 경영, 홍보, 통계 연구, IT 정보화 등을 담당함
- 국가경쟁력서비스(Un service à compétence nationale) : 스포츠 연맹의 기술고문 운영관리센터(le centre de gestion opérationnelle des conseillers techniques sportifs : CTS)로서 각 스포츠연맹에 기술고문을 배정하고 모니터링하며, 이 요원들을 채용함. 국립체육수행기술협회(INSEP, 한국의 스포츠정책과학원과 유사한 스포츠 과학기술 연구기관)와 연계하여 기술고문의 초기 및 보수교육의 방향을 제안하며 기술고문의 채용을 지원함.

나. 프랑스국립올림픽위원회 및 스포츠위원회 (Le Comité National Olympique et Sportif Français : CNOS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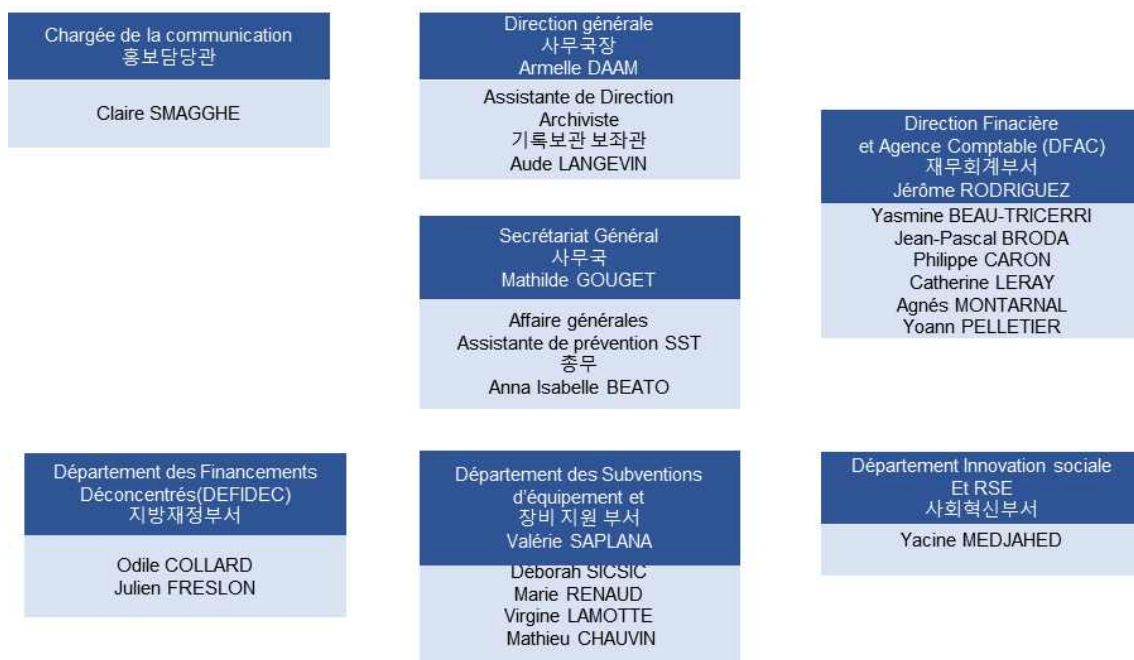
- 프랑스가 추진하는 스포츠 분야 과제들은 정부를 대표하는 스포츠부와 스포츠 사업을 대표하는 프랑스국립올림픽위원회(CNOSF)가 공존하며 협력하여 추진하는 것이 원칙임.
- 스포츠법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인정된 CNOSF는, 모든 종목의 스포츠 연맹(fédérations sportives)으로 구성됨. CNOSF의 회원인 107개 스포츠 연맹 산하에는 18,000,000 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18만 개의 프랑스 스포츠협회(associations sportives)가 있음.
- CNOSF는 프랑스의 IOC를 대표하므로 올림픽 헌장의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함. CNOSF는 국가 올림픽 상징을 소유하고 있으며 좌우명, 국가, 올림픽 상징 및 "올림픽 게임" 및 "올림픽아드"라는 용어의 관리인 역할을 함.
- CNOSF의 임무는 다음과 같음.
 - 공공 기관 및 공식 기관에 프랑스 스포츠를 대표함.
 - 올림픽 스포츠 규칙 준수함
 - 프랑스 선수의 준비 및 선정에 협력하고 올림픽 참가를 보장함.
 - 사회 수준에서 운동 선수의 진흥을 장려함
 - 회원 연맹에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함. 도핑 범죄와 관련된 분쟁을 제외하고 면허 소지자, 스포츠 협회 및 스포츠 단체와 승인된 스포츠 연맹 간의 분쟁 조정 업무를 위탁 받았음.
- CNOSF는 프랑스에서 개최되는 주요 스포츠 행사의 운영을 지원함. CNOSF는 프랑스가 스포츠 행사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이 분야에서 우수성으로 명성을 얻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음. CNOSF의 국제협력부 (International Relations Division)는 주요 스포츠 행사 유치하고자 하는 연맹을 대회 유치 경쟁 단계에서부터 전략 및 운영 면에서 지원하고 있음.

다. 국립체육개발센터(Le Centre National pour le Développement du Sport : CNDS)

- 국립체육개발센터(CNDS)는 스포츠부의 감독을 받는 공공기관으로서, 2018년에 기관의 임무가 다음과 같이 조정되었음.
 - 스포츠를 통한 사회 및 환경 혁신
 - 모든 대중을 위한 스포츠
 - 스포츠 활동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지원 강화
- 다음 사항은 2017년까지 CNDS의 업무였으나, 2018년부터 스포츠부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소관이 변경되었음.
 - 주요 국제스포츠행사의 개최
 - 프랑스국립올림픽위원회(CNOSF)와 프랑스장애인올림픽위원회(CPSF)에 대한 지원
 - 국가 차원의 스포츠 장비
- CNDS의 예산은 매년 프랑스 의회에서 투표로 정해짐. 예산은 약정 예산(AE)과 지급 예산(CP)으로¹¹⁾ 구성되며, 2018년 CNDS의 총예산은 AE로 153M€이며 CP로 186M€임. CNDS의 주요 지출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취약한 지역에 대한 지원 총예산의 50%를 투자하고, 3백만 명의 스포츠종사자를 보조함.
 - 지역 생활스포츠의 발전 지원 : 105,2M€
 - 지역 스포츠 시설에 대한 지원 : 27M€
 - 스포츠 유산 및 사회 계획이 이행 : 27M€
 - 신생·비인기 스포츠의 언론 보도 : 1 M€
 - 대규모 국제스포츠행사에 대한 지원(2017년말까지 약정된 예산) : 4,6 M€

11) 약정 예산(Les autorisations d'engagement : AE)은 해당 연도에 발생할 수 있는 지불 상한선을 뜻하며, 지급 예산(et les crédits de paiement : CP)은 회계 연도 중에 지급할 수 있는 지불 상한선을 뜻함.

- CNDS의 목표는 다음과 같음
 - 모든 연령대의 모든 대중을 대상으로 생활스포츠 육성 지원 : 국가 부담 부분
 - 취약 영역 및 장비 개보수프로그램 지원
 - 스포츠를 통한 사회 혁신 촉진 : 스포츠 유산 및 사회 계획
 - 비인기 스포츠의 언론보도에 기여하는 지원 펀드의 관리 및 스포츠 차별 반대운동 확대
- CNDS의 조직도는 다음과 같음(2018년)



<도표3 : CNDS의 조직도¹²⁾>

12) CNDS, 「Organigramme du Centre National pour le Développement du Sport (CNDS) Version du 25 octobre 2018」

라. 올림픽 및 패럴림픽의 부처간 대표단, 대규모 스포츠행사를 위한 부처간 대표단(Délégué interministériel aux jeux Olympiques et Paralympiques : DIJOP, Délégué interministériel aux grands événements sportifs : DIGES)

- “대규모 스포츠행사를 위한 부처간 대표(DIGES, 현재는 2024파리 올림픽 및 패럴림픽의 부처간 대표를 겸직하고 있음¹³⁾)”의 두 가지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음. 첫째는 정부의 서비스와 스포츠행사 주최자간의 관계를 촉진하는 포털로서의 역할, 둘째는 경제사회적 발전의 관점에서 프랑스에서 개최되는 주요 스포츠행사가 지역의 사회·경제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임.
- DIGES의 조직은 국무회의에서 총리에 의해 임명된 대표와 각기 다른 행정기관(내무부, 환경부, 사회부, 스포츠부 등)에서 파견된 회원들로 구성된 다 분야 팀으로 구성됨
- 조직의 주요 3개 팀은 다음과 같음. 첫째, 일반 및 기관사업팀은 보증서·운송 문제·법적 문제·개최지와의 관계를 담당함. 둘째, 지원 및 개발팀은 주변 활성화·경제 사회 문화 교육 및 환경 지원·영토의 지속 가능한 발전 촉진·대규모스포츠행사의 평가 과정을 담당함. 셋째, 보안 및 예방팀은 공공 및 민간 보안 능력의 전문 지식을 조언하고 조정함.
- DIJOP는 대표를 포함하여 12명이 팀을 구성하여 근무하며, 각 직원의 담당업무는 다음과 같음¹⁴⁾

<DIJOP 직원의 담당업무>

- 장 카스텍스 씨, 대규모 스포츠행사를 위한 부처간 대표, 올림픽 및 패럴림픽의 부처간 대표

13) DIJOP, DIGES는 대표 개인 1명과 대표를 비롯한 여러 직원으로 구성된 대표단(팀)을 동시에 지칭함. 2017년 9월 13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2024 올림픽 및 패럴림픽의 개최지를 파리로 선언했으며, 같은 날 Jean Castex가 올림픽 및 패럴림픽의 부처간 대표로 임명됨. Jean Castex는 2018년 1월 24일 대규모 스포츠행사를 위한 부처간 대표로도 임명됨

14) <https://www.gouvernement.fr/organisation-dijop>

[M. JEAN CASTEX : Délégué interministériel aux jeux Olympiques et Paralympiques, Délégué interministériel aux grands événements sportifs (DIGES)]

- 뤽 알래흐 : 부대표(Luc ALLAIRE : Adjoint au délégué)
- 브리짓 나드자르 : 사무국장(Brigitte NADJAR : Secrétaire générale)
- 길 조아네 : 대규모 스포츠행사를 위한 부처간 대표단의 스포츠자문 [Gilles JOHANNET : Conseiller sport (DIGES)]
- 나타나엘 브뤼쉬 : 유산 및 지역 동원 담당 (Nathanaël BRUSCHI : Chargé de mission « héritage et mobilisation des territoires »)
- 소피 르 푸흐이에 : 시설 자문(Sophie LE POURHIET : Conseillère infrastructures)
- 프랑수아 클랑쉐 : 담당 (François CLANCHÉ : Chargé de mission)
- 게할딘느 보필 : 직업, 고용, 자원봉사, 참여 담당 (Géraldine BOFILL : Chargée de mission travail, emploi, bénévolat, insertion)
- 레미 드쿠파오로니 : 국가자문위원회의 청원 담당 (Rémi DECOUT-PAOLONI : Maître des requêtes au conseil d'Etat)
- 모라 압다라 : 대규모 스포츠행사를 위한 부처간 대표단의 담당 [Morad ABDALLAH : Chargé de mission (DIGES)]
- 마르세 글르마렉 : 보좌관(Maryse GLEMAREC : Assistante du délégué)
- 노라 아미라 : 보좌관(Nora AMIRAT : Assistante du délégué)

마. 지방당국 협의체(Collectivités territoriales)

- 프랑스 스포츠 조직은 신체 및 스포츠 활동의 개발이 '국가', '지역 사회' 및 '시민 사회'의 모든 행위자가 기여하는 일반적인 관심의 목표라는 원칙에 기반함. 이들은 협력은 신체 및 스포츠 활동을 촉진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협력함. 지방당국 협의체 (및 민간 부문) 또한 전문 스포츠 개발에 기여함.
- 스포츠 분야는 시민사회, 당국 및 지역 간의 공동 관할하여 유지한다고 개정 지방 당국 법 (2010 년 12 월)에 규정하고 있음. 스포

츠 문제에 대한 지방 당국의 개입은 일정하지 않음. 지방 당국은 정치적 선택에 따라 지역에 자유롭게 투자 할 수 있으나, 전체 스포츠 지출의 최대 30 % 정도에 기여하고 있음. 지방당국은 스포츠 장비를 갖춘 공원의 80 %를 소유하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스포츠 장비를 대부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추진함.

- 레지오날(Les regions, 가장 큰 단위의 지방자치단체)은 전문 수준의 스포츠에 대한 지원을 주로 담당하며, 데파르망(Les départements, 레지오날보다 작은 단위의 지방자치단체)은 주로 대중 스포츠의 관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함. 스포츠 장비 설치를 위한 투자를 위해서는 레지오날, 레파르망, 코뮌이 협의하여 결정하는데, 주로 코뮌(Les communes, 프랑스의 가장 작은 행정 단위)이 이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스포츠부는 특히 지방 정부 (지역 협의회, 일반, 지자체, 마을 협력 공공 기관)와 영토 서비스를 통해 관계를 유지함. 그러나 2013년 4 월 스포츠부서 내에 지역 활성화 및 지방 당국과의 관계 사무소가 만들어졌음. 이 구조는 국가 협회들과의 협력, 즉 프랑스 레지오날 협회, 프랑스 데파르망 회의 및 프랑스 시장 협회의 협력을 유지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임. 스포츠 담당 선출직 대표 (ANDES)는 스포츠부와 지방 간에 정보를 전달하고, 스포츠의 공공 정책의 우선 순위에 두고 지역간 이견을 조정하기 위한 중계 역할을 함.
- 지방 당국의 대표는 전국 및 지역 차원의 여러 회의에 출석하며,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CNDS의 거버넌스에 참여함. 스포츠부의 스포츠부서는 다음 4개의 사항에 대해서 지역의 우수 사례를 홍보하여 타 지역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지역 사회와 상호 작용하고 있음.
 - 스포츠와 장애
 - 스포츠와 자연
 - 스포츠, 평등, 다양성 및 시민권
 - 스포츠와 건강

바. 국가스포츠위원회(Conseil National du Sport : CNS)

- 국가스포츠위원회 (CNS)는 4월 6일 법령에 의해 공식적으로 창설되었음. 정부와 지방당국 및 주요 협력 공공기관, 그리고 스포츠활동 및 스포츠사회경제 관련자들을 한 데 묶는 자문 기구로서 스포츠 정책의 정의와 실행에 관해 검토하며, 스포츠 활동 분야의 기본 법안 또는 규정에 대해 논의함. 또한 NSC는 매년 스포츠 정책으로 추진된 사업과 다양한 스포츠 주체의 기여도를 연구하고 평가한 보고서를 의결함. 스포츠 장관은 매년 정부의 스포츠 정책과 방향을 위원회에 보고함.
- CNS는 스포츠 거버넌스의 수요와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된 모든 이해 관계자를 소집하고 이들의 다양한 이견을 조정하는데, 관계자는 다음 5개 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스포츠부 및 관계 부처
 - 각급 지방 당국
 - 스포츠 운동의 모든 구성 요소
 - 기업 대표와 지부의 사회적 행위자
 - 관련 기관 : 의회, 독립 행정기구 (고위 시청각위원회, 프랑스 반도핑기구, 온라인 게임 규제 기관), 의사학회 등

2) 관계 법률

가. 스포츠법전(Code du sport)

- 2004년에 스포츠 담당 부처는 국민의 권리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의 일반적인 추진방식에 동참하여, 의회가 행정부에 위임한 권한으로 스포츠법의 법전화 작업을 진행했음.
- 현재 프랑스의 법전(Code)은 종전의 관련 법률(Loi), 법규명령(Décret), 훈령(Circulaire)규정들을 각 Code의 체계와 내용에 따라 편-부장-절의 해당사항을 정한 뒤에 그에 맞도록 종전의 개별법령 조항들을 의회가 만든 법률부분(Partie législative)과 정부가 만든 명령부분(Partie réglementaire)으로 새로이 편집한 것임.
- 현행 스포츠법전은 신체 및 스포츠 활동의 조직, 스포츠인, 스포츠 활동, 기타규정으로 구성된 4개의 부(Partie)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분에서 스포츠분야에 관한 파편화되어 있는 규범들을 정비하고 관련 규정의 실질적 변경 없이 다시 재정비 및 배치를 통해 스포츠 분야의 관련 제 규정의 체계적 정비를 목표로 하고 있음. 법률 조항 부분에 대한 주요 제목 이름만 아래에 소개하면 다음과 같음.¹⁵⁾

<프랑스의 스포츠법전 주요 제목>

제1부 신체와 스포츠 활동조직(Organisation des activités physiques et sportives)

총칙(Titre Préliminaire)

제1편 공법인

제1장 국가

제2장 국가영조물법인

제3장 지방자치단체

15) 전훈, 「프랑스 스포츠법제에 관한 소고」, 『법제논단』 2017년 3월호, 134~135쪽. 스포츠법전 중에서 스포츠대회와 관련된 편에는, 참고할 수 있도록 하위 조문 제목을 추가로 기재하였음.

제4장 스포츠 기록평가, 선수촌의 조직과 기능에 관한 국가와 레지옹
간 임무와 권한의 배분

제5장 특정 스포츠 공공서비스의 관리조직에 관한 특별규정

제2편 스포츠단체와 스포츠기업

제1장 스포츠단체(Associations sportives)

제2장 스포츠회사(Sociétés sportives)

제3편 스포츠연맹과 프로리그

제1장 스포츠연맹(Fédération sportives)

제2장 프로리그(Ligues professionnelles)

제4편 대표기구와 중재기관

제1장 프랑스 국가스포츠올림픽위원회

제1-1장 프랑스 장애인스포츠위원회

제2장 기타 기구

제2부 스포츠인(Acteurs du sport)

제1편 양성과 교육

제1장 직업스포츠 양성

제2장 무보수 스포츠교육

제2편 운동선수

제1장 엘리트스포츠(Sport de haut niveau)

제2장 직업선수

제3장 운동선수에 적용될 기타 조항

제4장 서포터(Supporteurs)

제3편 운동선수의 건강과 금지약물복용(도핑)방지
서장

제1장 운동선수에 대한 약물조사

제2장 금지약물복용(도핑)방지

제4편 동물에 대한 금지약물복용(도핑)방지

제3부 스포츠의 실행(Pratique sportive)

제1편 스포츠 실행 장소

제1장 자연스포츠

제2장 스포츠시설장비

제2편 스포츠 활동에 수반된 의무사항

제1장 보험가입의무

제2장 위생과 안전의 보장

제3편 스포츠 대회(Manifestation sportive)

제1장 스포츠대회의 조직

제1절 스포츠협회(연맹)의 역할

제2절 허가 및 사전 신고

제3절 스포츠행사 주최자의 보험 의무

제4절 공공스포츠행사의 조직

제2장 스포츠대회의 안전

제4부 기타 규정(Disposition diverses)

제1편 스포츠 재정 제2편 해외영토지역에 적용되는 규정

제1장-5장(Mayotte, Saint-Pierre-et-Miquelon, Wallis et Futuna, Polynésie française, Nouvelle-Calédonie지역에 대한 특별규정)

- 아울러, 지적하고 싶은 특징 중 하나는, 프랑스의 스포츠법전은 스포츠 분야의 일반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법임에도, ‘스포츠 대회(Manifestation sportive)’ 편에서 스포츠행사를 주최하는 협회의 의무와 안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는 점임.
- 특히, 프랑스의 스포츠법전이 스포츠행사의 주최자에게 보험 가입 의무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은 향후 한국의 법률 개정 시에 규정 도입을 고려해볼만 함. 한국의 경우, 대한체육회에서 종목별 경기단체(협회·연맹)가 개최하는 대회의 계획서를 검토할 때에 보험가입에 관한 내용도 확인하고 있으며, 경기단체도 대회 중에 사건·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기 위한 안전책으로서 보험에 가입하고 있음. 다만, 이것이 법률적인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향후 관계 법령이나 행정규칙 개정 시, 대회 주최자의 보험 가입 의무에 대한 조문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프랑스의 스포츠법전 중 관련 조문 >

Article L321-1 : Les associations, les sociétés et les fédérations sportives souscrivent pour l'exercice de leur activité des garanties d'assurance couvrant leur responsabilité civile, celle de leurs préposés salariés ou bénévoles et celle des pratiquants du sport
(제 L321-1 조 : 스포츠 협회·회사·연맹은 그들의 민사 책임, 직원 또는 자원 봉사자 및 스포츠 종사자의 책임을 다루는 보험 보상 활동을 신청한다.)

Article L331-9 : L'organisation par toute personne autre que l'Etat et les organismes mentionnés à l'article L. 321-1 de manifestations sportives ouvertes aux licenciés des fédérations est subordonnée à la souscription par l'organisateur des garanties d'assurance définies au même article L. 321-1.

[정부(공무원)가 아니며 L. 321-1조에 규정된 기관(스포츠협회·회사·연맹)에 의해 구성된 조직은 연맹의 등록선수를 대상으로 열리는 스포츠행사에서, 주최자에 의해 L. 321-1조에 정의된 보험의 가입에 종속된다.]

나. 대규모 스포츠 행사에 위한 부처간 대표단 설치에 관한 법규명령
제2008-1142호 2008년 11월 5일 (Décret n° 2008-1142 du 5 novembre 2008 instituant un délégué interministériel aux grands événements sportifs)

- 법규명령(décret)은 대통령이나 총리 또는 두 사람이 공동으로 발하는 행정입법권에 기초한 명령임. 즉,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계되는 사항으로 국회에 의해 제정되어야 할 것을 행정기관에 위임한 것이며, 법률처럼 국민과 행정부,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음.¹⁶⁾
- 「대규모 스포츠 행사를 위한 부처간 대표단 설치에 관한 법규명

16) 법제처 법령정보관리원 세계법제사업팀 연구보고서, 「프랑스의 법률체계」, 2006

령」(이하 ‘DIGES법’으로 축약하여 칭함)은 대규모스포츠행사 행정 대표(DIGES)의 설치와 구성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5개의 조문으로 규정하고 있음.

<DIGES법의 조문 요지>

제1조 스포츠 소관 부처 장관 소관 하에, 대규모 스포츠행사를 위한 부처 간 대표단을 설치한다.

제2조 여러 기관장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DIGES는 지역에서 개최되는 대규모스포츠행사의 주최와 조직에 관련된 국가 행정 및 국가 공공기관의 활동을 조정한다.

그(DIGES)는 대규모스포츠행사의 조직위원회와 정부의 관계, 그리고 관련 부서의 정부 대표와 관련 지방 당국과의 관계를 보장한다.

그는 공개 정보활동에 참여한다. 이는 경제·사회·교육·문화적 영역에서 스포츠행사를 이용하도록 장려하고, 특히 대중의 스포츠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데에 기여한다.

그는 정부 책임 하에 있는 대규모 국제스포츠행사의 개최를 위한 준비를 위해 정부에 조언한다.

제2-1조 대규모 국제스포츠행사마다 DIGES는 각 부처에서 파견된 인력을 모니터 그룹의 형태로 운영하며 그가 의장을 맡는다.

행사와 관련된 기관장은 회의체를 구성한다. 관련 스포츠연맹 및 지방당국 대표는 필요에 따라 업무에 참여할 수 있다. 조직위원회의 대표는 업무에 참여한다.

제3조 DIGES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스포츠 소관 부처 장관의 감독 아래에서 봉사한다.

그는 필요에 따라 다른 관계부처의 업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그는 관계부처들이 운영하는 자원 및 직원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제4조 (타 조문들로 개정됨)

제5조 국무부장관, 생태·에너지·지속가능한 발전 및 지역계획부장관, 내무·해외영토·지방부장관, 외무·유럽부장관, 경제산업부장관, 이민·통합·국가정체성·연대개발부장관, 국가교육부장관, 국방부장관, 건강·청소년·스포츠·지역사회생활부장관, 문화통신부장관, 재정·공공회계·공공서비스장관, 스포츠·청소년·연합생활을 담당하는 정무차관(le secrétaire d'Etat)의 책임 하에 이 법은 프랑스 관보에 게재 될 것이다.

다. 2024파리올림픽 및 패럴림픽을 위한 부처간 대표단 설치에 관한 법규명령 제2017-1336호 2017년 9월 13일 (Décret n° 2017-1336 du 13 septembre 2017 relatif au délégué interministériel aux jeux Olympiques et Paralympiques 2024)

- ‘DIGES법’ 이 대규모 스포츠행사를 위한 부처간 대표단(DIGES)의 설치와 구성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2024파리올림픽 및 패럴림픽을 위한 부처간 대표단 설치에 관한 법규명령」(이하 ‘DIJOP법’ 으로 축약하여 칭함)은 2024년 올림픽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구체적인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음.
- ‘DIGES법’ 이 스포츠장관의 지휘 범주에 있다면, ‘DIJOP법’ 은 국무총리의 지휘 범주에 있다는 점은 눈여겨 볼만 함. 이는 2024파리올림픽 및 패럴림픽 개최를 위해서는 정부 모든 부처의 역량이 필요하다는 의도가 바탕이 된 것임.

<DIJOP법의 조문 요지>

- 제1조 2024올림픽 및 패럴림픽을 위한 부처간 대표단을 설치한다.
국무총리에 의해 설치된 DIJOP는 국무회의에서 법령에 의해 임명된다.
법령에 의해 임명된 보좌관이 그를 보좌한다.
- 제2조 2024올림픽 및 패럴림픽 개최의 지침을 결정하기 위해 부처간 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스포츠장관, 전국교육부장관, 고등교육연구부 장관, 경제장관, 예산 장관, 주택부장관, 국방부장관, 내무부장관, 기획부장관, 교통부장관, 노동부장관, 문화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관광부장관, 농림부장관, 환경부장관, 유럽외무부장관, 장애인부장관, 양성평등부장관 등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의장은 국무총리, DIJOP, 또는 스포츠장관이 맡는다.
- 제3조 DIJOP는 올림픽 관련 행정관청 및 공공기관의 사업을 활성화하고 조정한다.
그(DIJOP)는 정부,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가 참여하는 공공 장비 프로그램의 추진을 보장한다.

그는 올림픽 장비 납품회사의 규정, 계획, 집행을 감독한다.
 그는 정부와 올림픽조직위원회간의 관계, 정부와 관련 지방 당국간의 관계를 보장한다.
 그는 올림픽 관련 정보활동을 장려하고, 이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경제·사회·환경·문화적 영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다.
 그는 2024유산프로그램과 관련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고, 관련 기관의 관할 지역의 발전에 기여한다.
 그는 올림픽장비납품회사의 이사회의 이사이다.

제4조 DIJOP는 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

조정위원회는 각 부처의 대표, 일드프랑스¹⁷⁾지역 정부, 경찰청장 및 올림픽 개최 도시의 시장으로 구성한다.
 부처의 대표들은 각 부처 장관의 추천을 받아 국무총리의 명령에 따라 임명된다.
 다른 부처들은 의제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다.
 2024올림픽 및 패럴림픽 조직위원장은 조정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의제를 설정하는 DIGES가 소집한다.

제5조 DIJOP는 올림픽조직위원회 사무총장과 올림픽건설회사 사무총장을 포함한 파트너위원회를 구성한다.

제6조 DIJOP은 정부 사무국¹⁸⁾의 행정 및 예산에 포함된다.

그는 중앙 및 지방뿐 아니라 조정위원회에 소속된 장관의 소관 기관에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그는 부처에 직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그는 제한된 수의 계약직을 고용할 수 있다.

제7조 국무부장관, 내무부장관, 환경부장관, 유럽외부무장관, 국방부장관, 국토부장관, 보건부장관, 노동부장관, 국가교육부장관, 농림부장관, 공공회계부장관, 고등교육연구혁신부장관, 스포츠부장관, 남녀평등을 담당하는 정무차관, 장애인을 담당하는 정무차관이 이 법령의 시행과 관계되며, 이 법령은 프랑스 관보에 게재되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17) 일드프랑스(le-de-France)는 프랑스의 수도인 파리를 포함하고 있는 지역(Région)을 뜻하며, 단순히 비교하면 한국의 수도인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경기도와 유사함.

18) 정부사무국(Le secrétariat général du gouvernement : SGG)은 프랑스 국무총리

2. 미시적 관점의 국제경기대회에 대한 지원

1) 대규모 국제경기대회에 대한 지원

- 프랑스에서는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개최도시 등)·스포츠단체(국가 올림픽위원회 또는 종목별 경기단체) 등 관련기관들이 하나의 ‘공익단체(Un groupement d'intérêt public : GIP)’를 공동으로 구성하여 대회를 개최하고 있음. 즉, 한국에서 중앙정부가 피보조기관에 일방적으로 보조금(subvention)을 지급하는 것과는 달리, 프랑스에서는 중앙정부의 대표단(délégation)이 해당 대회를 주최하는 공익단체의 일원이 되어 지원하는 구조임. 이 때문에 프랑스에서는 ‘국제대회 조직위원회에 보조금을 지급한다’라는 표현보다, ‘국제대회 공익단체의 대표단이 된다’라는 표현으로 설명함. 공익단체(GIP)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거시적 관점의 국제스포츠행사 지원방식의 비교’ 장에서 상술하겠음.
- 2017년에 CNDS가 지원한 대규모 국제스포츠행사는 총 34건이며, 단년도 총지급액은 11,295,000€이었음. 한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규모 대회의 경우에는 총보조금을 연차별로 나누어 지원하고 있음.
- CNDS는 위원회에서 개별 대회의 보조금 신청서를 심의하여 지원액을 결정하며, 일반적이고 공통된 지원기준은 없음. 다만, 종목별 경기단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단체의 재정이 열악한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상대적으로 추가하고 있음.

의 산하 조직으로서 부처 간 업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함.

<대규모 국제스포츠행사 지원 금액(2017)>¹⁹⁾

(단위: 유로, €)

종목	대회명	총보조금	기지금액	2017년 지급액	지급 잔액
핸드볼	championnat du monde masculin de handball 2017	4000000	3000000	1000000	
아이스 하키	championnat du monde masculin de hockey-sur-glace 2017	1550000	675000	825000	50000
카누 ·카약	championnats du Monde de canoë-kayak slalom et descente 2017	700000	200000	480000	20000
스쿼시	championnat du monde masculin de squash par équipes 2017	100000		100000	
격투기	championnats du monde de lutte 2017	850000	350000	470000	30000
육상	championnats d'Europe d'athlétisme par équipes 2017	350000	150000	150000	50000
마라톤	championnats du monde de va'a Vitesse 2018 & championnats du monde de va'a Marathon 2017	250000		250000	
양궁	championnats d'Europe de tir à l'arc en salle 2017	90000		90000	
서핑	championnats du monde de surf 2017	320000		320000	
모터 사이클	international six days Enduro 2017 de moto	100000		100000	

19) CNDS, 「2017 CNDS Rapport d'Activité」, 2018

종목	대회명	총보조금	기지급액	2017년 지급액	지급 잔액
스키	championnats du monde et d'Europe inas de ski alpin et nordique 2017	25000		25000	
카약	championnats d'Europe de kayak polo 2017	40000		40000	
스키	championnats du monde open de ski nautique 2017	200000		200000	
페탕크*	championnats d'Europe de pétanque triplette et tir de précision 2017	25000		25000	
원드서핑	championnats d'Europe handivalide de voile sur hansa 2017	45000		45000	
수영	championnats d'Europe de natation trisomique 2017	50000		5000	45000
사이클	championnats d'Europe de BMx 2017	50000		50000	
펠로타**	Mondial 2017 de pelote basque	20000		20000	
골프	Ryder cup 2018	6000000	3000000	1500000	1500000
가라테	championnats d'Europe de karaté 2016	115000	100000	15000	
클라이밍	championnats du monde d'escalade 2016	215000	180000	35000	
배드민턴	championnats d'Europe de badminton 2016	250000	200000	50000	
스쿼시	championnat du monde féminin de squash par équipes 2016	90000	85000	5000	

종목	대회명	총보조금	기지급액	2017년 지급액	지급 잔액
핸드볼	championnat d'Europe féminin de handball 2018	1500000	300000	650000	550000
핸드볼	tQo handball Féminin 2016	120000	100000	20000	
농구	tQo Basket-Ball Féminin 2016	400000	200000	200000	
축구	coupe du monde de football féminine 2019	6000000		500000	5500000
사이클	championnats d'Europe de cyclisme sur route 2016	100000		100000	
역도	championnats Europe d'haltérophilie handisport 2018	150000		150000	
장애인 축구	Jeux Européens inas 2018	300000		300000	
육상	championnats d'Europe d'athlétisme 2020	4000000			4000000
2024 올림픽 유치신청	candidature Jo/ Jp 2024	3500000		3500000	
아이스 하키	championnat du Monde de hockey sur glace Féminin division 1 groupe a 2018	25000		25000	
카누 ·카약	championnats d'Europe de slalom de canoé-kayak 2019	50000		50000	
34건	계	31,530,000	8,540,000	11,295,000	11,745,000

* 페탕크(Pétanque) : 프랑스식 쇠구슬치기

** 펠로타(Pelote) : 벽을 향해 공을 튀겨 상대방을 공격하는 스포츠

2) 올림픽장비납품회사(la société de livraison des ouvrages olympiques, SOLIDEO)의 운영

- 국제스포츠행사에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은 경기장, 선수촌 같은 대회 관련 시설을 건축하는 시설비이며, 대회 예산 운영의 수익성에도 시설비의 적정 규모가 중요한 영향을 미침.
- 한국은 대회 개최를 위해 지원하는 시설비를 개최 도시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음. 예컨대,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의 사례를 살펴보면, 문체부는 강원도에 경기장·선수촌 등을 건설하기 위한 시설비 보조금을 지급하였음. 강원도는 문체부로부터 보조금에도 예산을 더하여 총사업비를 마련하고, 민간의 건설회사를 공모 절차를 거쳐 선정하여 실제로 건축을 실시하게 함.
- 프랑스는 2024파리올림픽 개최 준비를 위해서 올림픽장비납품회사(la société de livraison des ouvrages olympiques, SOLIDEO)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올림픽장비납품회사’는 직역하면 ‘올림픽 건축물 시공회사’ (la société de livraison des ouvrages olympiques)인데, 국무총리가 ‘올림픽 및 패럴림픽을 위한 부처간 대표’ (DIJOP, le délégué interministériel aux jeux Olympiques et Paralympiques 2024)에게 부여한 임무의 서신(Lettre de mission)에서는 ‘올림픽 장비 납품 회사’ (la société de livraison des équipements olympiques)라고도 지칭하고 있어, 이 보고서에는 한국어로 ‘올림픽장비납품회사’로 통일하여 지칭하기로 함. 프랑스어 약칭은 ‘SOLIDEO’로 동일함.
- SOLIDEO는 올림픽 개최를 위해 필요한 선수촌·미디어촌 같은 39개의 기반시설 공사를 감독하며, 조직위원회가 필요로 하는 24종의 장비를 납품하는 임무를 맡고 있으며, 2023년 가을까지 시설물의 인도와 장비 제공을 완료하는 것이 목표임. 또한, 올림픽 및 패럴림픽을 마친 후에 시설물 유산에 대해서 관리 책임이 있음.²⁰⁾

20) SOLIDEO에 대한 소개는 SOLIDEO 홈페이지 및 Paris Tribune 기사를 참조함.(<https://www.ouvrages-olympiques.fr/> Paris Tribune, 「La SOLIDEO placée sous la tutelle de trois ministères, qu'est-ce que c'est ? 」, le 14 juin 2018)

<SOLIDEO 개요>

- 사장 : Anne Hidalgo.
- 전무이사 : Nicolas Ferrand.
- 사무총장 : Isabelle Vallentin.
- 직원 : 120 명의 직원, 연간 1 천만 유로의 예상 급여. 그 예산은 2024년까지 약 18 억 유로로 추산
- 임무 : 올림픽 및 패럴림픽 시설물 제공, 올림픽조직위원회의 개발 작업 수행, 올림픽 및 패럴림픽의 시설물 유산 관리
- 법적 형식 : 산업 및 상업 성격의 공공 기관
2017 년 12 월 27 일에 활동의 시작
2018 년 1 월 11 일 파리 무역 등록부에 등록됨
- 본부 소재지 : DIJOP (올림픽 및 패럴림픽을 위한 부처간 대표) Cassini
Hotel 32 rue de Babylone 75007 Paris.

- SOLIDEO는 파리 및 수도권 개발 상태에 관한 법 2017 년 2 월 28 일 2017-257의 53조(l'article 53 de la Loi n° 2017-257 du 28 février 2017 relative au statut de Paris et à l'aménagement métropolitain, 'SOLIDEO법' 이라 축약하여 지칭하기로 함)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으며,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SOLIDEO법 조문 요지>

제1조 "Société de delivery des ouvrages olympiques"라는 산업 및 상업 성격의 국가 공공 설립이 설립함.

제2조 제1항 기관('SOLIDEO'를 지칭함)의 사명은 2024 년 파리에서 개최되는 올림픽 및 패럴림픽의 개최에 필요한 모든 개발 작업을 수행하고 모든 작업을 보장하며, 또한 2024 년 대회 이후에 이러한 구조물과 운영의 목적지를 보장 할 책임이 있음.

제2항 이를 위해 회사('SOLIDEO'를 지칭함)는 2024올림픽과 패럴림픽위원회는 필요한 시설의 목록, 계획, 설계를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함

제3항 일부 계획 또는 특정 개발 작업에 대한 관리 또는 위임된 프로젝트 관리를 제공 할 수 있음. 이 임무를 실현하기 위해 회사는 공적 개

발 기관에 공인 된 역량을 행사함. 회사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할 경우 소유자의 자리를 대신하여 전체 또는 일부의 설계, 건설 또는 건설의 지체 또는 중단을 초래할 수 있음. 올림픽 및 패럴림픽에 필요한 시설의 제 2 항에 제공된 협약은 기한과 조건을 위반하지 않는 조건으로 대체함으로써 정당화 할 수 있음.

제4항 회사는 올림픽 조직 및 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달하는 데 기여함.

제5항 2024년 패럴림픽을 마치면, 기관의 임무는 지방정부계획과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도시계획의 일환으로 올림픽 및 패럴림픽 개최지를 개발하는 것임.

제3조 회사는 다음 관계기관이 동일한 인원수로 구성된 위원회에 의해 관리 됨. 국가(*l'Etat*)의 대표, 지방자치단체(*communes*)와 공동협력기관의 대표, 일드프랑스 지역과 파리지 지역위원회의 대표, 그밖에 자격을 갖춘 회사의 대표.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임명되며, 부위원장 위원 중에서 선출됨. 사무총장은 스포츠장관, 도시계획 장관, 재정부장관이 제정하는 법령에 의해 임명됨. 이사회의 각 구성원은 적어도 하나의 의결권을 가짐. 국가 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표, 공동협력기관의 대표, 일드프랑스지역과 파리지 지역위원회의 대표의 투표권은 재정적인 기여에 비례함.

제4조 수입은 다음과 같음.

1. 국가의 재정적 공헌
2. 회사와의 협약에 따른, 올림픽 및 패럴림픽의 자금 지원에 참여하는 지방당국공동체(*collectivités territoriales*)의 공헌
3.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취득한 모든 수입
4. 기부와 유산

제5조 회사는 도시계획법에 따라 수용(收用)할 수 있고, 같은 법에 따라 매매권과 우선권을 행사할 수 있음.

제5조의2 지방당국협의체, 경제 및 통합 주체와 관련하여, 회사는 다음 내용의 통합현장을 채택함. 고용에 특별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들의 직업적 편입을 위한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경제활동을 통한 통합과 관련된 중소기업의 공공적 요구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고, 임시적인 고용을 제한하고 불법적인 작업에 대항하며, 제2조에 규정된 필요한 시설 및 개발 작업의 실현을 위하여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증진함.

제6조 SOLIDEO의 조직 및 기능 방식, 위원회의 심의가 집행될 수 있는 조건은 국가평의회(*Conseil d'Etat*)에서 법령(*décret*)으로 규정함.

제7조 이 법은 제6조에 언급 된 법령에 의해 정해진 날에 발효되며, 늦어도 2017 년 12 월 31 일까지 효력을 발생함.

- SOLIDEO는 올림픽 개최 준비 단계부터 시설에 대한 시공 및 사후 관리까지 임무를 맡고 설립되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있음. 올림픽과 같은 대규모 국제스포츠행사를 개최하기 위해서 신설되는 경기장 등 대회시설에 대해 누가 관리할 것인지를 사전에 미리 결정해놓았기 때문에 대회 후에 시설 사후관리 주체에 대한 갈등이 생길 수 없다는 점을 눈여겨보아야 함. 또한, SOLIDEO 여러 개의 대회 시설을 다함께 관리하게 될 것이므로, 일부 시설에서 운영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시설에서 흑자가 발생하여 전체적으로 수익 균형을 보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 한국은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각각의 경기장들에 대한 관리 주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인 문체부는 시설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으며, 강원도 등 개최도시 지역자치단체는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국민체육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시설의 사후 관리를 했던 것처럼 2018동계올림픽 시설도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어, 논의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음. 논쟁은 운영 수익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장들의 관리주체를 선정하거나 사후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어려운 점에서 비롯된 것임.
- 2019년 2월말에 문체부가 발표한 보도 자료에 따르면, 2018평창동계올림픽 전체 경기장 13개 중, 2019년 1월부터 강원도개발공사가 전문 체육 및 동계체육 시설로 운영하고 있는 강원도 소유 경기장 3개(강릉 스피드 스케이팅, 강릉 하키센터, 알펜시아 슬라이딩 센터)에 대해서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용역 결과 등이 나오는 2019년 하반기쯤 구체적 지원 및 운영 방안이 수립될 예정임. 또한 2019년 4월 중에 앞으로의 올림픽 유산 사업을 전담할 평창올림픽 기념재단도 설립될 계획임. 강원도가 계획한 평창동계올림픽의 주요 시설 활용 계획은 다음과 같음.²¹⁾

21) 문체부 보도자료,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시설, 유산으로 지속 활용」, 2019.2.28.

<평창동계올림픽 주요 시설 활용 계획(강원도)>

구분	시설명	관리주체	소유주	활용 방안
화성연맹경기장(화성연맹) (3)	강릉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	강원도 개발공사 위탁 운영	강원도	○ 전문체육시설 및 동계생활체육시설로 활용 - 강원도개발공사는 빙상연맹, 아이스하키 연맹, 봅슬레이/스켈레톤 연맹, 루지 연맹과 협업 추진
	강릉 하키센터			
	알펜시아 슬라이딩센터			
리모델링 (5)	국제방송센터	조직위	건물:조직위 토지:강개공*	○ 국가문헌보존관으로 리모델링(국립중앙도서관)
	주사무소	조직위	건물:조직위 토지:강개공*	○ 동계훈련센터로 리모델링(대한체육회)
	강릉 아이스 아레나	강릉시	강릉시 (강원도 → 강릉시 이관)	○ 설계용역을 추진하여 수영장 등 시민체육시설 활용을 위해 리모델링 예정
	관동 하키센터	가톨릭 관동대	강원도	○ 다목적 스포츠 레저시설, 복합 체육시설, 강의실 등 으로 활용하기 위해 리모델링 중
	쇼트트랙 보조	영동대	강원도	○ 콘서트, 전시회 등 문화공간, 다목적 세미나실로 활용하기 위해 리모델링 중
화성연맹 (6)	보광 스노 경기장	(주)보광	보광	○ 기존 스키장 코스와 연계 활용
	강릉 컬링센터	강릉시	강릉시	○ 컬링 동호회 및 학생 체험장으로 활용
	용평 알파인 경기장	용평리조트	용평리조트	○ 기존 스키장 코스와 연계 활용
	알펜시아 스키점프센터	강원도 개발공사	강원도	○ 스키점프 경기장 활용 ○ 관광 및 행사시설로 활용
	알펜시아 크로스컨트리센터			○ 동절기 : 크로스컨트리 경기장 활용 ○ 동절기 제외기간 : 기존용도인 골프장으로 활용
	알펜시아 바이애슬론센터			○ 동절기 : 바이애슬론 경기장 활용 ○ 동절기 제외기간 : 기존용도인 골프장으로 활용

* 강개공: 강원도개발공사

- 한국과 프랑스의 국제스포츠행사 개최 지원에 관련된 사항들을 미시적으로 비교하여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한국과 프랑스의 국제스포츠행사 개최 지원 관련사항 미시적 비교>

구분	한국	프랑스
보조금 지급 방식	문체부 또는 대한체육회가 대회조직위원회에 보조금을 지급함	정부대표단이 대회개최를 준비하는 공익단체(GIP)에 참여함으로써 지급됨
지원 기준	일반적 기준을 설정하여 지급함	일반적이고 공통된 지원기준은 없음. 종목별 경기단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함
시설비 지원	중앙정부에서 개최도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함	정부대표단이 대회개최를 준비하는 올림픽장비납품회사(SOLIDEO) 에 참여함으로써 지급됨
대회시설의 사후관리	-88서울올림픽의 경우, 1988년에 국민체육관리공단을 설립하여 관리하고 있음. -2018평창올림픽의 경우 각 시설의 관리주체를 선정하여 관리함. 2019년 4월 중에 평창올림픽 기념재단 설립 예정임.	2024파리올림픽의 경우 2017년에 올림픽장비납품회사(SOLIDEO를 설립하여 사후관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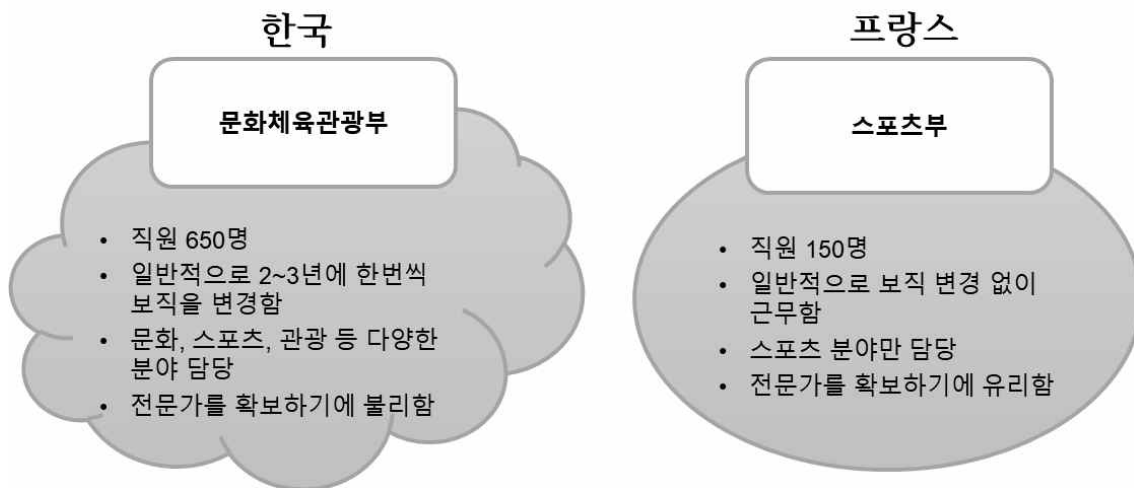
V. 거시적 관점의 국제스포츠행사 지원방식의 비교 및 시사점

1. 스포츠 소관 부처의 공무원 운영 비교

- 프랑스, 스포츠 분야에서 보직 변경 없이 근무

- 대규모스포츠행사는 대회 유치, 개최지 발표, 대회 개최까지 매우 긴 시간²²⁾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는 그 기간 동안 국제스포츠 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가가 필요함.
- 그러나, 한국의 공무원은 일반적으로 2~3년에 한 번씩 보직을 변경하며 근무하고 있으므로, 모든 업무에 전문가가 근무할 수는 없는 조건임. 특히, 한국에서 국제스포츠행사를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는 본부만 650여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부처가 문화·체육·관광 등 여러 분야를 소관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분야에 전문가를 배치하는 것을 어려움.
- 이에 비해 프랑스는 스포츠 분야만을 소관 하는 스포츠부가 단독 부처로 존재하며, 공무원 150명이 일반적으로 보직 변경 없이 근무하고 있어 인적 전문가를 확보하기가 한국의 문체부에 비해 유리함. 참고로 일본이 2020년 하계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문부과학성에서 스포츠 분야 업무만을 분리하여 ‘스포츠청’을 독립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음.
- 결론적으로, 한국의 공무원 운영체계에서는, 국제스포츠행사의 개최 지원을 위한 인적 전문가를 확보하기보다는 ‘시스템’적으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바람직함. 이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 보고서의 ‘제안’ 부분에서 상술하도록 하겠음.

22) 올림픽의 경우, 대회 개최 7년 전에 개최지가 선정됨. 대회를 유치하기 위한 신청을 준비하고 제출하는 기간까지 고려하면, 올림픽은 개최하기까지 적어도 10년 정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



<도표4 : 스포츠부처의 공무원 운영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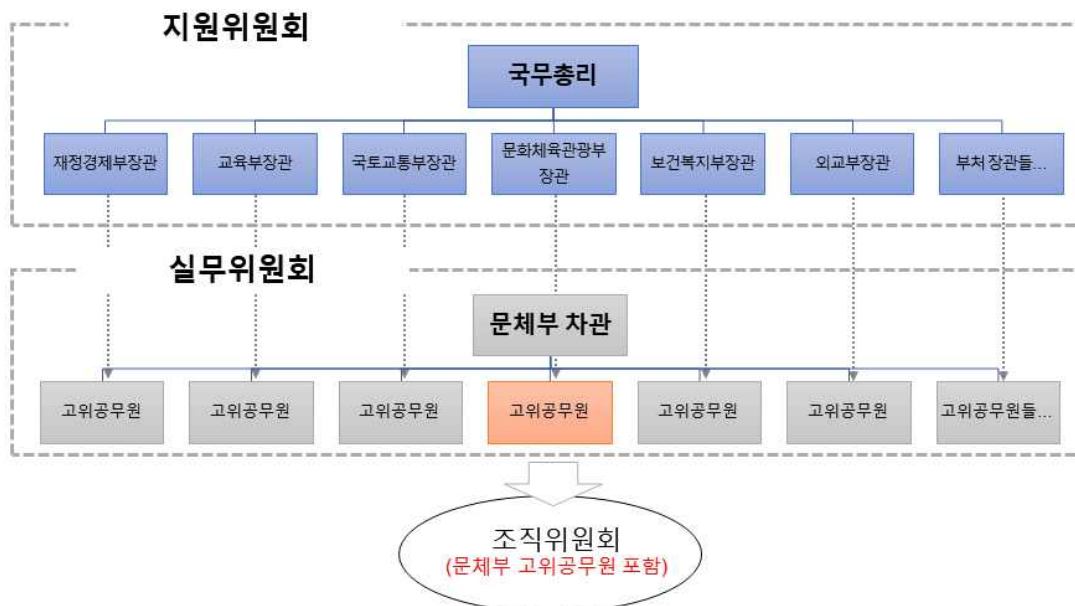
2. 국제스포츠행사와 관계된 법률에 나타난 지원 체계 비교

1) 프랑스, 지원 전담 조직을 영구조직으로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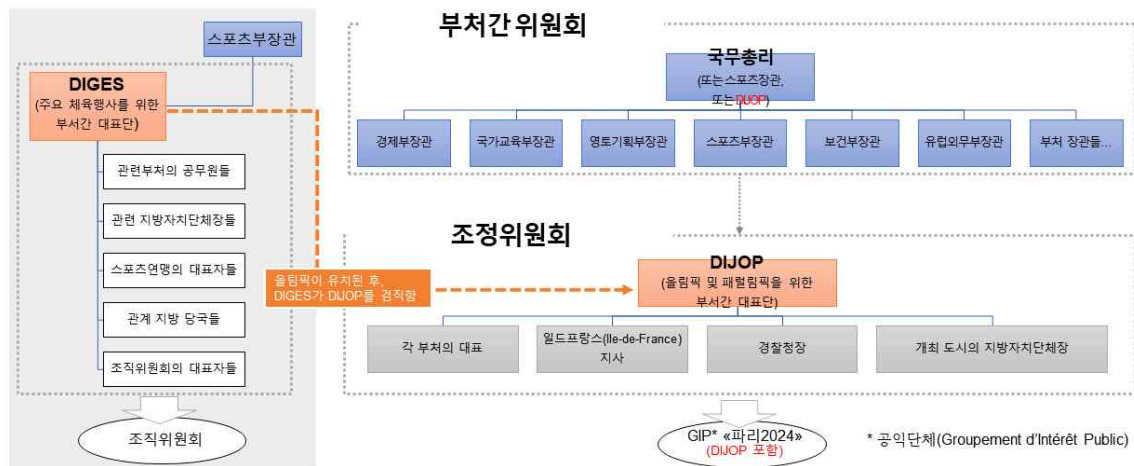
- 한국의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과 비슷한 내용을 규정한 프랑스의 법은 「대규모 스포츠 행사를 위한 부처간 대표단 설치에 관한 법규명령」, 「2024파리올림픽 및 패럴림픽을 위한 부처간 대표단 설치에 관한 법규명령」 임.
- 한국과 프랑스의 대회 지원에 관한 법령들을 살펴보면, 스포츠 소관 부처를 포함한 중앙정부의 여러 부처가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가 중앙정부·지방정부·대회조직위원회 간에 원활한 협력을 위해서 관계기관들을 연결하는 창구 같은 역할을 함으로써 대회 개최를 지원한다는 요지의 공통점이 있음. 또한, 위원회의 구성, 임무 등 형식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유사함.
- 그러나, 이 법령들이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성격은 매우 다른 양상을 보임. 한국의 ‘국제경기대회 지원위원회’는 법령에 정해

진 대규모스포츠행사의 유치가 확정된 뒤에 설치되었다가 해산되는 한시적 기구임. 지원위원회는 각 부처 장관으로 구성되며, 국무총리가 의장을 맡음. 지원위원회는 중요한 의사를 결정하지만, 실질적인 업무는 지원위원회 아래 실무위원회가 담당함. 실무위원회는 각 부처의 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되며 문체부 차관이 의장임.

- 반면에 프랑스의 ‘대규모 스포츠행사를 위한 부처간 대표단(DIGES)’은 상설로 운영되다가 대규모 스포츠행사의 유치가 확정되면 ‘2024파리올림픽 및 패럴림픽 부처간 대표단(DIJOP)’처럼 임무가 추가되는 방식으로 운영됨. 즉, 평소에는 스포츠장관 소관의 DIGES이 대규모 국제스포츠행사를 지원하다가, 올림픽처럼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행사를 유치하게 되면 국무총리 소관의 DIJOP를 겸직하며 지원을 담당하게 되는 것임.



<도표5 : 한국의 국제스포츠행사 지원 체계>



<도표6 : 프랑스의 국제스포츠행사 지원 체계>

2) 프랑스, 지원 전담조직에게 구체적인 임무 부여

- 특히 눈여겨볼 만한 점은 국무총리가 부여하는 ‘국무총리가 DIJOP를 임명하면서 임무를 부여한 임무의 서신(Lettre de mission, 2017년 11월 27일) 형식으로 DIJOP가 해야 할 업무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명문화했다는 점임.
- 이 서신을 살펴보면, 프랑스 정부가 2024파리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필자는 DIJOP의 임무를 3가지 부분으로 나누고 소제목을 부여하여(서신 원문에는 소제목이 없음) 설명하고자 함.
- 첫째 ‘가치관의 존중’ 부분에서는 올림픽이 추구해야할 중요한 가치를 ‘올림픽정신(Olympisme), 윤리, 투명성 및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나열하며 존중할 것을 요구함. 둘째, ‘구체적인 핵심 임무’ 부분에서는 정부와 조직위원회 간의 조정, 정기적인 조정위원회의 개최, 올림픽 관계법령의 제·개정, 올림픽장비납품회사(la société de livraison des équipements olympiques, SOLIDEO)와 조직위원회의 규정 및 예산 감독, 올림픽의 평가방법 수립 등을 기술함. 셋째,

‘추상적인 일반 임무’ 부분에서는 올림픽에 프랑스의 모든 역량을 동원할 것과, 문화·교육·건강 등 관련 부처의 프로그램을 제안할 것, 올림픽 유산에 관한 사항, 자원봉사자 및 국민의 참여 유도, 정부 홍보와 유용한 정보의 전달, 정기적인 보고 의무를 기술함.

<올림픽 및 패럴림픽 행정대표(DIJOP)의 임무 서신(Lettre de mission) 내용>²³⁾

- Edouard Philippe 국무총리가 Jean CASTEX 대표에게 부여

○ 가치관의 존중

- 2024파리올림픽은 올림픽 정신과 도덕적 가치, 투명성, 지속 가능한 발전의 가치 측면에서 모범이 되어야 함. 이러한 가치는 2024 올림픽의 전반적인 프로세스에 적용될 것입니다. 행정 규율(governance rules), 공적 재정 자원의 이용 규정, 예정되어 있는 시설의 개조와 활용 방식, 커뮤니케이션, 시민 단체 및 지역 단체가 동원하는 지원단의 활동 등이 이에 해당되며, 이 가치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귀하(DIJOP)의 책무임.

○ 구체적인 핵심 임무

- 2024 올림픽 및 패럴림픽 개최 시 어떠한 방식으로든 동원될 공공시설과 서비스와 협력해야 하며 일관성을 유지함.

- 관계 부처와 지자체를 동원하여 이들이 올림픽 및 패럴림픽 개최에 협력할 수 있도록, 조정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함.

- 국제올림픽위원회와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제정된 2024 올림픽 및 패럴림픽 개최 관련 법과 적용 조항을 시행하고 구체화하는 데 협력함. 특히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개정된 모든 법률 혹은 규정 사항을 관할 부처에 반드시 고지함.

- 올림픽 장비 납품회사(Société de livraison des équipements olympiques, SOLIDEO) 설립을 감독하고 사전 계획에 따라 회사의 정관을 작성하고 초기 예산을 입안하는데 협조함

-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파트너와 유연하고 영구적인 관계를 확립해야 하며 2024 올림픽 개최지가 파리로 선정되는 데 기여한 파트너십

을 유지함. 특히 올림픽 운영위원회(COJO)와 올림픽 장비 납품회사(SOLIDEO)의 임무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것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함.

- 2018년 2월 이전에 올림픽 운영위원회(COJO)를 효율적으로 조직하기 위하여, 스포츠 단체가 주도하는 올림픽 운영위원회의 법령 초안을 작성하기 위한 국가 입장을 준비하여야 하며 국가가 최종적으로 보증해야 할 것임. 법령에는 특히 도덕과 투명성에 대한 기준이 포함되어야 하며 요구하는 효율성 조건을 충족해야 함.
- 스포츠부장관의 후원 하에, 귀하는 저에게 2017년 말까지 올림픽 각 부 대표의 미래 활동에 대한 제안, 즉 관련 공공기관 활동의 효율성과 성과를 동시에 보여줄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해야 함.
- 관할 국가 서비스 전체에 대한 올림픽의 예상 예산과 장비, 인프라의 납품 기한(올림픽장비 납품회사와 협력하여)을 검토해야 함.
- 프로젝트와 관련된 재정적 자원과 인적, 기술적 자원 동원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올림픽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과 수단을 제안해야 함.

○ 추상적인 일반 임무

- 2017년 11월 15일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24 올림픽과 패럴림픽은 개최 지역뿐만 아니라 프랑스 전체가 국가적으로 강력하게 결집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올림픽의 지원 프로그램(문화, 교육, 보건 등)을 담당하는 관계 부처와 서비스 기관, 올림픽 운영위원회의 후원 아래 더 많은 자원봉사자를 동원하고 더 많은 프랑스 국민이 올림픽을 즐길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제안을 해야 할 것임.
- 2024 올림픽 개최지인 파리를 상징할 수 있는 유산(heritage) 콘셉트에 따라 이러한 활동들이 올림픽 개최 이후에도 그 효과를 지속할 수 있도록 확인해야함.
- 올림픽에 관한 정부 차원의 커뮤니케이션의 통일 및 일관성을 보장해야 하며, 신속한 중재가 가능하도록 정보를 올바르게 전달해야 합니다. 이에 국가는 올림픽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이자 책임자이고 올림픽 개

최와 관련된 모든 필수적인 기능 또한 국가가 책임져야 하며 재정적인 책임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정기적으로 연락을 취해야 함.

- 저(국무총리)와 스포츠부 장관, 관련 부처 장관에게 귀하(DIJOP)의 임무에 대한 제반 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함. 귀하(DIJOP)의 임무는 대통령과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기도 함.
- 저(국무총리)는 2024 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귀하가 경륜을 발휘하여 임해 줄 것이라 믿으며 협력을 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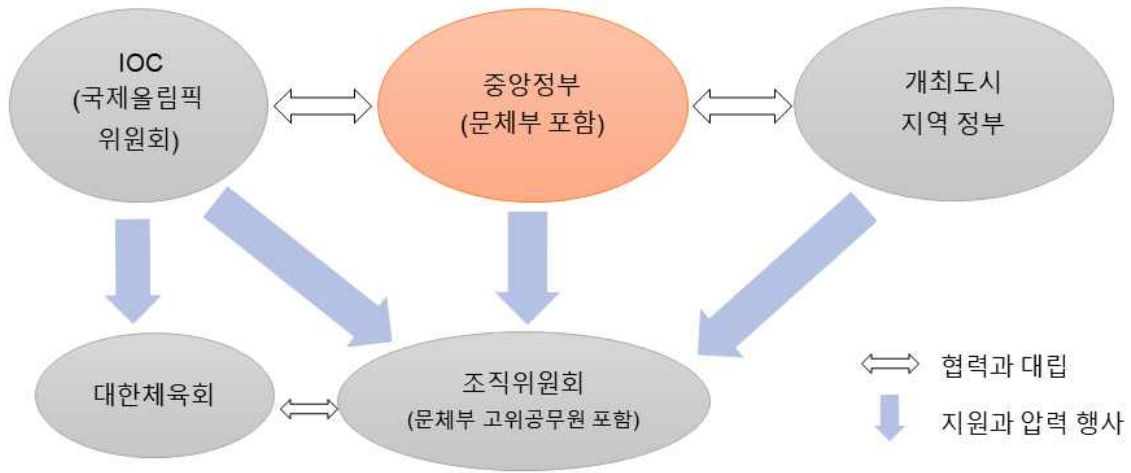
- 한국에서는 지원위원회가 대회를 지원한다는 추상적인 내용은 법으로 정해져 있으나, 실질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기보다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정하고 있음.
- 대회마다 특성이 있겠지만, 대규모 스포츠행사의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서 중앙정부가 해야 하는 지원업무들은 유사하게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이 같은 일반적인 업무들을 모아서 국무총리 훈령 형식으로 제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3) 올림픽 및 패럴림픽 행정대표(DIJOP)의 임무 서신(Lettre de mission) 원문은 참고자료로 붙임

3. 국제스포츠행사 관계자간 협력 관계 비교

- 프랑스, 관계자들이 공익단체 형태로 조직위원회를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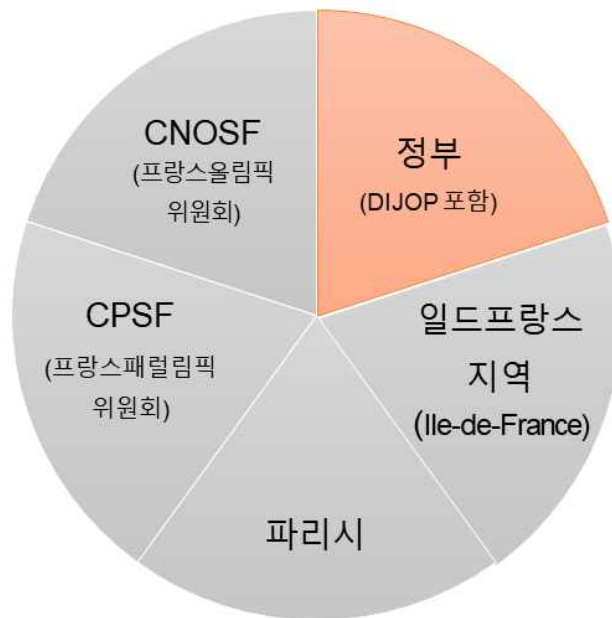
- 대규모국제스포츠행사는 개최국의 모든 역량이 동원되기 때문에 민간과 공공의 여러 주체들이 이에 참여하지만, 가장 주요한 당사자는 조직위원회, 개최국의 스포츠협회, 개최도시의 지방정부, 개최국의 중앙정부 그리고 그 종목의 국제협회임. 재정적 측면에서 대회를 후원하는 기업들 역시 매우 중요한 관계자이지만, 이 글에서는 공공의 영역에 초점을 맞추기로 하겠음.
- 각각의 대회마다 특성이 있겠지만, 논리를 좀 더 쉽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주로 ‘올림픽(패럴림픽을 포함하지만 간단히 ‘올림픽’이라 칭하기로 함.)’의 사례를 보기로 하겠음. 올림픽 개최를 위한 주요 관계자는 조직위원회, 개최국의 올림픽위원회, 개최도시의 지방정부, 개최국의 중앙정부 그리고 국제올림픽위원회임.
- 한국에서는 올림픽조직위원회는 민법상의 법인 형태로서 문체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설립되며, 이후 매년 조직위원회의 운영계획(예산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문체부로부터 승인 받아야 하는 등 조직위원회가 문체부의 감독관리 하에 위치함. 또한, 조직위원회 내 이사회에 문체부의 고위직 공무원이 이사로서 참석함. 대부분의 경우 조직위원회는 논의 안전을 미리 이사들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문체부는 조직위원회의 주요 안전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음.
- 한국의 조직위원회는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에서 파견된 직원들, 민간의 스포츠 기관(대한체육회, 종목별 경기단체 등)에서 파견된 직원들 그리고 민간에서 채용된 직원들 등 다양한 출신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러나, 이들이 어떤 기관에서 파견됐든 지간에 조직위원회는 그들만의 조직체계 안에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파견된 직원이 원래 소속된 기관의 입장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것은 아님. 예컨대, 평창올림픽 기간 중에는 문체부 내의 공무원과 문체부에서 파견된 조직위원회의 공무원간에 업무상의 많은 이견들에 부딪히곤 했음.



<도표7 : 한국의 관계자간 관계>

- 조직위원회는 행정적으로 문체부의 감독 관리를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재정적인 지원도 받고 있기 때문에, 문체부와 수평적인 협력관계라기보다는 수직적인 관계에 가깝다고 판단됨. 이러한 관계는 조직위원회와 개최지역 지방정부, 조직위원회와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조직위원회로서는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관계 기관간의 의견을 조율해야 하는 어려움을 안고 있음. 가장 어려운 상황은 조직위원회가 의사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중앙정부로부터 변경을 요구받게 되는 경우임. 예컨대,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가 준비하고 있던 호랑이 마스코트를, 문체부가 진돗개로 변경할 것을 지시했던 사건은 한국 언론보도를 통해 많은 비난을 받은 바 있음.
- 프랑스의 조직위원회는 여러 관계기관로 구성된 하나의 공익단체(Un groupement d'intérêt public : GIP) 형태임. 공익단체란 단순한 운영 방식과 탄력적인 규약을 지닌 공법상의 법인으로서, 서로 다른 공공조직 간에 또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공공조직과 하나 이상의 민간단체로써 구성될 수 있음. 공익단체는 파트너들 간에 서로의 자원을 공동으로 사용하며 공익을 추구함. 여러 파트너들 간에 협약에 따라 규약을 제정하며, 감사원(또는 지역 감사실)의 감독을 받음.

- 실례로, 2024파리올림픽의 개최를 준비하고 있는 “파리 2024”는 개최국 올림픽위원회, 개최지역 지방정부, 중앙정부로 구성된 공익단체임.



<도표8 : 공익단체'파리2024'의 구성>

< 공익단체 파리2024 >

2024파리올림픽 및 패럴림픽은 프랑스 국립 올림픽 및 스포츠위원회 (CNOSF), 프랑스 장애인 올림픽 체육위원회 (CPSF), 파리시, 일드프랑스 지역과 중앙정부로 구성된 공익단체 파리2024에 의해 운영됨.

Paris aux Jeux Olympiques et Paralympiques 2024 est organisée par le GIP Paris 2024 qui regroupe le Comité national olympique et sportif Français (CNOSF), le Comité paralympique et sportif Français (CPSF), la Ville de Paris, la Région Ile-de-France et l'Etat.²⁴⁾

24) <https://concertation.paris2024.org>

- 조직위원회와 관련된 한국의 비영리법인과 프랑스의 공익단체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한국의 비영리법인과 프랑스의 공익단체 비교 >

구분	한국의 비영리법인	프랑스의 공익단체
법적 성격	민법	공법
감독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감사원
규약	총회에서 규정안을 의결	파트너들의 협약
관계기관간 자원의 활용	관계기관의 자원을 공동활용하지 않음 (타기관의 자원이 필요할 경 우 별도로 요청해야 함)	파트너 기관의 자원 을 공동 활용함
유사점	- 비영리단체 - 관계기관으로부터 파견된 인력 및 자체 채용을 통해 인적 조직을 구성함	

- 프랑스의 공익단체 구조에서는 중앙정부가 상위에서 조직위원회를 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개최국 올림픽위원회와 개최지역 지방정부와 함께 수평적인 협력관계를 보이고 있음. 프랑스의 공익단체 내에서도 파트너간의 이견과 갈등은 여전히 존재하겠지만, 한국의 법인에 비교하면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압력을 행사하는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은 구조로 보임.
- 프랑스의 공익단체는 바람직한 구조라고 치더라도 양국 간 법적인 체계가 매우 다르기 때문에 직접 한국에 적용하기는 어려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트너들의 협약이 의사결정에 중요한 작용을 하는 점, 관계기관들이 수평적으로 협력하기 때문에 어느 한 기관에 의해 공동으로 결정된 것이 전복될 가능성은 적다는 점, 이 덕분에 공익단체의 구성원들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은 시사 하는 바가 큼. 한국의 경우도 비록 ‘구조’ 적으로는 어렵더라도 조정과 협력을 통해 앞서 언급한 3가지 사항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기관 관계가 ‘운영’ 되어야 할 것임.

- 한국과 프랑스의 국제스포츠행사 개최 지원에 관련된 사항들을 거시적으로 비교하여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한국과 프랑스의 국제스포츠행사 개최 지원 관련사항 거시적 비교>

구분	한국	프랑스
스포츠부처의 공무원 운영	전문가 확보가 불리함 (문화·체육·관광 분야를 담당하며, 650명이 일반적으로 2~3년 단위로 보직을 변경하여 근무함)	전문가 확보에 유리함 (체육 분야만 담당하며, 150명이 일반적으로 보직 변경 없이 근무함)
관계 법률	국제스포츠행사, 2018평창동계올림픽 지원을 위한 별도의 법률로서, 지원 대상과 지원 기구의 운영 등에 관련된 내용을 규정함	대규모스포츠행사, 2024파리올림픽 개최 지원을 위한 내용은 법규명령으로 지원 기구의 운영 등에 관련된 내용을 규정함
지원위원회	각 대회별로 지원위원회를 구성하며, 한시적 기구임 (실질적 임무를 법적으로 명문화하지 않음)	대규모스포츠행사 행정 대표(DIGES)를 상시 운영함 ('임무 서신' 형태로 DIGES의 실질적인 임무를 기술함)
기관 관계	문체부가 대회조직위원회의 계획을 승인하는 등 수직적으로 협력함	대회 개최 관계자가 공익단체(GIP)를 구성하여, 수평적으로 협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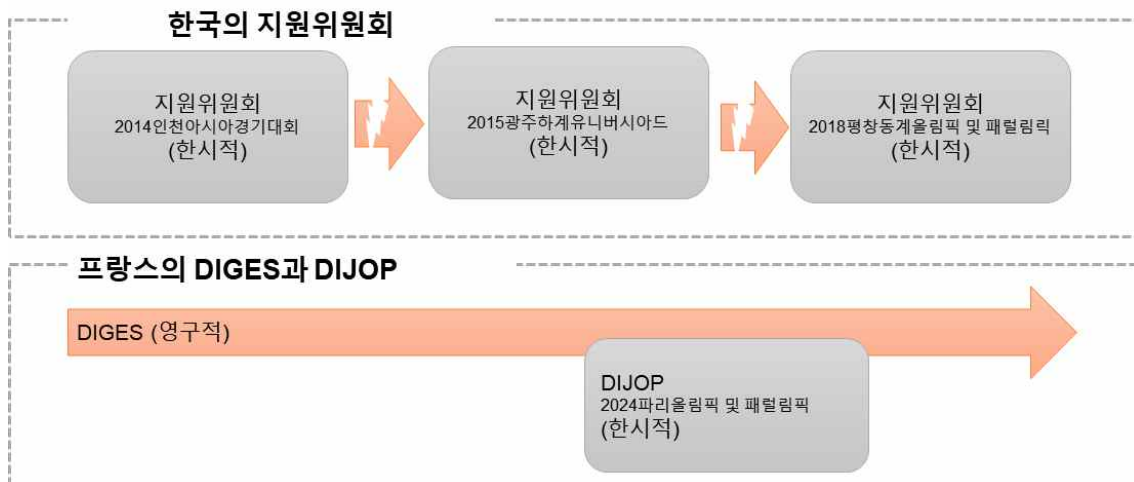
Ⅵ. 우리나라의 국제스포츠행사 개최 지원방식 개선방안 제안

1. 국제스포츠행사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 구성

- 정부조직 내 전담 부서 신설

- 문체부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2015년에 전담부서인 ‘평창올림픽지원과’를 신설하고 본격적으로 지원 업무를 개시하였음. 한국은 1988년에 서울하계올림픽을 개최한 경험이 있지만, 30년 전의 행사를 사례로 하여 2018년에 올림픽을 준비하기에는 부족하였음. 이전에 개최했었던 월드컵, 아시아경기대회, 유니버시아드 등들도 대회의 성격이나 규모가 올림픽과 달랐고, 전차 대회인 소치올림픽으로부터도 깊이 있는 ‘노하우(Know-how)’를 배우는 것은 어려웠음.
- 대규모 국제스포츠행사를 지원하는 창구인 ‘국제경기대회 지원위원회’는 한시적 조직이고 각 대회 때마다 구성되기 때문에, 과장하여 표현하면, 필연적으로 항상 ‘초보자’로서 업무를 시작할 수밖에 없음. 다만, 다행스럽게 가까운 과거에 유사한 행사를 개최해 본 경험이 있다면 일정 수준의 전문성을 전차 대회로부터 전수받을 수 있을 것임. 실제로 한국은 2014년 인천하계아시아경기대회를 개최하고 2015년에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를 개최하여 2015년 대회를 좀 더 잘 개최할 수 있었다고 생각함. 복잡한 평가방법을 생략하고 국정감사나 언론의 보도 등을 통해 필자가 공무원으로서 체감한 성공 정도를 말하자면, 2014년 대회에 비해 2015년이 훨씬 높기 때문임. 그러나, 이런 행운에 의지하기에는 정부가 국제스포츠행사 개최를 지원하는 일은 너무 중대한 업무임.
- 필자는 프랑스의 올림픽 및 패럴림픽 행정 대표, 대규모스포츠행사 행정 대표 (Délégué interministériel aux jeux Olympiques et Paralympiques : DIJOP, Délégué interministériel aux grands événements sportifs : DIGES)의 운영방식을 한국에도 유사하게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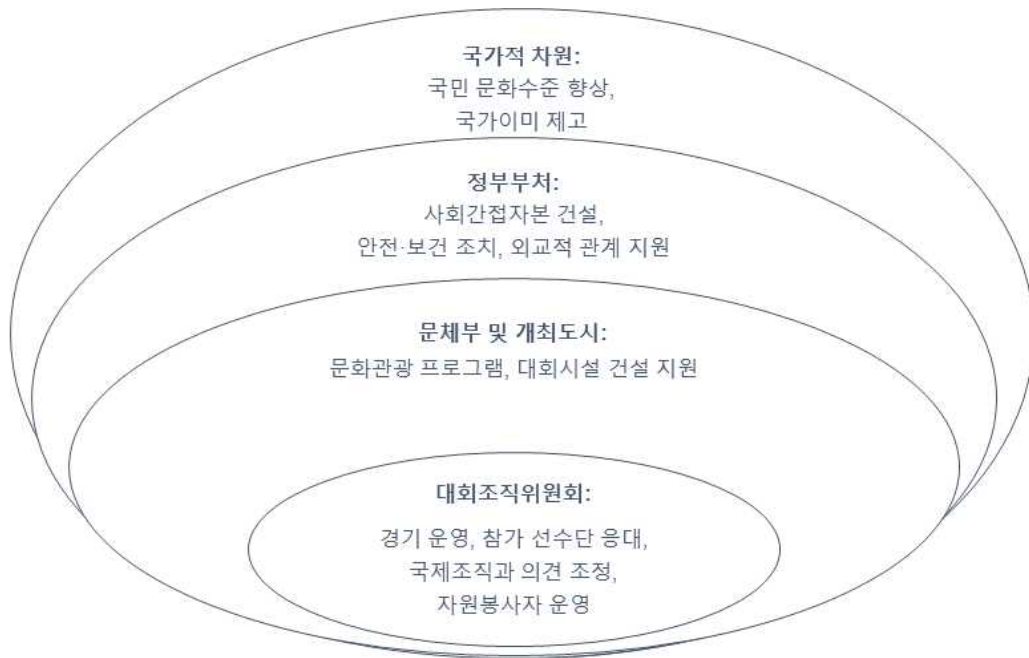
입할 것을 제안함. 즉, 문체부 장관 감독 아래 대규모스포츠행사 행정대표단(이하 ‘행정대표단’이라 칭함)을 상설조직으로 신설하고, 올림픽 등의 유치가 확정되면 이 부서를 국무총리 감독 아래로 이관하여 업무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임.



<도표9 : 한시조직과 영구조직의 비교>

- 2018평창올림픽을 지원하기 위해 문체부는 전담부서인 ‘평창올림픽지원과’를 만들었으나, 이 부서 역시 지원위원회와 같이 한시적 조직으로서 대회 폐회 후에 해산되었음. 전담조직이 대회에 임박해서 신설되고 대회 폐막과 함께 해산되기 때문에, 지원위원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문성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함.
- 전담조직을 상설기구로 두는 것에 반대하고 대회 개최 시기 전에 설치하면 된다고 주장은, 대규모 국제스포츠행사가 다양한 범주 수준에서 상당한 시간 동안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행사를 지극히 좁은 수준에서만 이해하기 때문임.
- 대규모 국제스포츠행사 개최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사항들은 크게 4가지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첫째, 조직위원회 수준에서 경기를 운영하고, 참가 선수단을 응대하고, 국제조직과 의견을 조정하고, 관객을 모집하고, 자원봉사자를 운영하는 것임. 둘째, 문체부와 개최도시 수준에서는 대회를 계기로 문화 및 관광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경기장 등 대회 시설의 건설을 지원하며,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임. 셋째, 관계부처 수준에서는 도로·교통 등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하고, 안전과 보건에 관한 조치를 취하고, 참가국 등과 외교적 관계를 지원하는 것임. 넷째, 전 국민의 문화적 수준을 향상하고 국가 이미지를 높이는 것임.



<도표10 : 대규모 국제스포츠행사 개최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사항>

-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문체부는 장관과 차관(스포츠 분야 담당)을 같은 인물로 유지하고 있음. 이 두 사람은 2018평창 올림픽을 통해 전문성을 체득하였을 뿐 아니라, 국제기구와 북한에 대해서 카운터 파트너로서 역할을 지속해야 하기 때문임. 남북은 2032년에 하계올림픽을 공동으로 개최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2019년 2월에 IOC와 함께 3자 회의를 개최하였음.
- 이러한 사실은 필자의 제안에 힘을 실어주고 있음. 한국의 공무원 인사 제도 내에서는 장관과 차관을 언제까지 같은 인물로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함. 문재인 정부가 희망하듯이 2032년에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과 국제 제재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남북 간의 협력을 통해 개최계획을 수립하는 것, 2025년에 대회 유치전에서 승리하는 것, 올림픽에 필요한 사회간접자본을 제때에 건설하는 것 등 이 모든 것에 시간과 전문성이 필요함.

- 필자는 바로 지금이 ‘대규모 스포츠행사를 위한 부처간 대표단’의 설치가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함. 누차 강조한 전문성의 지속을 위해서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노하우와 전문성이 아직까지 생생하고, 2032올림픽을 준비가 벌써 시작되었기 때문임.
- 한편, 대한체육회는 2018년부터 ‘국제스포츠이벤트 유치 및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한 로드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 중이며, 가칭 국제스포츠행사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국제대회 개최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담기구로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²⁵⁾.
- 중앙정부에 ‘대규모 스포츠행사를 위한 부처간 대표단’과 같은 조직이 설치된다 하더라도 이와 별개로 대한체육회 내의 국제스포츠행사 전담조직도 설치에 대한 필요성은 여전히 유효함. 왜냐하면, 대규모 국제스포츠행사 개최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사항들의 범주가 다르기 때문에, 두 조직의 임무 범위가 역시 차별성이 있기 때문임. 다시 말하면, 중앙정부는 부처 간의 의견 조정이나 전 국가 차원의 보건·교통·문화·관광·대국민 홍보 계획 등을 위해 전담조직이 필요하다면, 대한체육회는 대회 본연의 업무라고 할 수 있는 경기 운영, 참가 선수단 관리, IOC등 주최 국제기구에 대한 전문성 있는 대응을 위해 전담조직이 필요한 것임.

25) 대한체육회가 조사한 국제스포츠행사 개최 지원의 해외 사례 요약자료를 첨부 자료에 붙임

2. 담당공무원의 전문직위 운영 개선

- 실질적인 전문가 배치

- 한국의 중앙정부 공무원의 보직을 변경하며 근무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전문직위’라고 지칭하여, 어떤 업무에 대해서는 적어도 4년간은 보직 변경 없이 근무하게 하는 인사 방식이 존재함. 그리고, 국제스포츠행사의 개최 지원과 관련된 업무도 이 전문직위에 해당함.
- 다만, 실제 업무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유 때문에 이 방식이 의도한 것에 비해서는 큰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음. 첫째, 그 직원이 해당업무에 대해 이미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서 전문직위가 된 것이 아니고, 그 누구라도 그 자리에서 일한 지 1년이 경과하면 명목상 전문직위가 되기 때문에, 그 직원이 객관적으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함. 둘째, 정작 4년을 근무하여 전문성을 갖추는 때 즈음이면 다른 보직으로 인사이동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그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음. 셋째, 대규모국제스포츠행사는 1~2명의 실무자가 지원하는 것으로는 부족한데²⁶⁾, 그마저도 승진·연수·휴직 같은 사유로 채 4년을 근무하지 못하고 인사이동 되는 경우가 빈번함.
- 전문직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문직위에 새로운 직원을 발령할 때에는 같은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직원을 배치할 것을 제안함. 예컨대, 국제스포츠행사 개최 지원을 담당하는 직원 자리에는 체육 분야 업무를 담당해 경력이 있는 직원을 배치하는 것임.
- 문체부 내의 체육국은 직원이 100여명인데, 같은 체육국 내에서는 업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체육국에서 근무했던 직원을 국제스포츠행사 전문직위에 배치하는 것으로도 대안이 될 수 있음.

26)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평창동계올림픽및패럴림픽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으로 2개의 전담부서(인원과 부서명은 변경 이력이 있으나, 올림픽 기간 중에 인원은 총 20명, 부서명은 각각 평창올림픽지원담당관과 평창올림픽협력담당관이었음)를 운영하였으며, 올림픽을 전후해서는 체육국은 물론이고 부처의 전 직원(특히 관광, 홍보 분야)이 관련 업무를 지원하였음.

VII. 결론

올림픽이나 월드컵과 같은 대규모 국제스포츠행사는 국가적 차원의 행사로 인정됨 이 같은 이유로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영역처럼 정부도 전문성을 갖추어야 함. 이 연구의 목적은 공무원으로 ‘어떻게 하면 정부가 대규모 국제스포츠행사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의 답을 찾는 데에 있음. 조사의 대상으로서 프랑스를 선택한 이유는 프랑스가 국제스포츠행사를 개최하는 데에 노하우(know-how)를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기 때문임.

이 보고서는 한국과 프랑스에서 국제스포츠행사를 지원하는 방식을 3가지 기준에서 비교하였음.

- 첫째, 스포츠를 소관 하는 부처의 공무원 운영 방식
- 둘째, 국제스포츠행사와 관계된 법률상에 나타난 지원 체계
- 셋째, 국제스포츠행사 개최에 관계된 기관간의 협력

그리고, 한국의 지원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음.

첫째, 한국의 문화체육관광부와 프랑스의 스포츠부의 공무원 운영상에 차이점은 다음과 같음. 한국의 문화체육관광부는 본부에 65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은 일반적으로 매 2~3년에 한 번씩 보직을 변경하고 있음. 또한 소관 하는 분야도 문화, 체육, 관광 등 다양함. 이러한 점들은 각각의 분야에서 전문가를 확보하기가 불리한 조건임.

반면에, 프랑스에는 스포츠 분야만 담당하는 스포츠부가 존재하며, 150여명의 직원들이 일반적으로 보직 변경 없이 근무함. 이러한 점들은 한국의 문체부에 비해 전문가를 확보하는 데에 유리함.

둘째, 국제스포츠행사와 관계된 법률상에 나타난 지원 체계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양국의 체계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음. 스포츠 소관

부처의 포함한 중앙정부의 다양한 부처가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점임. 이 위원회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조직위원회가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한국에서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국제경기대회지원위원회가 각 부처 장관들로 구성됨. 지원위원회는 중요사항을 결정하지만, 실무적인 업무는 지원위원회 아래 실무위원회에서 담당함. 실무위원회는 각 부처의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되며, 문체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음.

프랑스에서는 대규모 스포츠행사를 위한 부처간 대표단(Délégué interministériel aux grands événements sportifs : DIGES)이 국제스포츠행사를 지원함. 올림픽 유치가 확정된 후에 이 조직은 올림픽 및 패럴림픽의 부처간 대표단(Délégué interministériel aux jeux Olympiques et Paralympiques : DIJOP)의 업무를 겸직하고 있음.(이하 'DIGES', 'DIJOP'라고 축약하여 지칭하기로 함.) 다시 말하면, 스포츠부장관 지휘 하에 있는 DIGES가 일반적으로 대규모 국제스포츠행사를 지원하고 있다가, 올림픽이 확정된 후에는 국무총리 지휘 하에 있는 DIJOP의 업무를 겸직한다는 것임.

한국의 지원위원회와 프랑스의 DIGES가 매우 중요한 차이가 있음. 한국에서 지원위원회는 한시적 조직으로서 매 대회 때마다 신설되었다가 해당 대회가 폐회되면 해산함. 지원위원회가 한시적 조직이기 때문에, 각각의 지원위원회 사이에 노하우가 이어지기가 어려움. 프랑스의 경우 DIJOP은 한시적 조직이지만, DIGES는 영구적 조직임. 프랑스가 행사 개최에 숙달될 수 있었던 것은 DIGES가 개최 지원의 노하우를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봄.

셋째, 한국과 프랑스는 관계기관간의 관계에서도 차이점을 보임. 한국의 대회 조직위원회는 문체부로부터 행정적인 관리감독을 받으며 보조금을 지원받기 때문에, 양자는 수직적인 관계에 있음. 이러한 관계는

조직위원회와 IOC(국제올림픽위원회), 조직위원회와 지방정부의 관계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조직위원회로서는 관계기관들의 다양한 의견을 조정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음.

프랑스의 대회 조직위원회는 여러 관계 조직들로 구성된 공익단체 (groupement d'intérêt public : GIP, 이하 'GIP'이라고 축약하여 지칭하기로 함.)의 형태임. GIP은 적어도 하나 이상의 공공조직 파트너와 하나 또는 여러 개의 민간조직이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됨. 예컨대, 2024년 파리올림픽을 준비하는 “파리2024(Paris 2024)”는 DIJOP을 포함한 중앙정부, 파리와 일드프랑스(Ile-de-France) 지방을 포함한 개척도시 지방정부, 프랑스올림픽위원회, 프랑스패럴림픽위원회 등의 조직이 공동파트너로서 설립된 GIP임. 프랑스의 GIP 구조에서 중앙정부는 국가올림픽위원회와 지방정부와 수평적인 협력관계를 가짐. 비록 GIP의 파트너들 사이에도 갈등은 존재하겠지만, 한국의 경우처럼 중앙정부가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은 적어보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지원방식 개선을 위한 2가지 제안을 도출하였음. 첫째, 국제스포츠행사를 전담하여 지원하는 조직을, 프랑스의 DIGES의 경우처럼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음. 남과 북은 2032년 하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음. 이를 위해서는 지금이 바로 전문성을 갖춘 DIGES를 설치해야할 때임.

둘째, ‘전문직위’의 운영을 개선해야 함. ‘전문직위’는 한 직원이 특정 업무에서 보직 변경 없이 적어도 4년 이상 근무하게 하는 직위이며, 국제스포츠행사에 관련된 보직도 이에 해당함. 그러나, 실제로는 신규 임용직원 또는 스포츠 분야에 경력이 없는 직원이 일하는 사례가 있음. 대규모 국제스포츠행사를 담당하는 업무는 유사한 경험이 있는 직원이 담당해야 할 것임.

<참고 자료>

1. 참고 문헌 및 링크 목록

- 한국스포츠개발원(책임연구자 조현주), 「해외 스포츠정책 동향 분석 - 체육행정 거버넌스 및 주요 이슈 관련 정책 비교」, 2016
- 전훈, 「프랑스 스포츠법제에 관한 소고」, 『법제논단』 2017년 3월호
- 법제처 법령정보관리원 세계법제사업팀 연구보고서, 「프랑스의 법률 체계」, 2006
- 문화체육관광부 (<https://www.mcst.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 André Leclercq, 「LE SPORT AU SERVICE DE LA VIE SOCIALE」, 2007
(https://www.lecese.fr/sites/default/files/pdf/Avis/2007/2007_10%20andre_leclercq.pdf)
- Muriel Hurtis et Françoise Sauvageot, 「L' accès du plus grand nombre à la pratique d' activités physiques et sportives」, 2018
(https://www.lecese.fr/sites/default/files/pdf/Avis/2018/2018_20_acces_pratique_sportive.pdf)
- Ministère des Sports, 「Données détaillées 2017」
(<http://www.sports.gouv.fr/organisation/publication-chiffres-cles/Statistiques/Donnees-detaillees/article/Donnees-detaillees-2017>)
- Ministère des Sports, 「L' ORGANISATION DU SPORT EN FRANCE」
(http://www.sports.gouv.fr/IMG/pdf/orgasportfrancais_sigles5.pdf
<http://www.sports.gouv.fr/organisation/organisation-du-sport-en-france/>
<http://www.sports.gouv.fr/organisation/organisation-du-sport-en-france/les-principaux-acteurs/>)
- CNDS, 「2017 CNDS Rapport d' Activité」, 2018
- CNDS, 「le Centre national pour le développement du sport (CNDS) vous accompagne en 2018 dans vos projets」, 2018
(http://www.cnds.sports.gouv.fr/IMG/pdf/plaquette_cnds_2018_vf.pdf)

- CNDS, 「CNDS Sport et Innovation」 , le 29 janvier 2019.
- Le Comité National Olympique et Sportif Français, 「Centre de ressources Dispositif Local d'Accompagnement Sports」
(<http://crdla-sport.franceolympique.com/art.php?id=73259>)
- <https://concertation.paris2024.org/pages/les-organismes-de-la-concertation>
- <https://sportetsociete.org/tag/gip-paris-2024/>
- Paris2024, 「Communiqué Paris 2024 - L'héritage et la durabilité au centre du premier CA de l'année 2019 de Paris 2024」 , le 24 janvier 2019.
- Paris2024, 「Communique paris2024 - le gip paris 2024 boucle son exercice avec un excédent de 67 millions deuros」 , le 8 novembre 2018.
- <https://www.gouvernement.fr/organisation-dijop>
- Le Service Public de la Diffusion du Droit
(<https://www.legifrance.gouv.fr>)
- <https://www.ouvrages-olympiques.fr/>
- Paris Tribune, 「La SOLIDEO placée sous la tutelle de trois ministères, qu'est-ce que c'est ? 」 , le 14 juin 2018.
(https://www.paris Tribune.info/La-SOLIDEO-placee-sous-la-tutelle-de-trois-ministeres-qu-est-ce-que-c-est_a9962.html)

2. 프랑스 관계 법령 원문

1) 스포츠법전(Code du sport) 중 대규모 스포츠 행사(MANIFESTATIONS SPORTIVES) 관련 조문 제목 원문

* 조문제목을 클릭하면 프랑스 법령정보센터(Le Service Public de la Diffusion du Droit (<https://www.legifrance.gouv.fr>))로 링크되어 조문 원문을 볼 수 있음.

- TITRE III : MANIFESTATIONS SPORTIVES
 - Chapitre Ier : Organisation des manifestations sportives
 - Section 1 : Rôle des fédérations
- La présente section ne comprend pas de dispositions pour les arrêtés.
- Section 2 : Autorisation et déclaration préalable
 - Sous-section 1 : Dispositions générales ([Article A331-1](#))
 - Sous-section 2 : Manifestations sportives sur les voies publiques ou ouvertes à la circulation publique ne comportant pas la participation de véhicules terrestres à moteur ([Articles A331-2 à A331-5](#))
 - Sous-section 3 : Concentrations et manifestations sportives comportant la participation de véhicules terrestres à moteur
 - Paragraphe 1 : Manifestations et concentrations soumises à déclaration ([Articles A331-16 à A331-19](#))
 - Paragraphe 2 : Manifestations soumises à autorisation ([Articles A331-20 à A331-21](#))
 - Paragraphe 3 : Manifestations soumises à l'évaluation des incidences Natura 2000 ([Article A331-21-1](#))
 - Paragraphe 4 : Dossier de demande d'homologation de circuit ([Articles A331-21-2 à A331-21-3](#))
 - Sous-section 4 : Dispositions concernant les manifestations sportives visées à l'alinéa 2 de l'article R. 331-19 ([Articles A331-22 à A331-23](#))
 - Section 3 : Obligations d'assurance des organisateurs de manifestations sportives
 - Sous-section 1 : Manifestations sportives sur les voies publiques ou ouvertes à la circulation publique ne comportant pas la participation de véhicules à moteur. ([Article A331-25](#))
 - Sous-section 2 : Epreuves ou manifestations comportant la participation de véhicules terrestres à moteur ([Article A331-32](#))
 - Section 4 : Organisation de manifestations publiques de sports de combat ([Articles A331-33 à A331-36](#))
 - Chapitre II : Sécurité des manifestations sportives

- Section 1 : Organisation d'épreuves et compétitions sportives sur la voie publique ([Articles A331-37 à A331-42](#))
- Chapitre III : Retransmission des manifestations sportives

Le présent chapitre ne comprend pas de dispositions pour les arrêtés.

- 2) 대규모 스포츠 행사에 위한 부처간 대표단 설치에 관한 법규명령
(Décret n° 2008-1142 du 5 novembre 2008 instituant un
délégué interministériel aux grands événements sportifs)

Le 5 février 2019

**Décret n° 2008-1142 du 5 novembre 2008 instituant un délégué
interministériel aux grands événements sportifs**

NOR: SJSK0822159D

Version consolidée au 5 février 2019

Le Premier ministre,

Vu la Constitution, notamment son article 37 ;

Vu le décret n° 2004-374 du 29 avril 2004 relatif aux pouvoirs des préfets, à l'organisation et à l'action des services de l'Etat dans les régions et départements,

Décète :

Article 1

Il est institué, auprès du ministre chargé des sports, un délégué interministériel aux grands événements sportifs.

Article 2

· Modifié par Décret n°2013-650 du 18 juillet 2013 - art. 2

Dans le respect des compétences des préfets, le délégué interministériel aux grands événements sportifs anime et coordonne les activités des administrations de l'Etat et des établissements publics nationaux concourant à l'accueil et à l'organisation des grands événements sportifs internationaux organisés sur le territoire français.

Il assure les relations de l'Etat avec les comités d'organisation chargés d'un grand événement sportif et, en lien avec le représentant de l'Etat dans le département, avec l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intéressées par cette manifestation.

Il participe aux actions d'information du public. Il suscite ou encourage les initiatives destinées à tirer parti de ces manifestations dans les domaines économique, social, éducatif et culturel, en veillant notamment à ce qu'elles contribuent à développer l'accès à la pratique sportive pour les publics ou les territoires qui en sont les plus éloignés.

Il conseille le Gouvernement dans la définition des modalités d'accueil des grandes manifestations sportives de dimension internationale dont l'organisation incombe à la France.

Article 2-1

· Créé par Décret n°2013-650 du 18 juillet 2013 - art. 3

Pour chaque grand événement sportif international, le délégué interministériel anime un réseau de correspondants dans les différents ministères concernés, sous la forme d'un groupe de suivi qu'il préside et anime.

Les préfets concernés par l'événement sont associés au réseau.

Les préfets concernés

Les représentants des fédérations sportives et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concernées par l'événement peuvent être associés, en tant que de besoin, à ses travaux.

Les représentants des comités d'organisation sont invités à participer aux travaux.

Article 3

· Modifié par Décret n°2013-650 du 18 juillet 2013 - art. 4
Pour l'exercice de ses missions, le délégué interministériel dispose des services placés sous l'autorité du ministre chargé des sports.

Il peut faire appel, en tant que de besoin, aux services des autres ministères concernés.

A cet effet, il peut bénéficier du concours de moyens de fonctionnement et d'agents mis à sa disposition par ces ministères.

Article 4

A modifié les dispositions suivantes :

- Abroge Décret n°2005-1495 du 5 décembre 2005 (Ab)
- Abroge Décret n°2005-1495 du 5 décembre 2005 - art. 1 (Ab)
- Abroge Décret n°2005-1495 du 5 décembre 2005 - art. 2 (Ab)
- Abroge Décret n°2005-1495 du 5 décembre 2005 - art. 3 (Ab)
- Abroge Décret n°2005-1495 du 5 décembre 2005 - art. 4 (Ab)
- Abroge Décret n°2005-1495 du 5 décembre 2005 - art. 5 (Ab)

Article 5

Le ministre d'Etat, ministre de l'écologie, de l'énergie, du développement durable et de l'aménagement du territoire, la ministre de l'intérieur, de l'outre-mer et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le ministre des affaires étrangères et européennes, la ministre de l'économie, de l'industrie et de l'emploi, le ministre de l'immigration, de l'intégration, de l'identité nationale et du développement solidaire, le ministre de l'éducation nationale, le ministre de la défense, la ministre de la santé, de la jeunesse, des sports et de la vie associative, la ministre de la culture et de la communication, le ministre du budget, des comptes publics et de la fonction publique et le secrétaire d'Etat chargé des sports, de la jeunesse et de la vie associative sont chargés, chacun en ce qui le concerne, de l'exécution du présent décret, qui sera publié au Journal officiel de la République française.

Fait à Paris, le 5 novembre 2008.

François Fillon

Par le Premier ministre :

La ministre de la santé,
de la jeunesse, des sports
et de la vie associative,
Roselyne Bachelot-Narquin

Le ministre d'Etat, ministre de l'écologie,
de l'énergie, du développement durable
et de l'aménagement du territoire,
Jean-Louis Borloo

La ministre de l'intérieur,
de l'outre-mer et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Michèle Alliot-Marie

Le ministre des affaires étrangères
et européennes,
Bernard Kouchner

La ministre de l'économie,
de l'industrie et de l'emploi,
Christine Lagarde

Le ministre de l'immigration,
de l'intégration, de l'identité nationale
et du développement solidaire,
Brice Hortefeux

Le ministre de l'éducation nationale,
Xavier Darcos

Le ministre de la défense,
Hervé Morin

La ministre de la culture
et de la communication,
Christine Albanel

Le ministre du budget, des comptes publics
et de la fonction publique,
Eric Woerth

Le secrétaire d'Etat
chargé des sports, de la jeunesse
et de la vie associative,
Bernard Laporte

- 3) 2024파리올림픽 및 패럴림픽을 위한 부처간 대표단 설치에 관한 법규 명령(Décret n° 2017-1336 du 13 septembre 2017 relatif au délégué interministériel aux jeux Olympiques et Paralympiques 2024)

Le 30 janvier 2019

Décret n° 2017-1336 du 13 septembre 2017 relatif au délégué interministériel aux jeux Olympiques et Paralympiques 2024

NOR: PRMX1725739D

Version consolidée au 5 juillet 2018

Le Premier ministre,

Sur le rapport de la ministre des sports,

Vu la Constitution, notamment son article 37 ;

Vu le code civil, notamment son article 1er ;

Vu la loi n° 2017-257 du 28 février 2017 relative au statut de Paris et à l'aménagement métropolitain, notamment son article 53 ;

Vu le décret n° 2004-374 du 29 avril 2004 relatif aux pouvoirs des préfets, à l'organisation et à l'action des services de l'Etat dans les régions et départements ;

Vu l'urgence,

Décète :

Article 1

Il est institué un délégué interministériel pour les jeux Olympiques et Paralympiques 2024.

Le délégué interministériel, placé auprès du Premier ministre, est

nommé par décret en conseil des ministres.

Il est assisté d'un adjoint, nommé par décret.

Article 2

Il est institué un comité interministériel chargé de définir les orientations pour l'organisation des jeux Olympiques et Paralympiques 2024.

Le comité comprend le ministre chargé des sports, le ministre de l'éducation nationale, le ministre chargé de l'enseignement supérieur et de la recherche, le ministre chargé de l'économie, le ministre chargé du budget, le ministre chargé du logement, le ministre chargé de la défense, le ministre de l'intérieur, le ministre chargé de l'aménagement du territoire, le ministre chargé des transports, le ministre chargé du travail, le ministre chargé de la culture, le ministre chargé de la santé, le ministre chargé du tourisme, le ministre chargé de l'agriculture et de l'alimentation, le ministre chargé de l'environnement, le ministre chargé de l'Europe et des affaires étrangères, le ministre chargé des personnes handicapées, le ministre chargé de l'égalité entre les femmes et les hommes ainsi que les autres membres du Gouvernement intéressés par son ordre du jour.

Le comité est placé sous la présidence du Premier ministre ou, par délégation de celui-ci, sous la présidence du ministre chargé des sports.

Article 3

Le délégué anime et coordonne les activités des administrations et des établissements publics nationaux concourant à l'organisation des jeux Olympiques et Paralympiques 2024. Il veille à l'harmonisation des actions conduites et à la réalisation du programme d'équipements publics au financement duquel l'Etat, les établissements publics nationaux et les entreprises publiques participent. A ce titre, il s'assure en particulier de l'avancement des projets menés par la société de livraison des ouvrages olympiques ainsi que de l'élaboration des dispositions législatives et réglementaires qu'implique l'accueil des jeux Olympiques et Paralympiques.

Il assure les relations de l'Etat avec le Comité d'organisation des jeux Olympiques et Paralympiques 2024 et, en liaison avec les préfets concernés, avec l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intéressées.

Il suscite et encourage les actions d'information relatives aux jeux Olympiques et Paralympiques, et participe à la valorisation des effets économiques, sociaux, environnementaux et culturels de la tenue de cette manifestation.

Il assure la conduite du programme interministériel relatif au programme d'héritage 2024 et concourt à son développement en régions sous l'autorité des préfets.

Il est membre du conseil d'administration de la société de livraison des ouvrages olympiques.

Article 4

· Modifié par Décret n°2018-73 du 7 février 2018 - art. 1

Un comité de coordination est placé auprès du délégué interministériel, qui en assure la présidence.

Il comprend un représentant de chaque ministre membre du comité interministériel ainsi que le préfet de la région Ile-de-France, le préfet de police et les préfets des départements qui accueillent un site de compétition.

Les représentants des ministres sont nommés par arrêté du Premier ministre sur proposition de chacun des ministres intéressés.

D'autres ministres peuvent être appelés à se faire représenter aux travaux du comité de coordination, selon la question inscrite à l'ordre du jour.

Le représentant du Comité d'organisation des jeux Olympiques et Paralympiques 2024 peut être invité à assister au comité de

coordination.

Le comité se réunit sur convocation du délégué interministériel, qui en fixe l'ordre du jour.

Article 5

Le délégué interministériel aux jeux Olympiques et Paralympiques 2024 réunit un comité des partenaires regroupant les acteurs de l'organisation des jeux Olympiques et Paralympiques et notamment le directeur du Comité d'organisation des jeux Olympiques et Paralympiques 2024 et le directeur général de la société de livraison des ouvrages olympiques.

Article 6

Le délégué interministériel aux jeux Olympiques et Paralympiques 2024 est rattaché du point de vue administratif et budgétaire au secrétariat général du Gouvernement.

Il peut faire appel aux services centraux et déconcentrés ainsi qu'aux organismes placés sous l'autorité des ministres représentés au comité de coordination ainsi qu'au service d'information du Gouvernement.

Il bénéficie de personnels détachés ou mis à sa disposition par ces mêmes ministères. Il peut également recourir à un nombre limité de contractuels.

Article 7

Le ministre d'Etat, ministre de l'intérieur, le ministre d'Etat, ministre de la transition écologique et solidaire, le ministre de l'Europe et des affaires étrangères, la ministre des armées, le ministre de la cohésion des territoires, la ministre des solidarités et de la santé, le ministre de l'économie et des finances, la ministre de la culture, la ministre du travail, le ministre de l'éducation nationale, le ministre de l'agriculture et de l'alimentation, le ministre de l'action et des comptes publics, la ministre de l'enseignement supérieur, de la recherche et de l'innovation,

la ministre des sports, la secrétaire d'Etat chargée de l'égalité entre les femmes et les hommes et la secrétaire d'Etat chargée des personnes handicapées sont chargés, en ce qui le concerne, de l'exécution du présent décret, qui sera publié au Journal officiel de la République française et entrera en vigueur immédiatement.

Fait le 13 septembre 2017.

Edouard Philippe

Par le Premier ministre :

Le ministre d'Etat, ministre de l'intérieur,
Gérard Collomb

Le ministre d'Etat, ministre de la transition écologique et solidaire,
Nicolas Hulot

Le ministre de l'Europe et des affaires étrangères,
Jean-Yves Le Drian

La ministre des armées,
Florence Parly

Le ministre de la cohésion des territoires,
Jacques Mézard

La ministre des solidarités et de la santé,
Agnès Buzyn

Le ministre de l'économie et des finances,
Bruno Le Maire

La ministre de la culture,
Françoise Nyssen

La ministre du travail,
Muriel Pénicaud

Le ministre de l'éducation nationale,
Jean-Michel Blanquer

Le ministre de l'agriculture et de l'alimentation,
Stéphane Travert

Le ministre de l'action et des comptes publics,
Gérald Darmanin

La ministre de l'enseignement supérieur, de la recherche et de
l'innovation,
Frédérique Vidal

La ministre des sports,
Laura Flessel

La secrétaire d'Etat auprès du Premier ministre, chargée de l'égalité
entre les femmes et les hommes,
Marlène Schiappa

La secrétaire d'Etat auprès du Premier ministre, chargée des personnes
handicapées,
Sophie Cluzel

4) 올림픽 및 패럴림픽을 위한 부처간 대표(DIJOP, le délégué interministériel aux jeux Olympiques et Paralympiques 2024) 임무의 서신(Lettre de mission) 전문 및 번역본

Le Premier Ministre
2158 / 17 / SG

Paris, le 27 NOV 2017

Monsieur le délégué interministériel aux jeux Olympiques et Paralympiques 2024,

Le 13 septembre dernier, le comité international olympique a décidé que les jeux Olympiques et Paralympiques 2024 auront lieu à Paris. Ils doivent être exemplaires au regard des valeurs de l'olympisme, de l'éthique, de la transparence et du développement durable.

Ces valeurs doivent imprégner l'ensemble du processus de mise en oeuvre des Jeux, qu'il s'agisse des règles des gouvernance, des conditions d'utilisation des ressources financières, notamment publiques, des modalités de réalisation ou de rénovation des équipements prévus, des actions de communication ou encore des vecteurs de mobilisation de la société civile et des territoires. Il vous appartiendra de veiller au respect de ces valeurs.

Le décret numéro 2017-1336 du 13 septembre 2017 a défini le cadre général de votre action. Je souhaite en préciser les principaux axes.

Il vous appartient en premier lieu de veiller à la mise en cohérence et à la coordination des services de l'Etat et de ses établissements publics appelés à concourir, à un titre ou à un autre, à l'organisation des jeux Olympiques et Paralympiques 2024. Vous vous assurerez de la mobilisation des ministères et des préfets concernés et de leur contribution à la mise en oeuvre du projet olympique et paralympique. A cet effet, vous réunirez régulièrement le comité de coordination prévu à l'article 4 du décret du 13 septembre 2017.

Vous coordonnerez l'élaboration et la mise en oeuvre, dans un cadre concerté, de la loi relative à l'organisation des jeux Olympiques et Paralympiques 2024 et de ses textes d'application, destinée à tenir les

engagement pris à l'égard du Comité international olympique. Vous veillerez en particulier à porter à la connaissance des ministères compétents toute modification législative ou réglementaire permettant une organisation optimale des Jeux.

M. Jean CASTEX

Délégué interministériel aux jeux Olympiques Paralympiques 2024

Vous superviserez également la création de la société de livraison des équipements olympiques (SOLIDEO) en accompagnant son préfigurateur et en pilotant, de façon concertée, l'écriture de ses statuts et la conception de son premier budget.

Vous vous attacherez par ailleurs à assurer une relation fluide et permanente avec l'ensemble des partenaires du projet, en maintenant l'unité qui a permis à la candidature Paris 2024 d'être retenue : le comité d'organisation des jeux Olympiques (COJO), la ville de Paris, les autr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concernées, le mouvement sportif, ainsi qu'avec la SOLIDEO et la structure qui sera chargée de faire vivre l'héritage de cette manifestation. Une attention particulière devra être portée à l'articulation des missions du COJO et de la SOLIDEO.

En vue de la création effective du COJO avant le mois de février 2018, vous préparerez la position de l'Etat sur la rédaction des statuts de cette association pilotée par le mouvement sportif, à laquelle l'Etat apportera sa garantie en dernier ressort. Ils devront notamment comporter les meilleurs standards d'éthique et de transparence et satisfaire des exigences d'efficacité.

Sous couvert de la ministre des sports, vous me ferez, d'ici la fin de l'année 2017, des propositions quant à l'avenir du délégué interministériel aux grands événements sportifs, conciliant l'efficacité et la lisibilité de l'action des pouvoirs publics en la matière.

Pas ailleurs, vous vous assurerez, en vous appuyant sur l'ensemble des services de l'Etat compétents, du respect du budget prévisionnel des Jeux et des délais de livraison des équipements et infrastructures (en lien avec la SOLIDEO). Votre contrôle s'étendra aux conditions d'exécution du budget du COJO.

Compte tenu des volumes financiers en jeu et de l'importance de la mobilisation des moyens humains et techniques autour de ce projet, vous proposerez la mise en place d'une méthodologie et d'outils que

permettront d'évaluer l'impact économique, social et environnemental de Jeux.

Plus généralement, les jeux Olympiques et Paralympiques doivent être, comme l'a rapelé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le 15 septembre 2017, l'occasion d'une forte mobilisation nationale, dans les territoires, comme dans l'ensemble de la société française.

Vous ferez toute proposition utile pour satisfaire cet objectif, avec l'appui des ministères ou services qui sont chargés des programmes d'accompagnement de Jeux (culture, éducation, santé...), et avec celui du COJO, pour la mobilisation du plus grand nombre de volontaires et pour offrir au plus grand nombre de Français la possibilité de s'engager pour le Jeux. Il vous appartiendra en outre de veiller à ce que, dans la logique d'héritage qui caractérise la candidature de Paris 2024, ces actions continuent à produire leurs effets au-delà de la tenue des Jeux.

Vous apporterez votre contribution à l'uniformité et à la cohérence de la communication gouvernementale autour des Jeux et assurerez une bonne transmission de l'information afin de permettre des arbitrages rapides. L'Etat doit en effet communiquer régulièrement pour rappeler qu'il est le premier partenaire et le garant des Jeux, que toutes les fonctions essentielles du déroulement de l'événement relèvent de sa responsabilité et qu'il est engagé financièrement dans son organisation.

Vous me rendrez compte à intervalles réguliers, ainsi qu'au ministre chargé des sports et aux autres ministres concernés, de la mise en œuvre de votre mission à laquelle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et moi-même attachons la plus grande importance.

Je sais pouvoir compter sur votre expérience et votre implication pour conduire ces travaux qui sont essentiels pour la réussite des jeux Olympiques et Paralympiques 2024.

Edouard Philippe

총리

2158 / 17 / SG

2017.11.27 파리

2024 올림픽 및 패럴림픽 부처간 대표 귀하

지난 11월 13일 국제올림픽위원회는 2024 올림픽 및 패럴림픽을 파리에서 개최할 것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올림픽은 올림픽 정신과 도덕적 가치, 투명성, 지속 가능한 발전의 가치를 바탕으로 하는 모범적인 올림픽 사례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가치는 2024 올림픽의 전반적인 프로세스에 적용될 것입니다. 행정 규율(governance rules), 공적 재정 자원의 이용 규정, 예정되어 있는 시설의 개조와 활용 방식, 커뮤니케이션, 시민 단체 및 지역 단체가 동원하는 지원단의 활동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 가치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귀하의 책무입니다.

2017년 11월 13일 자 법령 2017-1336은 귀하의 임무에 대한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중 주요 사항을 명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귀하는 2024 올림픽 및 패럴림픽 개최 시 어떠한 방식으로든 동원될 공공시설과 서비스와 협력해야 하며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관계 부처와 지자체를 동원하여 이들이 올림픽 및 패럴림픽 개최에 협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귀하는 2017년 11월 13일 자 법령 제 4조에 명시된 대로 조정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야 합니다.

귀하는 국제올림픽위원회와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제정된 2024 올림픽 및 패럴림픽 개최 관련 법과 적용 조항을 시행하고 구체화하는데 협력합니다. 특히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개정된 모든 법률 혹은 규정 사항을 관할 부처에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

M. Jean CASTEX

2024 올림픽 및 패럴림픽 각부 대표

또한 올림픽 장비 납품회사(Société de livraison des équipements olympiques, SOLIDEO) 설립을 감독하고 사전 계획에 따라 회사의 정관을 작성하고 초기 예산을 입안하는데 협조해야 합니다.

귀하는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파트너와 유연하고 영구적인 관계를 확립해야 하며 2024 올림픽 개최지가 파리로 선정되는 데 기여한 파트너십을 유지해야 합니다. 여기서 파트너라고 하는 것은 올림픽 운영위원회(Comité d'organisation des jeux olympiques, COJO), 파리시, 기타 관련 지역 공동체, 스포츠 단체, SOLIDEO, 이번 올림픽 행사 이후 관리를 담당한 모든 기관 등을 말합니다. 올림픽 운영위원회(COJO)와 올림픽 장비 납품회사(SOLIDEO)의 임무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것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2018년 2월 이전에 올림픽 운영위원회(COJO)를 효율적으로 조직하기 위하여, 귀하는 스포츠 단체가 주도하는 올림픽 운영위원회의 법령 초안을 작성하기 위한 국가 입장을 준비하여야 하며 국가가 최종적으로 보증해야 할 것입니다. 법령에는 특히 도덕과 투명성에 대한 기준이 포함되어야 하며 요구하는 효율성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스포츠부장관의 후원 하에, 귀하는 저에게 2017년 말까지 올림픽 각부 대표의 미래활동에 대한 제안, 즉 관련 공공기관 활동의 효율성과 성과를 동시에 보여줄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관할 국가 서비스 전체에 대한 올림픽의 예상 예산과 장비, 인프라의 납품 기한(올림픽장비 납품회사와 협력하여)을 검토해야 합니다.

귀하는 이 프로젝트와 관련된 재정적 자원과 인적, 기술적 자원 동원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올림픽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과 수단을 제안해야 합니다.

포괄적으로 말하자면, 2017년 11월 15일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24 올림픽과 패럴림픽은 개최 지역뿐만 아니라 프랑스 전체가 국

가적으로 강력하게 결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올림픽의 지원 프로그램(문화, 교육, 보건 등)을 담당하는 관계 부처와 서비스 기관, 올림픽 운영위원회의 후원 아래 더 많은 자원봉사자를 동원하고 더 많은 프랑스 국민이 올림픽을 즐길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제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4 올림픽 개최지인 파리를 상징할 수 있는 유산(heritage) 콘셉트에 따라 이러한 활동들이 올림픽 개최 이후에도 그 효과를 지속할 수 있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귀하는 올림픽에 관한 정부 차원의 커뮤니케이션의 통일 및 일관성을 보장해야 하며, 신속한 중재가 가능하도록 정보를 올바르게 전달해야 합니다. 이에 국가는 올림픽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이자 책임자이고 올림픽 개최와 관련된 모든 필수적인 기능 또한 국가가 책임져야 하며 재정적인 책임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정기적으로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귀하는 저와 스포츠부 장관, 관련 부처 장관에게 귀하의 임무에 대한 제반 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귀하의 임무는 대통령과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저는 2024 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귀하가 경륜을 발휘하여 임해 줄 것이라 믿으며 협력을 바랍니다.

Edouard Philippe

- 5) 파리 및 수도권 개발 상태에 관한 법(l'article 53 de la Loi n° 2017-257 du 28 février 2017 relative au statut de Paris et à l'aménagement métropolitain) 중 올림픽장비납품회사(la société de livraison des ouvrages olympiques, SOLIDEO) 관련 조문

I. – Il est créé un établissement public national à caractère industriel et commercial dénommé " Société de livraison des ouvrages olympiques ".

II. – Cet établissement a pour mission de veiller à la livraison de l'ensemble des ouvrages et à la réalisation de l'ensemble des opérations d'aménagement nécessaires à l'organisation des Jeux olympiques et paralympiques à Paris en 2024, dans les délais fixés par le Comité international olympique. L'établissement a également pour mission de veiller à la destination de ces ouvrages et de ces opérations à l'issue des jeux Paralympiques de 2024.

1. A cet effet, la société passe avec le Comité d'organisation des Jeux olympiques et paralympiques une convention qui fixe la liste, la programmation et le descriptif des ouvrages.

2. Pour l'exercice de sa mission, la société coordonne, notamment en organisant leurs interventions, les maîtres d'ouvrage et maîtres d'ouvrage délégués responsables des ouvrages et des opérations d'aménagement nécessaires à l'organisation des Jeux olympiques et paralympiques de 2024, avec lesquels elle conclut des conventions relatives au financement et au calendrier de livraison de ces ouvrages ou de réalisation des opérations d'aménagement. Elle contrôle le respect de ce calendrier de livraison ou de réalisation.

3. Elle peut assurer la maîtrise d'ouvrage ou la maîtrise d'ouvrage déléguée de certains des ouvrages ou de certaines opérations d'aménagement. Pour la réalisation de cette mission, la société exerce les compétences reconnues aux établissements publics d'aménagement.

La société peut se substituer au maître d'ouvrage, en cas de défaillance grave de celui-ci, de nature à conduire à un retard ou à l'interruption de la conception, de la réalisation ou de la construction de tout ou partie d'ouvrages ou d'aménagements nécessaires aux Jeux olympiques et paralympiques. La convention prévue au 2 fixe les délais et les conditions dont le non-respect pourra justifier cette substitution.

4. La société participe au financement de tout ou partie des coûts des ouvrages et des opérations d'aménagement olympiques.

5. A l'issue des jeux Paralympiques de 2024, l'établissement a pour mission d'aménager les sites olympiques et paralympiques dans le cadre d'un projet urbain durable en lien avec les projets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III. – La société est administrée par un conseil d'administration composé, en nombre égal, d'une part, de représentants de l'Etat et, d'autre part, de représentants des communes et de leurs établissements publics de coopération intercommunale compétents, des conseils départementaux, du conseil régional d'Ile-de-France, de la métropole du Grand Paris ainsi que de personnalités qualifiées et de représentants du personnel de la société. Son président est désigné par le conseil d'administration parmi ses membres. Le conseil d'administration élit en son sein un ou plusieurs vice-présidents. Le directeur général exécutif est nommé par décret pris sur le rapport des ministres chargés des sports, de l'urbanisme et du budget.

Chaque membre du conseil d'administration dispose d'au moins un droit de vote. Les droits de vote des représentants de l'Etat et des représentants des communes, de leurs établissements publics de coopération intercommunale compétents, des conseils départementaux, du conseil régional d'Ile-de-France et de la métropole du Grand Paris sont proportionnels à leurs contributions financières.

IV. – Ses recettes sont les suivantes :

1° Les contributions financières de l'Etat déterminées en loi de finances ;

2° Les contributions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participant au financement des Jeux olympiques et paralympiques définies dans le cadre de conventions bilatérales passées avec la société ;

3° Toutes les recettes autorisées par les lois et règlements ;

4° Les dons et legs.

V. – La société peut agir par voie d'expropriation et exercer le droit de préemption et le droit de priorité définis au code de l'urbanisme, dans les cas et conditions prévus par le même code.

V bis. – La société, en relation avec l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et les acteurs économiques et de l'insertion concernés, élabore et adopte une charte d'insertion, qui fixe les exigences d'insertion professionnelle de personnes rencontrant des difficultés particulières d'accès à l'emploi, promeut l'accès à la commande publique des très petites entreprises, des petites entreprises et des structures relevant de l'insertion par l'activité économique, limite le recours à l'emploi précaire, lutte contre le travail irrégulier et favorise la santé et la sécurité des travailleurs, dans le cadre de la réalisation des ouvrages et des opérations d'aménagement nécessaires à l'accomplissement des missions prévues au II du présent article.

VI. – Un décret en Conseil d'Etat fixe les modalités d'organisation et de fonctionnement de la Société de livraison des ouvrages olympiques. Il fixe les conditions dans lesquelles les délibérations du conseil d'administration deviennent exécutoires.

VII. – Le présent article entre en vigueur à une date fixée par le décret mentionné au VI, et au plus tard le 31 décembre 2017.

3. 국제스포츠행사 개최 지원의 기타 해외 사례 (대한체육회가 조사한 자료)

1) 영국

가. 명칭: UK Sport (왕립기관)

나. 목적: 영국의 올림픽 및 패럴림픽 스포츠 및 선수들이 그들의 전체 메달 획득 잠재력을 달성 할 수 있도록 전략적 투자를 제공 (국가복권 및 재무부)

다. 기능

- 올림픽 및 패럴림픽 스포츠 메달 달성한 투자
- 국제스포츠행사 유치 및 개최 투자
- 선수들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 지원
- 코치 지원
- 국제교류 (IF, 국제스포츠기구)
- 지도력 개발 및 거버넌스

라. 소속: 영국 정부부처 내 문화미디어스포츠부

마. 운영방식: 투자하는 스포츠의 각 국가 관리기구와 협력하여 운영

바. 국제스포츠행사 유치 및 개최현황

- 2018 ITU World Triathlon Series
- 2018 Taekwondo Grand Prix
- Tissot UCI Track Cycling World Cup
- 2019 World Taekwondo Championships
- 2019 ICF Canoe Slalom World Cup
- 2019 Modern Pentathlon European Championships
- 2019 UCI Road World Championships
- 2021 Rugby League World Cup

2) 덴마크

가. 명칭: Sport Event Denmark (정부·NOC·경기단체연합회 지원 기관)

나. 목적: 주요 국제스포츠행사(선수권 및 총회 등)를 개최 및 유치

다. 기능: 행사 관련 컨설팅 및 유치지원 및 스포츠이벤트 행사개최에 따른 파급효과 연구

라. 소속: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Event Hosts (IAEH)

마. 국제스포츠행사 유치 및 개최현황

- 2016 Ice Hockey Women's World Championship Division 1
- 2016 World Rowing Masters Regatta
- SportAccord Convention 2017
- 2017 ISA World StandUp Paddle and Paddleboard Championship
- ITU Multisport World Championships Festival Fyn 2018
- World Masters Orienteering Championships 2018
- FEI World Cup Dressage 2018, Herning
- Men's World Handball Championship 2019
- World Women's Curling Championship 2019
- IAAF World Cross Country Championships 2019
- 2020 WTF World Taekwondo Poomsae Championships
- Canoe Sprint World Championships 2021
- UCI Mountainbike Marathon World Championships 2022
- Women's World Handball Championship 2023

3) 뉴질랜드

가. 명칭: NewZealand Major Events (NZME)

나. 목적: 뉴질랜드 국가에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주요 국제행사의 정부투자를 이끌어내 유치 및 개최에 성공하는 것

다. 기능

- 정부 관련 부처에 주요 국제대회 관련 조언
- 행사 유치에 따른 효과에 대한 조언
- 조건에 부합하는 민간 행사 단체에 재정 지원
- 이벤트 분야와 협업하여 대회 운영 지원(국익에 최대한 부합하고 국격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도모)
- 관련 정부부처 조정관 역할, 이벤트 대행사계약, 지방자치단체
- 주요 국제행사 자문위원회 운영 행정지원

라. 소속: 뉴질랜드 정부부처인 사업·혁신·고용부 내에 팀으로 있음.

마. 운영방식: 민간의 국제행사조직단체가 NZME에 행사 유치 신청을 하면 검토 후 승인하고, 유치 및 개최를 지원하는 방식

바. 국제스포츠행사 유치 및 개최현황

- 2013 AUDI QUATTRO WINTER GAMES / 2013 UCI BMX 챔피언십
- 2014 BMW 뉴질랜드 골프 오픈
- 2015 FIFA U-20 월드컵 등

4) 호주

가. 배경 : 시드니 올림픽 이후, 정부를 중심으로 국제스포츠이벤트 전문회사에 전폭적 투자

나. 결과 : 런던 올림픽 운영의 40%를 호주 기업이 수주

다. 주요 참여사

- David Atkins Enterprises / FCT International / Infostrada Sports Group / Event Planning Group / Green Shoot Pacific / Sue Hodges Production

4. 프랑슈콩테대학교 신문에 게재된 동 훈련 관련 기사

- 2019년 3월 초에, 프랑슈콩테대학교 신문에 동 훈련 교류에 관한 기사가 게재되었음. 대학신문사와 인터뷰는 1월 중순에 하였음.
(기사 내용 불임)



PyeongChang 2018 - Paris 2024...

D'une Olympiade à l'autre, les liens se renforcent entre la Corée du Sud et la France, et plus précisément l'université de Franche-Comté et son laboratoire de recherche C3S.

Enseignant-chercheur en sociologie et spécialiste de la question olympique, Éric Monnin est intervenu à diverses reprises sur le sol coréen lors des derniers JO d'hiver, une collaboration favorisant encore un partenariat établi de longue date. C'est dans ce contexte que Seon Yu, fonctionnaire du ministère de la Culture, du sport et du tourisme coréen, vient d'effectuer un stage de six mois à Besançon, dans le but d'étudier les méthodes françaises de soutien aux grands événements sportifs.

« L'implication de l'État dans le sport en France, qui se traduit par la création de délégations sportives locales, n'existe pas dans notre pays », raconte Seon Yu. La Coréenne multiplie les prises de contacts avec les instances nationales, effectue des recherches à la bibliothèque, et parallèlement peaufine son français au CLA. Réputé dans le monde entier pour la qualité de ses formations, le Centre de linguistique appliquée est l'autre argument retenu par le gouvernement coréen pour placer Besançon en tête de ses choix pour cette étude à la française. En marge de son travail, Seon Yu est reconnaissante pour l'accueil qui lui a été réservé à l'université, et plus généralement en Franche-Comté, dont elle ne manque pas de vanter les beaux paysages... et la qualité des fromages.

Label génération 2024 pour l'université de Franche-Comté

La visite de Seon Yu intervient au moment où l'université reçoit le label Génération 2024, décerné pour trois ans par le gouvernement français. L'université répond aux critères énoncés dans le cahier des charges et dispose du potentiel pour répondre aux objectifs fixés : développement des liens avec l'environnement associatif sportif, participation à la recherche et aux manifestations promotionnelles olympiques et paralympiques, accompagnement ou accueil des sportifs de haut niveau, accès aux équipements sportifs de l'établissement pour les associations et entreprises locales. La récente nomination d'Éric Monnin comme vice-président de l'université de Franche-Comté délégué à l'olympisme, une innovation dans le monde académique, fait écho à cette labellisation et souligne l'engagement de l'établissement dans une démarche sportive de haut niveau.

Contact : Laboratoire C3S - Université de Franche-Comté - Éric Monnin - Tél. +33 (0)6 02 50 12 43 - eric.monnin[at]univ-fcomte.fr

RETOUR

<프랑슈 콩테 홈페이지에 게재된 동 훈련 관련 기사>

“한국과 프랑스의 학술 핑퐁”

(<http://endirect.univ-fcomte.fr/publication/ping-pong-academique-coree-du->

○ 기사 원문

Ping-pong académique Corée du Sud – France

PyeongChang 2018 - Paris 2024...

D'une Olympiade à l'autre, les liens se renforcent entre la Corée du Sud et la France, et plus précisément l'université de Franche-Comté et son laboratoire de recherche C3S.

Enseignant-chercheur en sociologie et spécialiste de la question olympique, Éric Monnin est intervenu à diverses reprises sur le sol coréen lors des derniers JO d'hiver, une collaboration favorisant encore un partenariat établi de longue date.

C'est dans ce contexte que Seon Yu, fonctionnaire du ministère de la Culture, du sport et du tourisme coréen, vient d'effectuer un stage de six mois à Besançon, dans le but d'étudier les méthodes françaises de soutien aux grands événements sportifs.

«L'implication de l'État dans le sport en France, qui se traduit par la création de délégations sportives locales, n'existe pas dans notre pays», raconte Seon Yu. La Coréenne multiplie les prises de contacts avec les instances nationales, effectue des recherches à la bibliothèque, et parallèlement peaufine son français au CLA. Réputé dans le monde entier pour la qualité de ses formations, le Centre de linguistique appliquée est l'autre argument retenu par le gouvernement coréen pour placer Besançon en tête de ses choix pour cette étude à la française. En marge de son travail, Seon Yu est reconnaissante pour l'accueil qui lui a été réservé à l'université, et plus généralement en Franche-Comté, dont elle ne manque pas de vanter les beaux paysages... et la qualité des fromages.

Label génération 2024 pour l'université de Franche-Comté

La visite de Seon Yu intervient au moment où l'université reçoit le label Génération 2024, décerné pour trois ans par le gouvernement français. L'université répond aux critères énoncés dans le cahier des charges et dispose du potentiel pour répondre aux objectifs fixés : développement des liens avec l'environnement associatif sportif, participation à la recherche et aux manifestations promotionnelles olympiques et paralympiques, accompagnement ou accueil des sportifs de haut niveau, accès aux équipements sportifs de l'établissement pour les associations et entreprises locales. La récente nomination d'Éric Monnin comme vice-président de l'université de Franche-Comté délégué à l'olympisme, une innovation dans le monde académique, fait écho à cette labellisation et souligne l'engagement de l'établissement dans une démarche sportive de haut niveau.

○ 기사 번역본

한국과 프랑스의 학술적 핑퐁

평창2018 - 파리2024...

올림픽에서 다른 올림픽으로 연결이 한국과 프랑스, 구체적으로 프랑슈콩테대학과 C3S연구소 사이에서 강화되었습니다. 올림픽 분야의 사회학 연구원이자 전문가인 에릭 모냉(Éric Monnin) 교수는 오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지난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여러 번 한국을 방문하였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유선 씨는 프랑스의 대규모 국제 스포츠행사 지원 방식을 연구하기 위해 브장송(Besançon)에서 6개월의 훈련과정을 얼마 전 완료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국가(중앙정부)가 참여하여 지역스포츠대표단(대회 개최를 담당하는 조직위원회를 의미함)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은 우리나라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유선 씨는 말했습니다. 이 한국인은 관계당국과 접촉하고 도서관에서 조사하며, 동시에 CLA(Centre for Applied Linguistics, 브장송에 소재하는 프랑슈콩테대학교 산하 어학원)에서 자신의 프랑스어를 향상시킵니다. CLA는 교육의 질적 측면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이것이 한국 공무원이 연구를 위해 브장송을 선택한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합니다. 유선 씨는 연구 외에도 대학에서, 더 일반적으로 프랑슈콩테 지역에서 받은 환영에 감사하며, 아름다운 풍경과 치즈의 품질을 칭찬했습니다.

프랑슈콩테대학교의 2024세대(Génération 2024) 인증

유선 씨의 방문은 프랑슈콩테대학교가 프랑스 정부로부터 3년 동안 '2024세대'를 수여받은 시점에 이루어졌습니다. 프랑슈콩테대학교는 규격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며 다음의 목표를 달성할 잠재력이 있습니다. : 스포츠와 연계된 환경의 개발, 올림픽 및 패럴림픽 연구 및 홍보행사의 참여, 전문선수의 동행 또는 응대, 지역 협회 및 기업의 스포츠 시설에 대한 접근

최근 에릭 모냉 교수가 프랑슈콩테대학교 올림피즘(Olympisme) 대표단의 부회장으로서 임명된 것은 학계의 혁신으로서, '2024세대' 인증에 대한 응답이며, 전문 수준의 스포츠 접근 방식에 대한 기관의 헌신을 강조한 것입니다.

5. 프랑슈콩테대학교 국제교류 연구자 미팅 관련 자료

- 2019년 2월 7일, 프랑슈콩테대학교의 연구개발부(Direction Recherche et Valorisation)에서 국제교류 연구자 미팅을 개최하였음. 프랑슈콩테대학 내 여러 연구소에서 연구하고 있는 각 국에서 파견된 객원연구자들이 각자의 연구 주제를 발표하는 자리였으며, 필자는 동 훈련과제의 요지를 프랑스어로 10분간 발표하였음.

(발표 내용 불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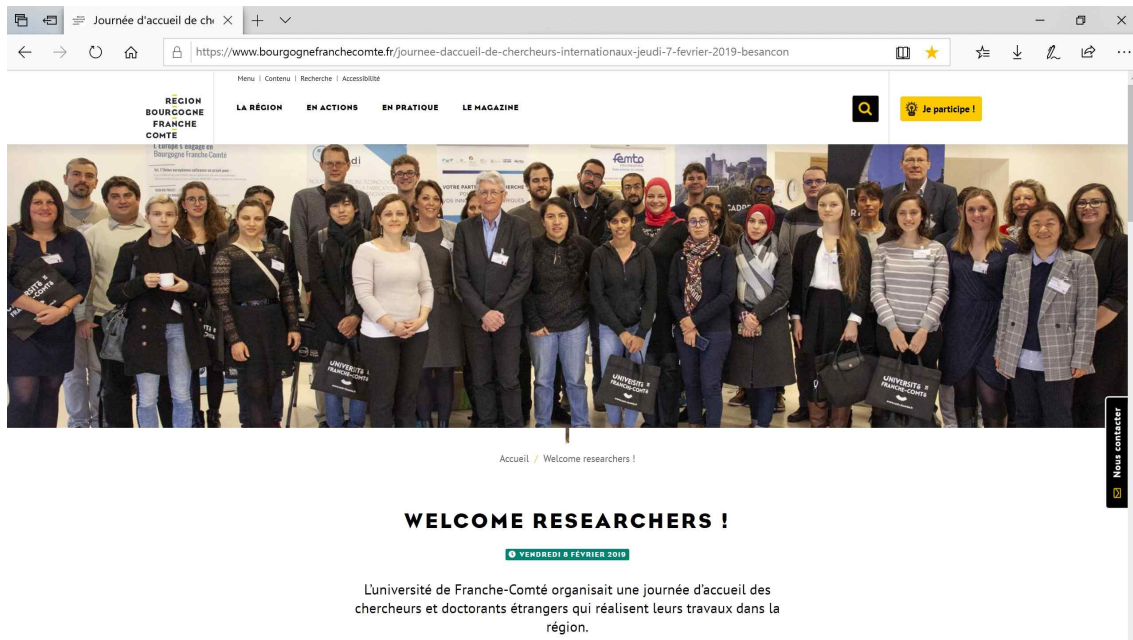
* 담당자 연락처 : 레아 지리(Léa ZIRI)

Tél. +33 (0)3 81 66 52 51 / e-mail. lea.ziri@univ-fcomte.fr

Université de Franche-Comté

Directions des Relations Internationales et de la Francophoni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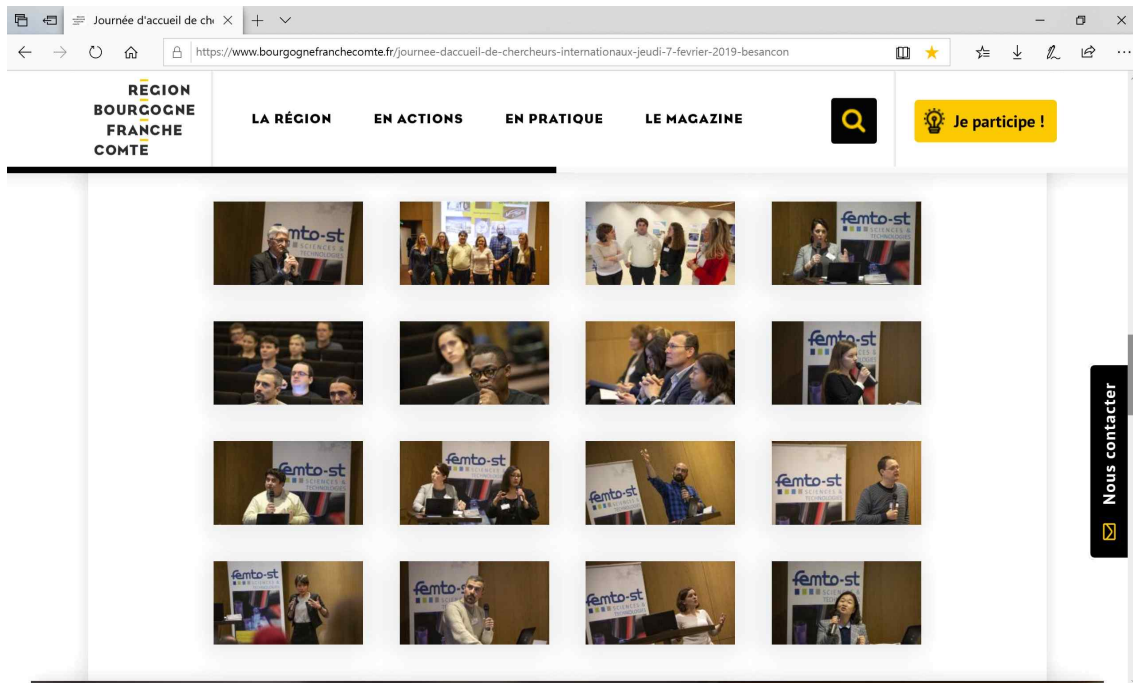
1 rue Goudimel 23030 Besançon CEDEX



<부르곤뉴 프랑슈 콩테 지역 홈페이지에 소개된 행사 관련 콘텐츠>

“프랑슈콩테대학교는 지역 내에서 연구 중인 외국인 연구자들과 박사들을 위한 ‘환영의 날’을 개최하였다.”

(<https://www.bourgognefranche-comte.fr/journee-daccueil-de-chercheurs-internationaux-jeudi-7-fevrier-2019-besancon>)



○ 행사 프로그램

UNIVERSITÉ 
FRANCHE-COMTÉ

YOU in University of Franche-Comté

First meeting of international researchers in mobility at the
University of Franche-Comté

Mercredi 7 février 2019

Bâtiment TEMIS SCIENCES

Amphithéâtre Gagnepain

15B avenue des Montboucons, Besançon

Program

9h00 - 9h30	Welcome coffee
9h30 - 09h45	Opening of the day : Vice-President for Research and Promotion of Research <i>Olga KOUCHNARENKO</i>
09h45 - 10h00	Welcoming word of the International relations and Francophony Department <i>Léa ZIRI</i> , Responsible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10h00 - 10h10	Euraxess Services Center of the University of Franche-Comté <i>Stéphanie DJERIOUI</i> , Responsible for international mobility
10h10 - 11h30	Testimonies : Foreign PhD students and foreign researchers at the university talk about their scientific mobility experience ; Representatives from the university's laboratories say how international cooperation is essential to boost the potential of research in France : - 10h10 - 10h20 : <i>Elizaveta KORZHOVA</i>, Russian, PhD student, UTINAM Institute - 10h20 - 10h30 : <i>Frédéric SPAGNOLI</i>, French, Lecturer in Italian language and civilization, Institute of Sciences and Techniques of Antiquity (Institut des sciences et techniques de l'Antiquité - ISTA) - 10h30 - 10h40 : <i>Javier PORTE PARERA</i>, Spanish, Post doctoral researcher, FEMTO-ST Institute, Optic Department - 10h40 - 10h50 : <i>Uwe FRANZ</i>, German, Researcher, Mathematical laboratory (Laboratoire de Mathématiques de Besançon - LMB) - 10h50 - 11h00 : <i>Seon YU</i>, Korean, Researcher, Culture, sport, health, society Laboratory (Laboratoire C3S) - 11h00 - 11h10 : <i>Célia BERGER-TARARE</i>, French, Lecturer in Private Law, Legal Research Center of Franche-Comté (Centre de recherche juridique de Franche-Comté - CRJFC) - 11h10 - 11h20 <i>Maximiliano MELNICHUK</i>, Argentine, Researcher, FEMTO-ST Institute, Department of Applied Mechanics
11h30 - 12h00	Speeches by representatives of : - Bourgogne Franche-Comté Region : <i>Maude CLAVEQUIN</i>, Vice-President in charge of Research and Higher Education - City of Besançon Community of agglomeration "Grand Besançon" <i>Dominique SCHAUSS</i>, Delegated Municipal Councilor, Saint-Jacques site development project
12h00	Cocktail

14h00 - 16h00 Cultural visit (City Center)

Direction Recherche et Valorisation

Research and Promotion of Research
Department
drv@univ-fcomte.fr

○ 발표 자료

La comparaison entre des cas coréens et français concernant le soutien d'organisation des Événements Sportifs Internationaux et discussion des résultats

Le 7 février 2019

Seon YU

- Fonctionnaire auprès du ministère de la culture, du sport et du tourisme en Corée
- Chercheuse invitée par le Laboratoire Culture, Sport, Santé, Société de l'UFC

1

Introduction

1. La comparaison entre des cas coréens et frança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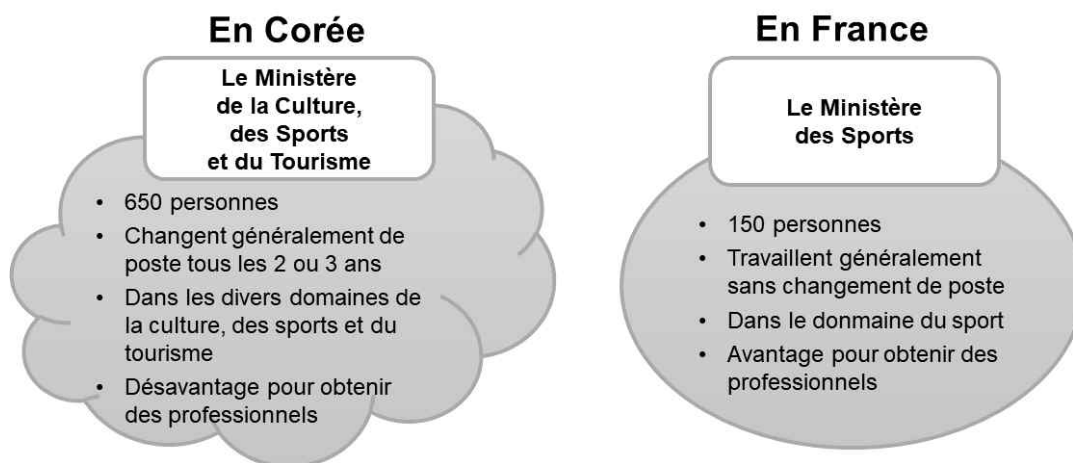
- 1) La gestion des fonctionnaires du ministère des sports
- 2) Le système de soutien dans les lois
- 3) La coopération entre les acteurs

2. Les suggestions pour la Corée

2

1. La comparaison entre des cas coréens et frança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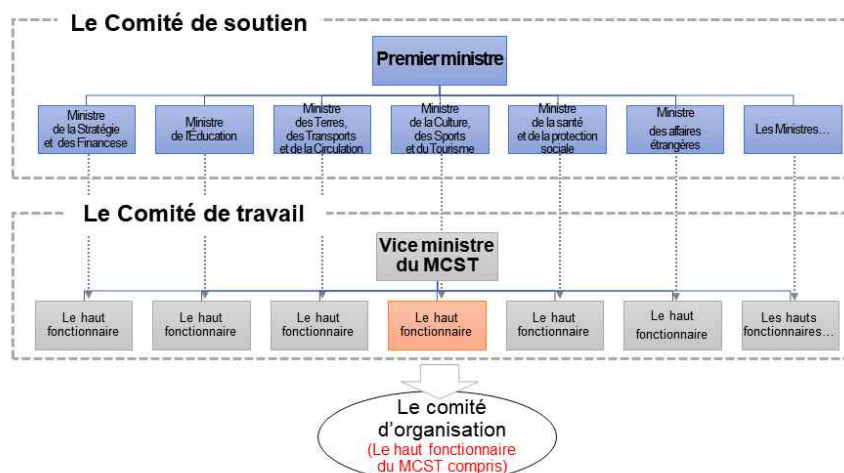
1) La gestion des fonctionnaires du ministère des sports



3

1. La comparaison entre des cas coréens et frança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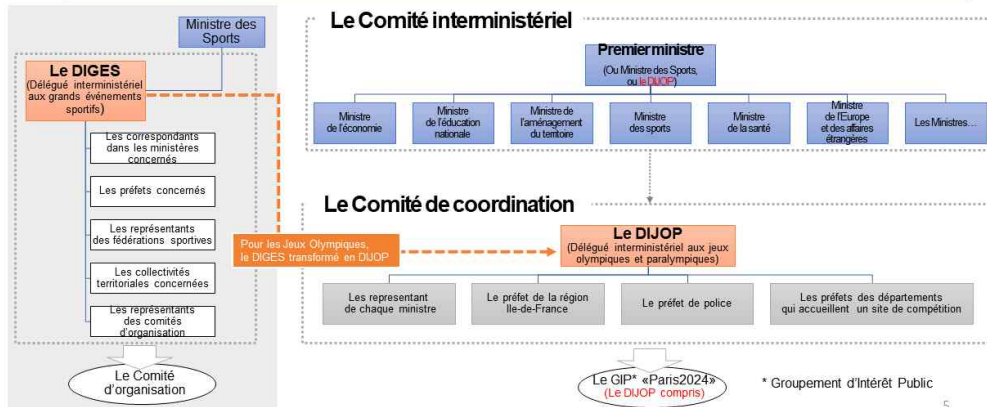
2-1) Le système de soutien dans les lois en Corée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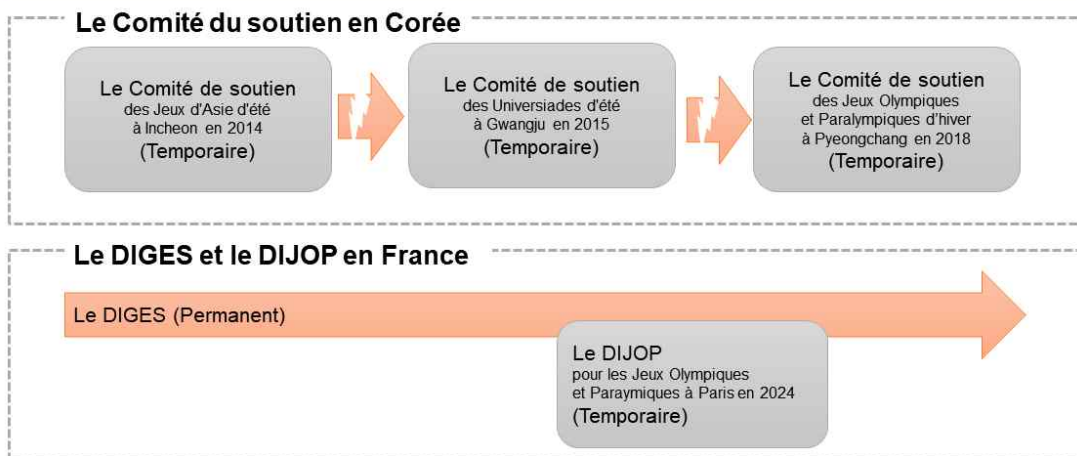
1. La comparaison entre des cas coréens et français

2-2) Le système de soutien dans les lois en France



1. La comparaison entre des cas coréens et frança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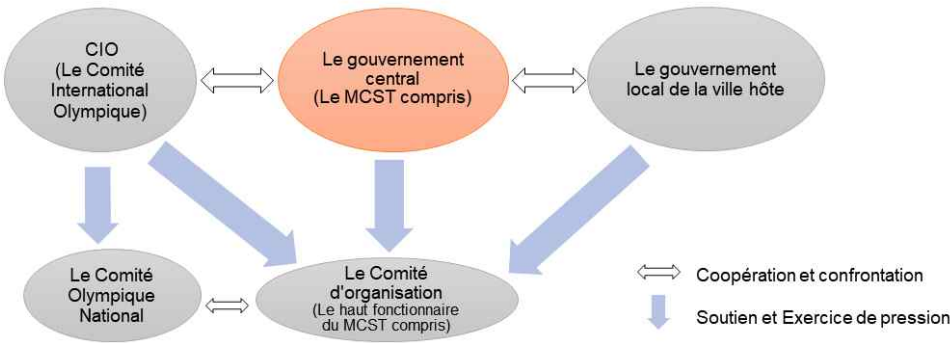
2-3) Le système de soutien dans les lois : Temporaire et Permanent



1. La comparaison entre des cas coréens et français

3-1) La Coopération entre les acteurs en Corée

• Relations inter-institutions en Coré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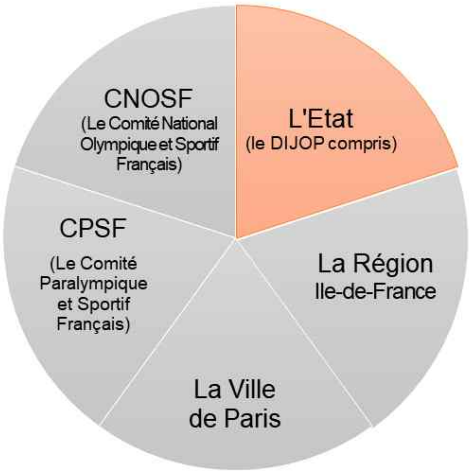
7

1. La comparaison entre des cas coréens et français

3-2) La Coopération entre les acteurs en France

• Le GIP* Paris 2024

* Groupement d'Intérêt Public



8

2. Les suggestions pour la Corée

- 1) Créer une organisation dédiée au soutien des événements sportifs internationaux.
- 2) Améliorer la gestion «des postions professionnelles».

9

Je vous remercie!

10

○ 발표 내용

Bonjour ! Je m'appelle Seon YU. Je viens de la Corée du Sud. Je suis fonctionnaire auprès du ministère de la culture, du sport et du tourisme en Corée. J'ai été invitée en tant que chercheuse par le Laboratoire Culture, Sport, Santé, Société de l'Université de Franche-Comté.

J'ai effectué des recherches depuis maintenant 6 mois sur le sujet *«La comparaison entre des cas coréens et français concernant le soutien d'organisation des Événements Sportifs Internationaux, et discussion des résultats»*. J'ai honneur aujourd'hui de vous présenter brièvement les résultats de ma recherche.

Les grands événements sportifs internationaux comme les Jeux Olympiques, la Coupe du monde sont considérés comme des événements «nationaux». Pour cette raison, afin de pouvoir les organiser avec succès, une expertise est essentielle pour le gouvernement ainsi que pour le secteur privé.

Le but de cette recherche pour moi est de trouver la réponse en tant que fonctionnaire à la question : "Comment le gouvernement peut-il soutenir les événements sportifs internationaux de manière professionnelle?".

La raison pour laquelle j'ai choisi la France pour mes recherches, c'est parce que la France est fière de son savoir-faire dans l'organisation d'événements sportifs internationaux.

Dans cet exposé, je comparerai les trois points liés au soutien des événements sportifs internationaux en Corée et en France.

- Premièrement, La gestion des fonctionnaires du ministère des sports.

- Deuxièmement, Le système de soutien dans les lois relatives aux événements sportifs internationaux.
- Troisièmement, La coopération entre les acteurs des événements sportifs internationaux.

Et puis je proposerai des solutions pour l'amélioration du mode de fonctionnement en Corée.

Tout d'abord, je vous expliquerai la différence entre la gestion des fonctionnaires du ministère des sports en Corée et celle en France.

Les fonctionnaires coréens changent généralement de poste de travail tous les deux ou trois ans. Le Ministère de la Culture, des Sports et du Tourisme en Corée, compte plus de 650 personnes, ainsi que divers domaines tels que la culture, les sports et le tourisme. Ce sont des conditions un peu défavorables pour obtenir des experts pour chaque domaine.

D'autre part, en France, il existe le ministère des sports, qui dispose seulement dans le domaine du sport, et de 150 fonctionnaires travaillant généralement sans changement de poste. Ce qui semble plus avantageux pour obtenir des experts que le MCST en Corée.

Deuxièmement, je comparerai le système de soutien dans les lois relatives aux événements sportifs internationaux en Corée avec celui de la France.

Les systèmes des deux pays ont un point en commun :

Les différents ministères du gouvernement central, y compris le ministère des sports, forment un comité. Ce comité soutient les événements en agissant pour une coopération entre le gouvernement central, les gouvernements locaux et le comité d'organisation.

En Corée, le comité de soutien est composé de ministres et est présidé par le Premier ministre. Le comité de soutien décide des projets importants, mais les tâches sont gérées par un comité de travail qui est sous la direction du comité de soutien. Le comité de travail est composé de hauts fonctionnaires de chaque ministère et est présidé par le vice-ministre du MCST.

En France, le Délégué interministériel aux grands événements sportifs (DIGES), qui soutient les événements, est formé en permanence.

Et lorsque les Jeux olympiques est confirmé, son organisation s'ajoute aux tâches du Délégué interministériel aux jeux olympiques et paralympiques (DIJOP).

Je les appellerai simplement le «DIGES» et le «DIJOP».

En d'autres termes, le DIGES prend généralement en charge les grands événements internationaux sportifs sous la direction du Ministre des Sports. Et, si des événements sont confirmés, tels que les Jeux olympiques, le DIGES devient le DIJOP sous la direction du Premier ministre.

Je tiens à souligner une importante différence entre le comité de soutien coréen et le DIGES français.

En Corée, le comité de soutien est une organisation temporaire formée pour chaque événement et dissoute juste après sa fin. Comme le comité de soutien est organisé temporairement, le savoir-faire entre chacun des comités de soutien n'est pas connexé.

Par contre, le DIGES français est formé en permanence, bien que le DIJOP soit temporaire. Je crois que la raison pour laquelle la France maîtrise les événements, c'est que son savoir-faire peut être maintenu par le DIGES.

Troisièmement, la Corée et la France montrent une différence au niveau de la relation entre les acteurs.

Étant donné que le comité d'organisation est géré administrativement par le MCST et reçoit un soutien financier, il y a une relation verticale d'autorité par le gouvernement central sur le comité d'organisation.

Cette relation est similaire entre le comité organisateur et le gouvernement local, le comité organisateur et le CIO. Le comité d'organisation a des difficultés à coordonner les opinions des différents acteurs.

Le comité d'organisation en France est sous la forme d'un groupement d'intérêt public (GIP) composée de plusieurs organisations apparentées.

Le GIP peut être constitué d'au moins un partenaire public et un ou plusieurs organismes privés pour poursuivre des objectifs d'intérêt commun. Par exemple, «Paris 2024» se prépare les Jeux olympiques à Paris en 2024, est une organisation d'intérêt public qui regroupe le Comité national olympique et sportif Français (CNOSF), le Comité paralympique et sportif Français (CPSF), la Ville de Paris, la Région Ile-de-France et l'Etat.

Dans la structure du GIP en France, le gouvernement central entretient une relation de coopération horizontale avec le comité olympique national et le gouvernement local. Même s'il peut exister des conflits entre les partenaires du GIP, la possibilité pour le gouvernement central d'exercer une pression est faible par rapport à la celle en Corée.

Sur la base des résultats de la recherche, j'ai formulé deux suggestions pour la Corée.

La première suggestion est de créer une organisation dédiée au soutien des événements sportifs internationaux comme le DIGES en France. La Corée du Sud et du Nord se préparent pour postuler aux Jeux olympiques d'été en 2032. Pour cela, le moment est venu de mettre en place un DIGES pour l'expertise.

La deuxième suggestion est l'amélioration de la gestion des positions professionnelles. «Les positions professionnelles» signifie des postes qui permettent à une personne de travailler pour un poste spécifique pendant au moins quatre ans sans changement. Et, le travail lié au soutien des événements sportifs internationaux est aussi une profession. Cependant, j'ai été témoin, à plusieurs reprises, de l'affectation de nouveaux employés ou membres du personnel qui n'ont pas travaillé dans le domaine du sport à ce poste.

Je conseille de faire en sorte que le poste chargé des grands événements sportifs internationaux puisse être occupé par des personnes ayant une expérience similaire.

Je vous remercie pour votre attention.

Et je tiens à beaucoup remercier spécifiquement Professeur Éric MONNIN.

○ 발표내용 번역본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유선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무원이며, 프랑슈콩테대학교의 문화·건강·사회연구소로부터 초청받은 연구자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6개월 동안 «국제스포츠행사의 개최 지원과 관련하여 한국과 프랑스의 사례 비교 및 시사점»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오늘 제 연구 결과를 간략히 소개해드릴 수 있어 영광입니다.

올림픽이나 월드컵과 같은 대규모 국제스포츠행사는 국가적 차원의 행사로 고려됩니다. 이 같은 이유로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영역처럼 정부도 전문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공무원으로 '어떻게 하면 정부가 대규모 국제스포츠행사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의 답을 찾는 것입니다. 조사의 대상으로서 프랑스를 선택한 이유는 프랑스가 국제스포츠행사를 개최하는 데에 노하우(know-how)를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발표에서 저는 한국과 프랑스가 국제스포츠행사를 지원하는 방식을 3가지 기준에서 비교할 것입니다.

- 첫째, 스포츠를 소관 하는 부처의 공무원 운영 방식
- 둘째, 국제스포츠행사와 관계된 법률상에 나타난 지원 체계
- 셋째, 국제스포츠행사 개최에 관계된 기관간의 협력

그리고, 한국의 지원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첫째, 한국의 문화체육관광부와 프랑스의 스포츠부의 공무원 운영상에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의 문화체육관광부는 본부에 65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은 일반적으로 매 2~3년에 한 번씩 보직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관 하는 분야도 문화, 체육, 관광 등 다양합니다. 이러한 점들은 각각의 분야에서 전문가를 확보하기가 불리한 조건입니다.

반면에, 프랑스에는 스포츠 분야만 담당하는 스포츠부가 존재하며, 150여명의 직원들이 일반적으로 보직 변경 없이 근무합니다. 이러한 점들은 한국의 문체부에 비해 전문가를 확보하는 데에 유리합니다.

둘째, 국제스포츠행사와 관계된 법률상에 나타난 지원 체계의 차이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국의 체계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스포츠 소관 부처의 포함한 중앙정부의 다양한 부처가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점입니다. 이 위원회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조직위원회가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국제경기대회지원위원회가 각 부처 장관들로 구성됩니다. 지원위원회는 중요사항을 결정하지만, 실무적인 업무는 지원위원회 아래 실무위원회에서 담당합니다. 실무위원회는 각 부처의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되며, 문체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대규모 스포츠행사를 위한 부처간 대표단(Délégué interministériel aux grands événements sportifs : DIGES)이 국제스포츠행사를 지원합니다. 올림픽 유치가 확정된 후에 이 조직은 올림픽 및 패럴림픽의 부처간 대표단(Délégué interministériel aux jeux Olympiques et Paralympiques : DIJOP)의 업무를 겸직하고 있습니다. 이하 'DIGES', 'DIJOP'라고 축약하여 지칭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스포츠부장관 지휘 하에 있는 DIGES가 일반적으로 대규모 국제스포츠행사를 지원하고 있다가, 올림픽이 확정된 후에는 국무총리 지휘 하에 있는 DIJOP의 업무를 겸직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지원위원회와 프랑스의 DIGES가 매우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지원위원회는 한시적 조직으로서 매 대회 때마다 신설되었다가 해당 대회가 폐회되면 해산합니다. 지원위원회가 한시적 조직이기 때문에, 각각의 지원위원회 사이에 노하우가 이어지기가 어렵습니다. 반면에 프랑스의 경우, DIJOP은 비록 한시적 조직이지만, DIGES는 영구적 조직입니다. 프랑스가 행사 개최에 숙달될 수 있었던 것은 DIGES가 개최 지원의 노하우를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셋째, 한국과 프랑스는 관계기관간의 관계에서도 차이점을 보입니다. 한국의 대회 조직위원회는 문체부로부터 행정적인 관리감독을 받으며 보조금을 지원받기 때문에, 양자는 수직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조직위원회와 IOC(국제올림픽위원회), 조직위원회와 지방정부의 관계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조직위원회로서는 관계기관들의 다양한 의견을 조정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프랑스의 대회 조직위원회는 여러 관계 조직들로 구성된 공익단체의 형태입니다. 이하 'GIP(groupement d'intérêt public : GIP)'이라고 축약하여 지칭하겠습니다. GIP은 적어도 하나 이상의 공공조직 파트너와 하나 또는 여러 개의 민간조직이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됩니다. 예컨대, 2024년 파리올림픽을 준비하는 "파리2024(Paris 2024)"는 DIJOP을 포함한 중앙정부, 파리와 일드프랑스(Ile-de-France) 지방을 포함한 개최도시 지방정부, 프랑스올림픽위원회, 프랑스패럴림픽위원회 등의 조직이 공동파트너로서 설립된 GIP입니다. 프랑스의 GIP 구조상에서 중앙정부는 국가올림픽위원회와 지방정부와 수평적인 협력관계를 가집니다. 비록 GIP의 파트너들 사이에도 갈등은 존재하겠지만, 한국의 경우처럼 중앙정부가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은 적어보입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지원방식 개선을 위한 2가지 제안을 도출하였습니다. 첫째, 국제스포츠행사를 전담하여 지원하는 조직을, 프랑스의 DIGES의 경우처럼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남과 북은 2032년 하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이 바로 전문성을 갖춘 DIGES를 설치해야할 때입니다.

둘째, '전문직위'의 운영을 개선해야 합니다. '전문직위'는 한 직원이 특정 업무에서 보직 변경 없이 적어도 4년 이상 근무하게 하는 직위이며, 국제스포츠행사에 관련된 보직도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신규 임용직원 또는 스포츠 분야에 경력이 없는 직원이 일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대규모 국제스포츠행사를 담당하는 업무는 유사한 경험이 있는 직원이 담당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에릭 모넵 교수님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